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중소기업 지원제도 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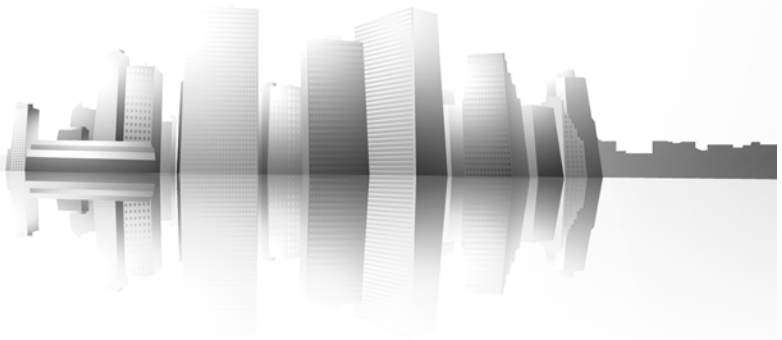
※ 본 자료는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의 한기운 자문위원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센터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김동현 선임조사역
- 전화 : 3771-0293 팩스 : 3771-0143
- E-mail : dan5733@fki.or.kr

www.fkilsc.or.kr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중소기업 지원제도 요람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는 300만 개가 넘어 총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도 여물고 잎도 푸르듯이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런 만큼 각계·각층에서 쏟아져 나오는 중소기업 육성책도 그 양이 방대하다. R&D 투자자금 지원, 각종 세제지원 등을 비롯하여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만 해도 무려 1,400여 가지에 달한다.

그러나 시와 초를 재며 ‘기업 키우기’에 바쁜 중소기업 CEO가 이렇듯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자사에 적합한 제도를 발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은 전경련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이하 ‘경영자문단’)이 이러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들을 보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급변하는 경쟁환경 속에서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기치하에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전직 대기업 CEO 출신 자문위원의 경영지식과 실전노하우를 전수하고자 발족한 경영자문단은 전국의 1,0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문과 비즈니스 멘토링, 맞춤형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경영자문단은 경영자문을 실시하면서 많은 중소기업 CEO들이 꼭 알아야 할 중소기업 지원제도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연구·조사하였던 한기운 자문위원이 중심이 되어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활용법 등을 엮어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에는 정책자금 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 판로지원, 수출지원, 정보화 지원, 창업지원, 벤처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세제 지원 등 11가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제도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167가지의 지원사업들이 소개되어 있다. 각각의 지원사업들은 지원내용 및 대상과 분야, 지원절차, 자격요건 및 문의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중소기업 CEO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였다. 또한 제도의 소개뿐 아니라 성격과 특징, 그리고 활용방법까지 제시하여 중소기업의 CEO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중소기업 CEO들에게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더 쉽게 다가가고,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서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

I.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요	15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17
1)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개요	17
2) 정책자금의 종류별 성격과 내용	17
3) 정책자금 이용 시기 및 방법	18
4) 정책자금 지원의 조건	19
5)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20
2. 중소기업 기술지원제도	20
1) 기술지원제도의 개요	20
2) 기술지원제도의 종류와 지원내용	21
3) 기술지원제도의 이용방법	22
3. 중소기업 인력지원제도	23
1) 인력지원제도의 개요	23
2) 인력지원제도의 종류와 성격	23
3) 인력지원제도의 이용방법	25
4.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	26
1) 판로지원제도의 개요	26
2) 판로지원제도의 내용	26
5.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29
1)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수출지원제도의 개요	29
2) 수출지원제도의 종류와 특징	29
3)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30
4) 인력 및 기타지원 사항	31

6.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사업	31
1) 정보화지원제도의 개요	31
2) 정보화지원제도의 종류와 성격	32
7. 중소기업 창업지원 사업	33
1) 산업별 창업의 절차	33
2) 창업과정에서의 지원종류	35
3) 창업지원시책의 종류와 지원내용	35
8. 벤처기업 지원제도	37
1) 벤처기업의 유형과 지정제도	37
2) 벤처기업 지원 개요	37
9. 소상공인 지원제도	39
1)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개요	39
2)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종류와 지원내용	40
10.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41
1) 재래시장 지원제도의 개요	41
2) 재래시장 지원내용	41
11. 중소기업 세제지원	42
1)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	42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의 종류	43
3) 사업자가 알아야할 일반적인 절세방안	44
4)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44
5) 세제 및 세정 상의 편의 제공	47

II. 부문별 핵심 중소기업 지원제도	49
1. 정책자금 지원제도	51
1) 중소·벤처 창업자금	51
2)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	53
3) 경영혁신 자금	54
4) 구조조정 자금	58
5) 긴급경영안정 자금	61
6)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64
2. 보증·보험지원제도	79
1) 신용보증 지원	79
2) 보험지원 제도	82
3)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사업	84
3. 중소기업 기술개발·경영혁신 지원제도	86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	86
2) Inno-Biz 인증 코칭 프로그램	87
3)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88
4)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	90
5)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91
6) 신기술인증제도(NET마크)	92
7) 이업종교류 지원사업	93
8)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94
9) 기업협동형 공동기술개발사업	96
10)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97
11)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98
12)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99
13)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결성 지원	101
14) BI 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102
15) 신기술디자인개발사업	103
1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사업	104

17) 경영혁신 연구개발 지원사업	106
18)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	107
19)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108
20) 산학협력실 지원	110
21)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111
22) 연구장비·인력 종합검색 시스템 구축운영	112
23)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지원사업	113
24) 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방	114
25)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115
26) 제품환경규제대응 기반구축사업	116
27)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17
28) 사업전환 지원사업	118
29)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121
30)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	122
31)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 사업	123
4. 인력지원제도	124
1)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력 활용	124
2)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125
3)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한 연구인력지원	126
4)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	128
5)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 지원사업	128
6) 중소기업 청년채용패키지 사업	130
7)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사업	131
8)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우대지원	133
9)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134
10)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135
11)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활동	136
12)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137
13) 산재예방시설 보조금 지원(CLEAN 사업)	138
14)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138
15)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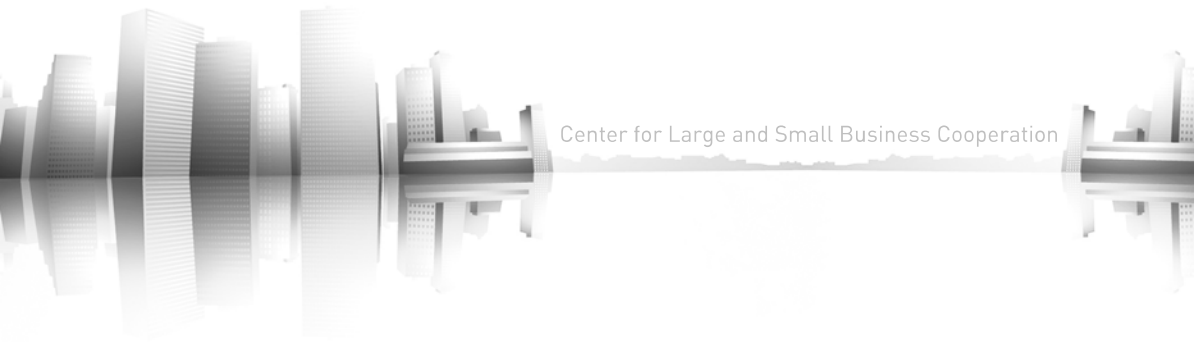
16)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관 인증제도	140
17)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인력, 장비)	141
18) IT협력단 파견 지원	141
19)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142
20)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문(K-SCORE)	144
21)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146
22) 고용유지 지원금	146
23) 전직지원 장려금	147
24) 재고용장려금 지원	148
25)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149
26) 교대제 전환 지원금	149
27)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150
28)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지원	151
29)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지원	152
30)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152
5.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	154
1) 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홍보 지원	154
2)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지원	155
3)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156
4) 중소기업 공동 A/S 콜센터 운영	158
5)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고	159
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160
7)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161
8)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162
9) 성능인증·성능보합제도	163
10) 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GQ)인증 인증제도	166
11) NEP(신기술 인증제품)인증 지원사업	167
12) GR(재활용 인증제품)인증 마크	168
13) 공공구매론	169
14)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	171
15) 제조물책임(PL) 제도 대응지원	172

16) 조달청의 우수제품선정지원(구매, 마케팅 등) 제도	173
17) 비축원자재의 안정적 판매 공급	174
18) 우수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e-Marketplace)	175
19)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 지원(시상·홍보)	176
20)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 제도	177
21) 우수 중소·벤처기업 “G마켓” 입점지원을 통한 판로지원	179
22) 특허법률구조사업 시행	180
6.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182
1) 무역구제 제도	182
2)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183
3)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184
4)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185
5)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운영	186
6) 수출중소기업 Global Brand 육성	187
7)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188
8)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운영 지원	189
9) 해외진출 민간거점활용 지원사업	191
10)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192
11)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193
12) 수출대상국 제품규격 보급	195
13) 온라인 수출지원	195
14) e-무역상사 운영	197
15) 무역기금 융자지원	198
16) 수출금융 지원사업	200
17) 환위험관리 지원사업	200
18)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제도	203
19)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보험 제도	203
20) 수출신용보증서의 일반금융기관 수탁 발급	205
21) 수입자 신용조사 제도	206
22) 수입규제대응 자금지원	207
23)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서비스	207

24) KOTRA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	208
25) KOTRA 해외시장조사대행 서비스	209
26) KOTRA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서비스	210
27) KOTRA 해외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	211
28) KOTRA 수출상품 카탈로그 발간 및 제작지원	212
29) 무역실무상담 서비스	213
30) 무역서비스 할인클럽 운영	214
31) 수출상품 온라인 홍보서비스 지원	215
32) 해외지사(사무소) 설치인증 추천	216
33) 영세업체 수출신고지원	217
34) 무역운임할인서비스 지원(RADIS)	218
35) APEC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219
7.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제도	221
1)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221
2)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사업	223
3)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육성	224
4) 산업정보화 기반구축사업	225
5) 정보화 혁신 전문기업(TIMPS)을 통한 정보화 일괄 지원	226
6) 중소기업 정보화교육	227
8. 벤처·창업기업 지원제도	229
1) 벤처기업 확인제도	229
2) 벤처빌딩 지정제도	230
3) 창업보육사업(BI) 지원사업	232
4)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234
5) 「기술창업패키지 1000」 운영사업	235
6) 엔젤투자마트 개최	236
7)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투자조합 결성 지원	237
8) 벤처기업 맞춤형 투자마트 지원사업	238
9) 벤처기업 M&A 거래 중개 지원	239
10)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240
11) 창업기업 컨설팅 지원	241

9. 소상공인·재래시장 지원제도	244
1) 소기업 지원	244
2)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245
3) 소기업확인서 발급(법인등기용)	246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제도	247
5) 자영업 5단계 패키지 창업지원	248
6) 인터넷을 통한 상권정보 제공	249
7) 자영업 컨설팅 지원사업	250
8)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251
9)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253
10) 재래시장 시장정비사업	254
10. 여성기업 지원제도	256
1) 여성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256
2)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257
3)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258
4) 여성 전문분야 창업교육	260
5) 여성경제인 경영혁신 연수	261
6) 여성기업간 경영노하우 멘토링 운영	262
7) 여성이랜서 전문가 양성 확대	264
8) 여성패션·주얼리 로드샵 운영	266
9) 벤처투자마트 및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	268
10) 여성벤처 CEO포럼	269
11) 여성특화창업센터 운영	270
12) 도전 여성스타기업 선정	271
13) 여성기업제품 T-Commerce	272

I.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요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1)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개요

-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은 용도에 따라 창업자금, 시설자금, 시장개척자금, 경영안정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등이 있고, 이들 자금은 조건에 따라 융자금, 보조금(출연금 포함), 투자금, 보험 및 신용보증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창업자금 중에서 소상공인창업자금, 벤처창업자금은 융자금으로, 벤처투자펀드는 투자금으로 운영되고, 기술개발자금 중에서 어떤 것은 융자금, 어떤 것은 보조금 형태로 다양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전지식이 필요함
- 현재 각 부처 및 시도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수는 약 100여 개에 달하고 있음

2) 정책자금의 종류별 성격과 내용

- 첫째, 융자금은 일반적으로 창업자금, 설비·원자재구입, 공장건립 등을 위해 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자금인데, 여기에는 은행이 자체 조달한 자금과 정부(또는 지자체)가 은행에 위탁한 자금(정부위탁 융자금)이 있음. 차이점은 정부위탁 융자금은 은행 자체자금보다는 금리가 낮고 대출기간이 길어 유리하지만 기본적으로 융자금은 담보가 있어야 함. 다만, 담보가 없는 경우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음
- 둘째, 보조금(출연금 포함)은 기술개발비, 교육·훈련비, 해외전시회 참가비 등과 같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게 비용의 일

부를 무상으로 보조하는 자금들임. 보조금의 규모는 사업에 따라 다양함. 예를 들어 기술개발비의 경우는 통상 소요금액의 최고 75%까지 지원함

- 셋째, 투자금은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구조조정회사 등을 통해 자금을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중소기업은 자금을 받는 대신에 회사 주식 등을 주는 형태(유상증자)임. 이들 투자회사들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금을 조성(펀드)하는데, 자금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부 참여하고 있음
- 넷째, 보험방식의 지원임. 만약 거래기업이 부도·폐업이 되면 받은 어음이나 매출채권이 거의 휴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예방해 주는 제도임. 즉, 정부에서 운용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거래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만일의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에 가입할 경우 부금납부액의 10배 범위 안에서 부도어음을 견질담보로 부도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다섯째, 신용보증방식의 지원임. 은행에서 융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수출보험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담보로 대체할 수 있음

3) 정책자금 이용 시기 및 방법

- 정부위탁융자금과 보조금은 중앙부처·시·도 또는 공공기관이 연말이나 연초에 신청기간·접수처 등을 정하여 관보·신문 등에 공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함

- 투자금과 보험금 및 신용보증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며 투자금은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등에 신청을 해야 하고, 보험은 해당보험 회사에, 신용보증서는 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하여야 함

4) 정책자금 지원의 조건

- 기본적으로 은행은 담보를 요구하고 있음. 물론 재무구조가 좋은 중소기업은 담보없이 신용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러하지 못함. 담보없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음. 즉 투자회사를 이용하는 방법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는 방법임. 물론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음
- 기술이 뛰어나고 코스닥시장까지 갈 자신이 있으면, 투자회사를 통해 투자자금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이 자금은 융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의무가 없는 양질의 자금임
 -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수출보험공사)에서 보증서를 받으면, 언제든 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음. 어떤 경우든 접수기관에서 평가를 하여 지원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정부자금(정책자금)이라고 통칭하는 자금은 정부가 은행에 위탁한 융자금을 말하므로 기본적으로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가 있어야 함. 그러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이 기술개발비로 지원하는 자금이나 교육·훈련비 등 일종의 보조금(출연금 포함)은 담보가 필요 없음

5)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 대부분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규모나 업력을 구분하지 않지만, 일부 자금은 창업초기이거나 작은 기업에게 혜택이 가도록 제한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자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예를 들어 창업자금은 업력이 5년 미만인 창업자에게만 지원하고, 소상공인자금은 자영업 또는 소기업(제조업은 50인 미만, 서비스업은 10인 미만)에만 지원하는 자금이며 또한 고용보험기금의 창업자금은 실직자 또는 퇴직자가 자영업을 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음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며,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 이행보증, 수출보험 등 수출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등 다소 차이가 있음

2. 중소기업 기술지원제도

1) 기술지원제도의 개요

-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R&D 투자여력을 확대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케 함으로써 매출증대와 이를 통한 재투자 여력 상승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는 미래 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 수준은 세계최고 수준 대비 70%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세에 있는 가운데,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어 이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 기술지원제도의 종류와 지원내용

- 초기 아이디어 단계부터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이르는 단계적인 지원체제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이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요인을 제공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및 인력, 장비와 함께 기초기술을 공급하는 한편,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음
-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R&D 자금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 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1조 3,000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 전용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음. 이들 R&D 자금은 주로 원리금 상환의 의무가 없는 출연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기술개발을 성공했을 경우에는 20~30% 수준의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 인력도 공급하여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고급기술 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대학 내에 중소기업 협력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 교수 연구실과 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하여 중소기업·교수·재학생이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학생이 졸업한 후에는 해당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양산설비 도입자금 및 원부자재 구입비용은 개발

기술사업화 용자자금, 기술평가보증 등을 통한 금융지원제도를 통해 공급하고 있음

- 양산된 제품의 판로확보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을 담보하는 신기술 성능 보험 제도를 운영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가 마음 놓고 신기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시장가치 평가 및 이전거래 알선지원 등 기술거래를 위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기술과 사업화 능력을 겸비한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지정하고, 보증 및 정책자금, 판로 등의 다양한 지원시책을 투입하여 일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선도그룹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음

3) 기술지원제도의 이용방법

- 기술지원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기술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기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데 있으며, 이러한 자금은 대부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게 비용의 일부를 무상으로 보조(출연)하는 형태로 지원됨
- 이러한 보조(출연)금은 중앙부처·시·도 또는 공공기관이 연말이나 연초에 신청기간·접수처 등을 정하여 관보·신문 등에 공고하고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함
- 어떤 경우든 접수기관에서 평가를 하여 지원하며, 신청방법·절차 등은 자금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3. 중소기업 인력지원제도

1) 인력지원제도의 개요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로 인력분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여기에는 인력의 직접채용 지원, 인재알선, 각종 인력관련 지원금 지급, 인력활용관련 세제지원, 인력양성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의 사업이 있음
-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약 110여 개의 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 인력지원제도의 종류와 성격

- 첫째, 인력의 직접 채용을 돕는 사업에는 외국 인력의 활용을 효과적으로 하여 일손이 딸리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제(’06. 12월까지)」와 「고용허가제」를 비롯해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하면 병역 의무를 대체해주는 「전문연구요원제도」와 「산업기능요원제도」 및 외국 전문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기술인력지원사업」 등이 있음
- 둘째, 인재알선 사업에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알선 사업」을 비롯하여 이공계 취업(채용)박람회, 「이공계 인력중계센터(이상 과학기술부), 「IT여성인력채용박람회(정보통신부)」, 「취업정보센터(인천광역시)」, 「취업(채용)박람회(인천 및 대구광역시)」 등 다수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셋째, 인력관련 지원금 지급사업에는 중소기업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전문인력채용장려금(노동부)」과 청년실업자 등을 새로이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노동부)」을 비롯하여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이상 노동부), 「중소기업 연구인력고용지원」, 「중소기업 석박사급연구인력고용지원」 등 인력채용 등과 관련된 다수의 지원금(장려금) 지급사업이 있음
- 넷째, 인력활용과 관련된 세제지원에는 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주택,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7% 세액공제를 하는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비롯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이상 재정경제부)등 다수의 세액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다섯째, 인력양성 지원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직업전문학교에서 현장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능사 양성(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비롯하여, 「한국영화아카데미 영상전문인력 양성(문화관광부)」,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산업자원부)」, 「S/W신기술 전문인력양성(정보통신부)」, 「공업고등학교를 통한 기능인력양성(중소기업청)」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여섯째,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에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및 임금을 지원하는 「유급휴가훈련지원」, 대기업 또는 사업주 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컨소시엄사업」(이상 노동부)을 비롯하여, 「문화콘텐츠 현장인력 연수과정(문화

관광부)»,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산업자원부)」등의 사업이 있음

- 일곱째,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에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 고용 환경개선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후 이전보다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CLEAN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지원사업」(이상 노동부)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사업(중소기업청)」등이 시행되고 있음
- 이외에도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업장내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노동부)」 등 다수의 기타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3) 인력지원제도의 이용방법

- 대부분의 인력지원사업은 특별한 신청기간은 없으며 당해 사업장이 각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인력지원사업」이나 「취업박람회」 등과 같이 이벤트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수시 공고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수시로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 시스템」에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 시스템」에 수록된 모든 사업은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해당됨. 특히,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업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보다 광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

대기업에 비해 더욱 우대지원을 하고 있음

4.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

1) 판로지원제도의 개요

-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브랜드인지도 및 효과적인 유통망 미비 등으로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통해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에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2) 판로지원제도의 내용

-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은 크게 민수부문의 수요 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과 공공부문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구매제도의 운영으로 구분되며, 시장개척사업은 지원내용에 따라 브랜드 지원사업, 홍보지원 사업, 판매공간 확대 지원사업으로 구분됨

① 공공기관을 통한 제품판매 지원제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해, 매년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시책임

- 이 공공구매제도는 2006년 7월 1일부터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데, 성능인증제품을 구매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성능보험으로 보상하고 구매담당자에게 면책을 부여하여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구매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있음
- 특히 2006년 1월 1일부터는 영세기업의 수주기회를 보장하고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급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등이 시행되고,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와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가 확대되고 있음
- 2007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구매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제품, 하청생산제품 등을 배제하는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에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에는 공공기관의 구매·입찰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공공구매 종합정보 DB구축 등의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

② 민간부문을 통한 시장개척 지원제도

- 첫째, 공동상표 개발·홍보지원
 - 다수의 중소기업이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상표를 도입,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동상표 개발비용 및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활동에 필요한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둘째,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
 -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여 방송 및 신문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음. 국

내외 품질인증 및 특허/실용신안 보유업체, 수입대체효과를 낼 수 있는 중간재·부품소재 기업, 상품의 인지도는 낮으나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정부예산으로 홍보하는 사업임

○ 셋째, 제품 판매공간 확대 지원사업

- 여기에는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지원사업, 대기업유통망을 활용한 판로지원사업, 중소기업제품 전용백화점인 ‘행복한 세상’ 입점 지원사업이 있음
- 중소기업전문전시회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문전시회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대기업유통망을 활용한 판로지원사업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나,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신제품을 발굴하여 삼성전자, CJ홈쇼핑, LG전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인지도 및 구매력이 높은 대기업의 유통채널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임
- 중소기업제품 전용백화점인 ‘행복한 세상’은 제품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매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500여 개의 중소기업을 상시 입점시켜 판로를 지원하며, ‘행복한 세상’의 운영은 정부기금 출자기관인 (주)중소기업유통센터가 맡고 있음

5.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1)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수출지원제도의 개요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필요한 시장정보, 자금과 인력, 기타 각종 인프라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임

2) 수출지원제도의 종류와 특징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제도는 지원방식 및 수요에 따라 수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지원과 무역인력 공급,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 정보제공 기타 지원 등으로 분류되며 정책자금 지원은 지원조건에 따라 용자형태인 수출금융지원사업과 보조금형태의 지원사업으로 다시 구분됨
- 정책금융 지원사업인 수출금융지원제도를 제외한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은 수출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직접 지원하거나 전문기관 등 보조를 통한 간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소요자금이 절대 부족한데 중소기업의 수출활동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과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지원 사업이 있으며, 전문기관 등 보조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사업은 「무역촉진단 파견 지원사업」, 「민간해외지원센터 사업」, 「해외 유통망 및 국제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사업」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위 사업들은 사업 목적에 따라 업종별 전문 조합·단체(무역촉진단 파견), 해외 마케팅 전문 국내외 업체(민간해외지원센터, 해외유통망 및 국제조달시장 진출지원,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변호사(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등 전문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별 지원 한도와 지원조건, 업체의 매칭부담비율 등에서는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세부 사업별로 상세한 내용의 참조 필요

3)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 정부에서는 상환부담이 없는 보조금 외에 기업이 수출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융자, 보험 등의 형식을 통해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있음
- 첫째, 융자 방식의 지원은 지원주체별로 「일반은행의 무역금융」,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수출특례 신용대출」, 「무역협회 무역기금 융자 지원제도」,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한 수출금융 직접대출」 등으로 나누어짐
- 둘째, 보험방식의 수출금융지원은 대부분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위험 관리 차원에서 보험의 원래적 기능을 제공하는 단기수출보험 또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환변동보험제도가 대표적인 제도이며, 수출보험공사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선적 전후에 수출 금융을 대출 받을 때 수출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수출신용 보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4) 인력 및 기타지원 사항

- 무역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우수 무역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은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선발·교육 후 해외 틈새 및 신흥시장 등에 파견하여 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귀국 후 창·취업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교육비 및 항공료 전액과 파견기간동안 해외 현지 활동비를 80%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 정부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현지 활동을 통해 전략적으로 수출시장 개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외 거점 등 해외진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해외 현지에서의 조기정착과 수출촉진을 위해 해외 주요국에 설치된 거점은 「수출 인큐베이터」와 「공동물류센터」가 있으며, 국내 거점으로 각 지방 중소기업청 내에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중소기업은 이들 센터에 직접 입주하여 마케팅, 법률, 회계 등 자문을 받으며 시장개척활동을 현지화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수출시장정보나 수출절차 등에 대한 상담과 자문,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6.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사업

1) 정보화지원제도의 개요

-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정보화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진보와 인터넷 활용의 급속한 확산에 힘입어 향후 중소기업 경영에서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혁

신체제 구축이 핵심과제로 대두됨

- 구체적으로 정보화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업 내부의 업무처리를 자동화하고, 고객이나 공급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하여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대외 관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점을 개설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도 진행하여 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그러나 정보화에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등 초기투자가 있어야 하며, 기업 임원이나 담당자들이 정보기술을 이해하고 도입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정보화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정보화 추진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정보화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

2) 정보화지원제도의 종류와 성격

- 첫째, 중소기업들이 쉽게 정보화의 필요성과 효과, 활용분야, 인터넷의 사용법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 교육에서부터 인터넷을 활용하여 기업을 개선할 수 있는 고급 교육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
- 둘째,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이 세무·회계 자동화, 매출입 관리, 고객관리, 기업업무 통합자동화(ERP 도입), 기업간 거래 자동화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정보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화 컨설팅」을 지원

- 셋째,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기업환경의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방법으로는 도입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직접 지원 형태도 있고, 중소IT 업체의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등 IT 공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도 있으며, 정보화 도입비용에 대해 일정비율로 세제를 감면하는 형태도 있음
- 이밖에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안내, 업종별 정보화 우수사례 소개 등 중소기업이 정보화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온·오프라인 소식지로 전달하고 있음

7. 중소기업 창업지원 사업

1) 산업별 창업의 절차

- 창업절차는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먼저, 제조업의 창업절차를 살펴보면 창업준비 단계에서 창업자는 업종, 사업아이템 등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전문가에 의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성공가능성과 위험요인 및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자금조달계획 및 사업형태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함. 그런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타당성검토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나 투자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타당성검토는 반드시 수행해야 함

- 창업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창업멤버를 구성하고 기타 핵심요소를 결정하여 개별법에 따른 사업 인·허가를 득하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게 됨
- 공장설립 단계에서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부지를 매입 또는 사용동의를 얻어 창업사업계획승인(공장설립승인)을 통한 공장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함. 특히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함
- 사업개시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훈련을 실시함. 또 4대 보험 가입, 취업규칙신고 등 각종 신고 및 등록을 마무리하게 됨
-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의 창업절차를 살펴보면, 창업 준비단계에서는 제조업 설립준비 단계와 대부분 동일하나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점포의 입지와 상권분석을 함께 하여야 함. 이는 점포 입지를 기존 상권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상권을 개발할 것인가에 따라 경영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임. 도소매업의 경우 주요 공급처를 확보해야 함
- 점포입지선정 단계는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입지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점포를 선정 계약하는 단계임. 창업자는 점포 매매 또는 임차를 위한 조건과 하자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완료해야함
- 창업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창업멤버를 구성하고 기타 핵심요소를 결정하여 개별법에 따른 사업 인·허가를 득하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개시단계에서는 직원채용, 필요자금 용자신청, 홍보자료준비 및 배포, 상품수급 계약확인 및 상품매입, 실내인테리어 등 실제 개업을 실행

2) 창업과정에서의 지원종류

- 국가경제에서 창업은 그 경제의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임과 동시에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중소기업 창업 촉진을 통한 경기활력 회복 특히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전한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창업지원시책의 목표임
-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는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보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속하게 창업을 통한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정보제공, 교육, 보육,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 일반적으로 창업이라 하면, 모든 업종의 창업을 의미할 수 있으나, 정책적인 목적에서 보면, 제조업 및 첨단 업종 창업, 생계형 자영업·서비스 창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3) 창업지원시책의 종류와 지원내용

-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는 지원 내용에 따라 컨설팅·교육, 자금, 보육 등으로 구분되며, 그 외에도 창업에 소요되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있음

- 첫째, 컨설팅·교육형태임. 창업자의 가장 큰 애로중 하나는 창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점임. 이에 창업에 대한 전문인력과 기관을 통해 창업희망자를 가이드해 줌으로써 창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 둘째,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임. 모든 정책자금이 그러하듯 창업자금도 크게 용자지원과 투자지원으로 구분됨. 용자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을 통해 담보부, 보증서부, 신용부로 대출 지원되며, 투자지원은 창업투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짐. 정부는 창업기업에 대한 용자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기술평가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사업도 동시에 추진
- 셋째, 창업보육(Business Incubating) 사업을 들 수 있음. 창업보육은 창업초기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가 성공적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지도,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며 주로 대학·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동 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자는 보육센터 입주를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음. 전국에는 약 270여 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있으며, 보육센터 입주에는 센터별로 심사가 필요
- 넷째, 창업과 관련한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로는 제조업의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의 일괄신청·처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을 추진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절차적 편의를 확충해 나갈 계획임

8. 벤처기업 지원제도

1) 벤처기업의 유형과 지정제도

-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에서 성장 유망한 혁신형기업을 기술력 등 일정기준에 의거 선별한 기업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등에 의거 인력, 자금, 판로, 세제 등 분야별각종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 발전을 유도
-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대상을 확정하는 데 의의가 있음. 그 유형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등 세 가지로 구분됨. 위 세 가지 중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벤처기업 확인기관(벤처캐피탈 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온라인(www.venturein.or.kr)으로 신청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음

2) 벤처기업 지원 개요

-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의 지원제도가 적용됨. 동법은 일반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은 특례를 중심으로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벤처기업의 자본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산업재산권의 출자 특례,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고, 기업활동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교환제도 특례, 교수, 연구원의 휴·겸직, 스타트업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또한, 입지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벤처기업촉진지구, 벤처기업집적 시설, 창업보육센터, 실험실공장 특례를 통해 벤처기업이 사업공간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 이밖에도 벤처법 이외의 여타제도에 의한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이 광고를 할 경우 요금이 할인 적용됨. 그리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한도의 적용에서 배제됨.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시 일반기업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됨

■ 주요 벤처기업 지원내용

구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	
창업	법인설립	- 설립자본금 500만 원 이상 • 일반기업은 5,000만 원 이상	벤처육성특별법 제10조의2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가능 -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 제16조의2
	산재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벤처육성특별법 제6조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벤처육성특별법 제18조의2
	창업자금 지원	- 창업 5년 미만(예비창업자포함)기업에 지원	
창업세제	법인·소득세 50%감면	- 창업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 경우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록세 면제	-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의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취득세 면제	-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3항
	재산세·종토세 50%감면	-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구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
성장금융	코스닥 등록	- 등록심사시 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률기준 하향적용 - 설립후 경과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유가증권협회등록 규정(증권업협회)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가점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우대	중진공 규정 (용자사업)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보증한도 확대 및 간이심사 대상 확대 등 우대	신보 및 기술신보규정
	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폐지 • 일반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제7조
인력	스톡옵션	- 부여대상을 외부전문인력 포함 발행주식 50% 까지 행사이익에 대해 연 3,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벤처특별법제16조3 조특제한법제15조
	병역특례	- 병역특례 신청회 회 2회로 확대(일반기업1회) - 산업기능요원 심사시 가점부여	병역법시행령 제73조
해외진출 지원	해외진출지원	- 해외 박람회·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 등 지원 - 미국SBIR 진출시 법률컨설팅, 법인설립비 지원	중기청사업 (해외시장과)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 출원시 우선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판로	방송광고	- TV·라디오 광고시 광고비 50% 지원	한국방송광고공사
기 타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 사원총수 300인까지 허용(일반기업 50인 이하)	벤처특별법 제16조의5
	주식교환	- 전략적 제휴시 신주발행을 통한 부분적 주식 교환허용(상법은 포괄적 주식교환만 가능)	벤처특별법제15조
	집적시설입주 벤처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중과세율적용 면제	지방세법제280조

9. 소상공인 지원제도

1)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개요

- 소상공인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의 제1항에 의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소상공인지원제도는 영세 자영업자, 유통·서비스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창업단계부터 업종·입지에 대한 정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창업이후에도 지속적인 경영개선이 가능하도록 상담 및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은 다시금 일반 자영업자 지원, 여성 및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됨

2)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종류와 지원내용

- 소상공인지원제도는 지원내용에 따라 상담·교육, 자금, 정보제공, 등으로 구분되며, 그 외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 등이 있음
- 첫째, 창업, 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지역센터 59개소)에서 교육정보, 업종정보, 입지상권정보, 자금지원정보, 온라인 경영진단, 창업적성 검사, 컨설팅 등 유익한 정보제공을 소상공인 전용 홈페이지(www.sbdc.or.kr)와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업 및 업종 전환시 필요한 지역별·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함. 또한,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상권정보, 창업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영업 5단계 패키지 창업 지원 등 업종별 창업스쿨, 비즈쿨 교육, 여성창업교육, 장애인 창업 교육, 사이버 창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둘째,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서 보증서의 발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지원을 하고 있음

- 셋째,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정책임.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해외 시장 개척단 등을 통해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0.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1) 재래시장 지원제도의 개요

- 정부에서는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재래시장육성 정책의 큰 전기가 마련된 2004년도에는 재래시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함
- 또한 2005년 1월에는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 지원 전담조직이 설치되었으며 민간지원 전문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가 구축됨

2) 재래시장 지원내용

- 먼저, 재래시장의 노후화된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편리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진입로 개설, 아케이드 설치, 건물 리모델링 등 시설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 설치, 진입로 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상인부담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시설개선과 아울러 시장상인의 경영혁신과 새로운 상거래기법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는 경영현대화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 주는 한편, 재래시장의 신용거래 정착을 위한 신용거래 확산시범사업, 농수축산물을 취급하는 점포에 대한 위생청결 시범점포사업, 재래시장 축제 등 이벤트를 지원하는 이벤트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우수한 재래시장 상품을 홍보하고 혁신사례를 전파하기 위하여 전국재래시장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TV방송을 통해 매주 1회 우수재래시장을 방송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건축물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시장기능을 상실한 시장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동의 요건의 완화, 용적률의 확대, 지방세의 감면 등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11. 중소기업 세제지원

1)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

-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년 2회 내지 4회 납부하여야 하며, 고급가구·모피의류 등의 제조, 귀금속류의 판매,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이외에 별도로 특별소비세도 내야 함. 또한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1년에 한 번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 지방세로는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 그 재산을 등기(등록)할 때에는 등록세, 건축물·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일정액 또는 소득세(법인세)액의 일정률로 주민세가 있음
- 또한 수입업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물품별 일정세율을 곱한 금액을 관세로 납부해야 함
- 이와 같이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세금문제는 피할 수 없으므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나는 그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함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의 종류

- 세금의 부과·징수 주체, 징수 목적,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첫째, 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관세로 분류되는데 보통세는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득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고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음
- 둘째, 지방세로는 행정구역에 따라 도세와 시세로 구분되며 도세로는 보통세로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가 있고 목적세로는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또 시세로는 보통세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가 있으며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있음

3) 사업자가 알아야할 일반적인 절세방안

-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로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임.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탈세”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임
-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먼저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4)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펴고 있음

■ 중소기업 창업과 세금지원 혜택

구분	지원내용
법인세(소득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에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창업 후 소득발생 연도부터 4년간 매년 납부해야할 법인세(소득세P의 50%) 감면
등록세 면제	• 창업 후 2년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6월내 행하는 법인설립등기 포함)
취득세 면제	• 창업 후 2년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인지세 면제	• 창업 후 2년내 금융기관의 용자관련 문서에 대해 인지세 면제
재산세 감면	• 창업 후 5년간 재산세 50%면제
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의 15% 소득공제 •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중소기업만이 적용되는 세금감면과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이 있음

■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

구분	지원내용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쿠폰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쿠폰구매·사용금액의 70%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물품구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으로부터 구입하면서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사용액의 0.15~0.3% 세액공제
설비투자 지원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사업에 대해 과세 특례

구분	지원내용
지방이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과 과밀억제권 안에 본사와 공장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시 5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법인에 비해 3~5%포인트 우대 각종감면적용 하기 전 과세표준 × 10% (일반법인 13~15%)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안 투자조세감면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투자세액 공제 가능
결손금 소급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만큼 소급해서 환급적용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대비 인정한도는 기본금액 1,800만 원(일반기업1,200만 원)에 수입금액 × 적용율을 합한 금액으로 우대
구조조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유예, 이전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면제
원천징수 방법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가능
지방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

구분	지원내용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본사) 이전연도와 그 후 6년간 세금감면 이전연도와 그 후 4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공장(본사)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금액의 3%, 5%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5%(또는 초과발생액의 50%) 세액공제 투자금액의 7%를 납부세금에서 공제 기술이전소득의 50% 감면 및 특허권 등 취득금액 3%(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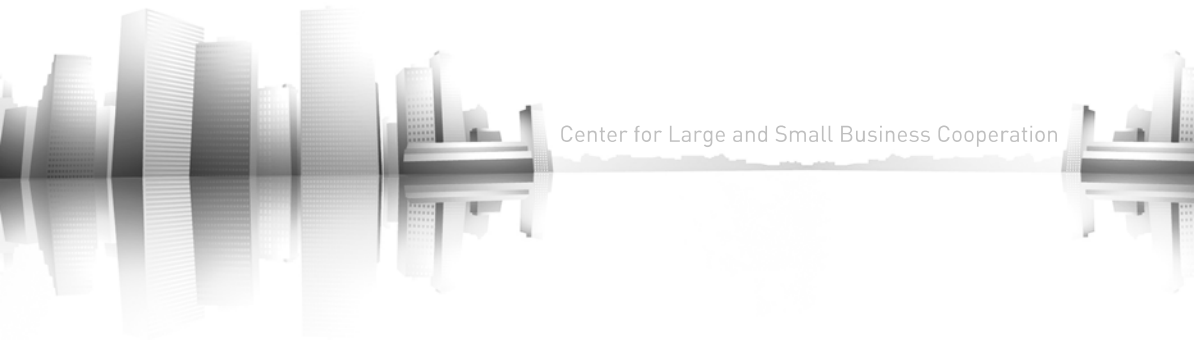
구분	지원내용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4년간 납부세금의 50% 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감면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 환경·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사업용자산 시설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05.1.1~'05.12.31 한)
고용증대를 위한조세지원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4년간 50~100% 세금감면 • 고용증대·유지인원 1인당 50만 원, 100만 원 세액공제
화물운송비 세액공제	•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위탁운송비의 0.3% 세액공제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 국세정보통신망 이용 지급조서 제출시 1만 원~300만 원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제출시 1만 원~ 300만 원 세액공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 5년간 25~100% 감면
성실신고사업자 조세지원	• 수입금액 증가비율 해당 산출세액의 50~100% 등을 공제

5) 세제 및 세정 상의 편의 제공

-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딪치는 세금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세금신고·납부·증명서 발급 등 세금관련 업무처리를 세무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국세정보와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이용
- 국세신고·납부·증명발급은 「홈텍스서비스」, 수출입통관·증명서 발급은 「인터넷 통관포탈」 이용

- ※ 홈텍스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www.hometax.go.kr을 통하여 접속
- ※ 인터넷 통관포탈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portal.customs.go.kr을 통하여 접속
- 국세관련 문의·상담은 「국세종합상담센터」, 「관세종합상담센터」 이용
 - ※ 국세종합상담센터 : 전화(1588-0060), 인터넷(www.nts.go.kr),
팩스(02-2052-3243)
 - ※ 관세종합상담센터 : 전화(1577-8577), 인터넷(call.customs.go.kr)

II. 부문별 핵심 중소기업 지원제도



1. 정책자금 지원제도

1) 중소·벤처 창업자금

□ 지원제도 개요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 중인 자와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함
 -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중소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경영혁신자금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용자지원

□ 용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생산환경 개선,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임차보증금,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사업장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확보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
- 용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를 적용하되 업체의 신용 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 원(운전자금은 5억 원)
- 용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예비창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기업 등은 재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위주의 비재무등급 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
 - 담보력이 없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설비를 기계공제조합(생산자)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활용하여 용자지원 가능(대출기간은 거치기간 6개월 이내를 포함하여 5년 이내로 운영)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042-481-4412),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2)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업체 보유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실용신안의 경우 기술평가결과 확정등록(등록유지결정)된 기술에 한함
 - 대학(국외대학 포함),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컨설팅 포함) 또는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 용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 운전자금 :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용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를 적용하되 업체의 신용 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 원(운전자금은 3억 원)
- 용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순수 신용, 보증서부(기술보증기금) 또는 담보부로 직접대출
 - 총 자산 10억 원 미만의 신청기업은 사업성 및 기술성(기술금융) 위주의 평가를 통해 용자여부 결정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금융지원팀(042-481-4375),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3) 경영혁신 자금

- 지원제도 개요
 - 혁신형기업의 성장과 일반기업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지원하여 경영체질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

□ 지원대상

- 시설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기업간 협력사업으로 구분
- 시설개선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용자제 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닐 것
 - 시설개선사업 용자지원 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형 중소기업으로 구분 지원(혁신형 중소기업은 용자지원시 우대)
 -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용자지원
 - 업력 5년 미만 업체는 중소기업창업자금으로 용자지원. 다만, 창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시설개선사업으로 용자지원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운전자금 용자지원시 전업률 30% 이상. 단, S/W 업종은 예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
- 기업간 협력사업은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업종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창업초기기업)는 참가업체수의 2분의 1 범위 이내로 제한(단,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은 창업초기 기업으로 보지 않음)

□ 용자지원 범위

- 시설개선사업
 - 시설자금 :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
 - 생산설비, 생산환경개선,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구입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 임차기업의 사업장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초기 가동비 및 기술개발비
 -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시설자금 :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임차, 건축, 매입)
 -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 기업간 협력사업
 - 시설자금 : 건물·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 등
 - 운전자금 : 사업장 가동, 경영안정, 연쇄도산방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협업화자금 : 판로개척, 기술 및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상표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용자지원 조건 및 방식
 - 시설개선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를 적용하되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 원(운전자금은 5억 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 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를 적용하되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 원(운전자금은 5억 원)
 - 융자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 실사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기업간 협력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를 적용하되 협동화실천 계획 승인시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및 협업화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시설자금 : 추진주체 45억 원, 참가업체 40억 원
 - 운전자금 : 추진주체 10억 원, 참가업체 5억 원
 - 협업화자금 : 추진주체 40억 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30억 원), 참가업체 30억 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20억 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대출 절차

- 승인신청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신청
- 평가 및 승인 : 참가업체 실태조사 및 사업타당성 평가 실시 후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여부 결정
- 용자지원 및 사후관리 :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자로서 용자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실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금융지원팀(042-481-4375),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4) 구조조정 자금

□ 지원제도 개요

-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사업전환과 회생을 유도

□ 신청대상

- 사업전환지원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 회생특례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사업전환지원사업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별표 2>의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사업전환 대상업종 또는 품목(현재 영위 업종 또는 품목)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35% 이상이며, 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 단, 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 또는 품목의 최초 매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회생특례지원사업은 <별표 1>의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아래 요건의 중소기업
- 대형사고로 피해규모가 1억 원 또는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
 - 거래 금융기관 또는 거래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
 -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업체중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수출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기업
 -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기업, 자본잠식 기업, <별표 10>의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 창업투자회사(조합)가 투자한 기업
 - 자산관리공사·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등이 회생지원대상으로 선정 하거나 출자 전환한 기업
 - 정책자금 직접대출 기업 중 부실발생 후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출자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강력한 자구노력(대주주 감자, 종업원 감축, 자산매각)을 추진하는 기업

□ 용자지원 범위

○ 사업전환지원사업

- 시설자금

- 생산 및 기술개발시설, 정보화 시스템 및 설비, 중고시설
-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사업장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사업전환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회생특례지원사업

-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용자지원 조건 및 방식

○ 사업전환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를 적용하되 업체의 신용 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 원(운전자금은 5억 원)
- 용자지원 절차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용자지원 포함)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회생특례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7.9%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 원
- 용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 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구조전환팀(042-481-4535),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5) 긴급경영안정 자금

□ 지원제도 개요

- 수출 또는 내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수출금융 확보애로 및 재해피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 신청대상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으로 구분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은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전업률 30% 이상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려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 누계기준)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용자지원 제외(다만, '07년도에 용자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 가능)
 - 재해복구지원사업은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용자지원 범위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 원부자재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재해복구지원사업 :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
- 용자지원 조건 및 방식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를 적용하되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 원
 - 용자지원 절차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를 적용하되 업체의 신용 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 기준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최장 1년 이내)
 - 수출실적 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 원
 - 수출계약 기준 : 수출 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최대 10억 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 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2분의 1 이내로 5억 원 한도
→ 수출실적 기준 이용업체는 10억 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 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용자지원 절차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현장 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순수 신용 또는 보증서부(한국수출보험공사) 방식으로 직접대출

○ 재해복구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 원
- 용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 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금융지원팀(042-481-4375),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6)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지원제도 개요

- 서비스산업 지원 등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신청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용자지원 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자를 조장하는 업종

□ 용자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용자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5.4%(재해복구시 재해복구자금 금리로 지원)
- 대출한도 : 5,000만 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

- 대출취급은행
 - 국민, 기업, 하나, 외환, 우리, 신한, 한국씨티, SC제일, 지방은행(광주, 전북, 대구, 부산, 제주, 경남),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17개

- 용자지원 절차
-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사업성컨설팅 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지원센터로부터 상담·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자금 신청
- 신청·접수처
 - 순수신용·담보부 대출 : 대출취급은행
 - 보증서부 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대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및 지역신용보증재단·협약은행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1.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상품

□ 벤처플러스 대출

○ 지원대상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별도로 정한 「기술우대보증대상기업」
 - 당행이 추천하는 우수기술보유 중소벤처기업 포함

○ 용자조건

- 대출한도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특별보증서 금액 ÷ 보증비율
- 용자비용 : 소요자금의 100% 이내(운전, 시설자금)

○ 담 보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특별보증서」

○ 지원방법 : 당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상호 추천보증

○ 기업은행 : 대상기업 발굴, 보증추천 및 대출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 대상기업 발굴, 대출추천 및 대출보증

□ 기술개발시범기업(Seed Company) 선정 및 대출

○ 선정·대출 내용

- 자체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시범기업으로 선정하여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0억 원 이내로 소요자금 범위내
 - 대출기간 : 최장 6년(거치기간 포함)
- Inno-Biz Loan
- 대출내용
 -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기술혁신형 기업」(Innovation Business)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100% 보증서로 연계대출
- 대출대상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Inno-Biz 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술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종합 연계지원 내용
 - 중소기업청 : Inno-Biz 기업 선정, 기술지도, 경영컨설팅, 정책자금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평가 및 신용보증서 발급
 - 당행 : 대출 및 신용보증 특별출연
- 대출신청·접수
 - 중소기업청 Inno-Biz 홈페이지(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기술혁신평가지표” 자체 테스트 후 신청
 - ※문의처 : 기업은행 기업고객부(02-729-7297)

2. 기업은행 네트워크론

□ 발주서방식 Network Loan

- 개요 : 납품실적 등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약정하고 발주서를 용자대상증빙으로 하여 건별대출로 지원하는 대출방식
- 용자대상 : 당행과의 협약에 따라 구매기업이 “발주서방식 네트워크론추천서”를 발급하고 동 추천서에 의해 대출을 신청하는 중소기업
- 대출한도 : 연간매출액의 2분의 1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범위내
- 대출기간 : 발주서 건별대출기일은 발주서의 납품기한 + 6개월
- 발주서별 용자비율 :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대출실행 절차
 - 구매기업이 전송한 발주내역을 은행 홈페이지의 기업전용인터넷 Site에서 차주가 직접대출 또는 은행 영업점에 내접하여 발주서 별로 대출신청

□ 실적방식 Network Loan

- 개요 : 납품실적 등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수시로 대출방식으로 지원하는 대출방식
- 용자대상 : 기업은행과 협약에 따라 구매기업이 “실적방식 네트워크론추천서”를 발급하고 동 추천서에 의해 대출을 신청하는 중소기업
- 대출한도 : 추천서상의 연간 납품금액의 6분의 1 또는 계약금액의 6분의 1

- 대출기간 : 1년 이내(최장 5년 이내 기간연장)
- 대출실행 절차 : 수시로 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범위내 수시 입출상환

3.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기업구매자금대출

○ 대출내용 소개

- 구매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해 구매한 물품 및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자금결제관리서비스를 통해 결제업무를 대행 처리함과 아울러 결제 자금이 부족한 경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세금공제 자료 등을 일괄작성 제공

○ 대출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이며, 아래의 기업은 우선 지원

- 기업은행 선정 패밀리기업, 중소기업신용평가표 신용등급 BB- 이상 기업
-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등 영업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용자조건

- 용자한도, 차주의 총매출액규모, 추정매출액 및 최근 영업상황 등을 반영하여 산정
- 대출기간
 - 대출한도 : 1년 이내(최장 5년 이내 기간연장)
 - 개별대출 : 180일 이내
- 대출금리 : 우대금리

참고자료

- 기업은행 구매자금대출에 의한 현금결제시 유리한 점
 - 구매기업의 원가절감
 - 구매자금대출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상대출로 낮은 금리가 적용
 - 현금결제에 따른 매입할인으로 금융비용을 초과하는 원가절감 가능
 - 정부의 세제지원
 - 구매대금의 순현금결제액의 0.3% 이내로서 산출세액의 10%까지 법인세, 소득세 공제
 - 구매자금대출 이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하여 정부 물품구매 입찰시 우대
 - 「자금결제관리서비스」 제공
 - 결제관리, 구매관리 대행 및 세금공제 등을 위한 자료를 기업은행 일괄작성 제공
 - 납품중소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원
 - 납품기업의 외상매출채권 한도 내에서 필요시 선택적으로 대출이 가능하여 납품기업에 대한 현금화 지원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대출내용
 - 중소기업의 담보부족난과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해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한 중소기업에게 동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
- 대출대상 : 중소기업자
- 담보취득 가능 외상매출채권의 범위 : 아래 업체에 대한 물품납품대금, 용역제공대금 또는 공사도급대금
 - 기업은행선정 패밀리기업 및 중소기업신용평가표 신용등급 BB+ 이상 기업
 - 정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과 우대어음발행기업

○ 용자조건

- 구매기업으로부터 자동이체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 용자한도 : 약정한도 범위 내에서 구매기업이 자동이체 등록한 금액 이내
 - 대출방식 : 한도거래 대출
- 채권양도 계약에 의해 매출채권을 담보제공하는 경우
 - 용자한도 : 채권양도금액 이내
 - 대출방식 : 양도채권을 담보로 하여 그 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
- 대출금리 :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 기준금리 + 신용등급별 금리
 - 정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우대어음 발행기업에 대한 매출채권만을 담보로 한 대출은 금리우대

4. 사업장 마련을 위한 대출제도

□ 부지구입자금 및 건물 신·증축, 기계시설 구입자금

○ 부지구입자금 지원기준

- 자가공장 마련을 위하여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 공장건물 착공이 가능한 공장부지를 구입하는 중소기업과 아파트형공장 등을 건축분양하기 위해 부지를 구입하는 중소기업
- 용자조건
 - 용자비율 : 분양(매매)계약금액과 감정가격중 작은 금액의 80% 이내
 - 대출기간 : 15년 이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 건물 신·증축 및 기계시설구입자금 지원기준
- 건물 신·증축 및 기계시설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용자조건
 - 용자비율 : 소요자금의 80% 이내(기계 50%)
 - 대출기간 : 15년 이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참고자료

- 사업장 매입, 경락자금 및 비업무용자산 매입자금 대출
 - 사업장 매입자금대출
 - 용자대상 : 사업장을 매입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용자한도
 - 한국감정원에서 담보목적으로 실시(최근 1년 이내)한 감정가격중 대지 및 건물 감정가격의 80% 이내, 기계감정가격의 50% 이내
 - 분양사업장은 총분양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잔액대금 범위내 지원
 - 용자기간 : 8년 이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 경락자금대출
 - 용자대상 : 법원경매물건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물건 중 부동산을 경락받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용자한도 : 경락금액에서 경매보증금을 차감한 금액 이내
 - 용자기간 : 8년 이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 비업무용자산(유입물건) 매입자금대출
 - 용자대상 : 당행소유 비업무용자산을 매입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용자한도 : 매매계약 체결된 비업무용자산 잔액대금에서 감면이자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용자기간 : 8년 이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금대출

○ 대출내용

- 중소기업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대출로 지원

- 용자한도 : 분양대금의 60%(단, 행정구역상 서울·경기·인천 소재지의 경우 70%) 또는 잔액대금 중 작은 금액 범위내

□ 사업장 분양자금(집단대출)

○ 대출내용

- 벤처빌딩, 아파트형공장, 상가 등 사업용도의 건물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일괄하여 대출신청을 받아 다수의 피분양자(분양을 받는 자)에게 개별대출로 취급하는 대출

- 용자범위 : 일반분양 또는 임대분양 받는데 필요한 중도금 및 잔금

○ 용도별 지원기준

- 일반분양

- 피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 후 사업장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의 분양
- 대출금액 : 분양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70% 이내

- 임대분양

- 분양받는 자가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일정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형태의 분양
- 대출금액 : 분양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50% 이내

- 대출기간 : 8년(일시상환 5년 이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중 선택

5. 기업은행의 각종 정책·기금자금대출

□ 산업기술자금

- 첨단기술 및 자본재 등의 시제품 개발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

지 원 부 분	지원한도	용자기간(거치/상환)	용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30억 원	8년(3/5)	소요자금의 80% 이내

□ 산업기반기금자금

-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지 원 부 분	지원한도	용자기간	용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고도화 - 부품소재산업 육성 - 지역산업 균형발전 - 산업정보화기반 구축 	20억 원	8년(3/5)	소요자금의 10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산업 발전 - 지식기반제조업 발전 - 지식기반서비스업 발전 	20억 원	8년(3/5) 5년(2/3)	소요자금의 10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합리화 - 유통부문 지원 - 물류부문 지원 	20억 원	8년(3/5)	소요자금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활성화 	20억 원	8년(3/5)	소요자금의 10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30억 원	8년(3/5)	소요자금의 100% 이내

문의처 : 기업은행 여신기획부(02-729-6780)

□ 정부의 기금 및 정책자금을 재원으로 한 대출(기업은행)

(단위 : 억 원, %)

종 류	주요 지원부문	한 도	용도	융자기간/ 거치	추천기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 정보화, 협동화, 기술개발, 경영정상화 자금 • 벤처창업자금 	0.5~50	시설 운전	시설 8~10년 운전 3~5년	중소기업 진흥공단
정보통신 진흥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설비확대 지원 • 초고속공중망구축 지원 • 디지털방송전환 지원 • 첨단IT컴플렉스조성 지원 • 홈네트워크인프라구축 지원 • 홈네트워크응용서비스 개발 • 응용기술개발 지원 	20~15	시설 운전	5년/2년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과학기술 진흥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 • 우수기초연구성과 활용지원 • 미래유망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사업당 20	시설	5년/2년	기술신용보증 기금평가센터
환경개선 지원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환경오염방지시설 • 대기환경개선 • 환경기술연구개발 	30 30 3~10	시설 운전	10년/3년	환경관리공단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시설 • 재활용기술개발 • 경영안정자금 	50 4 10	시설 운전	10년/3년 10년/3년 5년/2년	한국환경 자원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 신재생에너지 	200	시설 운전	3~15년/ 1~3년	에너지관리 공단
가스안전 관리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전소용기구입 • 안전검사시설, 장비개체 	2~10	시설	8년/3년	한국가스안전 공사 외
산업재해 예방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예방시설 	5	시설	10년/3년	한국산업안전 공단
협동조합 공동사업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구·판매자금 기준 	기준한도	운전	1회전기간	중소기업 중앙회
국민체육 진흥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구생산업체 • 체육시설업체 	1~30	운전 시설	7년/3년	국민체육 진흥공단
민간병원재정 시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병상확충지원 	추천금액	시설	15년/5년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종 류	주요 지원부문	한 도	용도	응자기간/거치	추천기관
무역기금	• 해외시장 개척 지원·수출 지원	4	운전	2년	무역협회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상품 판매·제조	추천금액	운전	3년/1년	문화관광부

종합 문의처 : 기업은행 여신기획부(02-729-6780, 7617)

□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 대출

지역별	주요 지원부문	문의처
서울특별시	• 자동화·정보화사업 외 • 애니메이션산업 등	서울시 중소기업과 02-3707-9355~6 서울산업진흥재단 02-6283-1011~8
부산광역시	• 벤처지원자금 • 입지지원자금 등	부산시 기업지원과 051-888-3101 중진공 부산본부 051-630-7400
대구광역시	• 벤처자금 • 자동화사업 외	대구시 중소기업과 053-429-2731 중진공 대구경북본부 053-740-1100
인천광역시	• 자동화사업 외 • 벤처창업자금	인천시 기업지원과 032-440-2873
광주광역시	• 구조고도화자금 외	광주시 중소기업과 062-606-3254
대전광역시	• 자동화·정보화·소기업 •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창업	대전시 기업지원과 042-250-3241 대전시 중소기업지원센터 042-864-4502
경 기 도	• 자동화사업 외 • 벤처창업자금 • 운전자금	경기도 중소기업과 031-249-4628~9
강 원 도	• 구조조정자금 • 유통구조개선자금 외	강원도 중소기업과 033-251-3318
충청북도	• 경영안정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 벤처특별자금	충청북도 기업지원과 043-220-3238~9
충청남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 벤처창업자금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041-220-3222

참고자료

지역별	주요 지원부문	문의처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외 • 벤처창업자금 	전라북도 산업정책과 063-213-2130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외 • 벤처기업육성자금 	전라남도중소기업과 062-232-1411, 226-1942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외 	경상북도 중소기업지원과 053-950-3243~4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외 • 벤처기업자금 	경상남도 중소기업지원과 055-279-3262~4 경상남도 중소기업지원 종합상담실 055-279-3228, 283-1008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외 	제주도 지역경제과 064-740-1673 중진공 제주본부 064-751-2055~7

산업은행 금융상품

1. 일반시설자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투자자금 : 공장부지 구입,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 기존 시설의 개보수 자금 • 기술개발자금 :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 자금 • 특수용도 시설자금 : 해외 직접투자자금, 공장(사업장) 인수자금(경락자금 포함)
대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자금의 80% 이내 - 단, 중소기업의 첨단 및 R&D자금 또는 벤처기업은 90% 이내
대출형식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출 : 통상 8년 이내 • 사모사채인수 : 5년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 + 스프레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06.1.2 현재) : 원화 4.43%(6개월 변동) - U\$ LIBOR(3M) + 0.35%, ¥LIBOR(3M) + 0.31% - Euro : LIBOR(3M) + 0.39%

2. 산업은행의 혁신형 중소·벤처 기업 특별지원

- 벤처기업, 6T산업 영위기업, 첨단 기술 및 제품 보유기업, Inno-Biz 기업에 지원

구 분		대상기업	업체한도	기 타
New Start 벤처 펀드	초기기술 사업화 기업	•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5억 원	연구기관 등의 추천기업
	창업 5년 이내 기업	• 창업 5년 이내인 혁신형 기업	30억 원	기술검토 실시
기술력 평가 대출	일반기술력 평가대출	• 성장가능성이 있는 양호한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 • New Start 벤처투자 후 1년 이내인 기업	시설 : 50억 원 운영 : 20억 원	기술력평가등급 TBa 이상
	기술가치 평가대출	• 특허권보유기업으로 매출실적이 있는 혁신형 기업	기술가치 평가금액 이내	기술가치 평가액의 50% 담보 인정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		• 혁신형 중소·벤처 기업 • 혁신형 중소·벤처 기업 관련 투자조합		직접투자·출자 및 CB·BW로 인수

종합 문의 : 본점 대표전화(02-787-4000, 5000, 6000, 7000)

2. 보증·보험지원제도

1) 신용보증 지원

□ 신용보증제도의 정의

-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게 부족한 신용력을 보완함으로써 기업이 필요한 사업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개시스템

□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76.6, 신용보증기금법)
 - 수출기업 등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기술보증기금('89.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신기술사업자 등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벤처기업 또는 Inno-Biz 기업 보증 전담)
- 지역신용보증재단('99.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6개 재단)
 - 지자체별로 지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 보증 조건 및 보증한도

- 신용보증기금 : 시설자금은 소요액 범위내, 운전자금은 연간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30억 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 시설자금은 소요액 범위내, 운전자금은 연간매출액의 3분의 1~4분의 1 범위 내에서 업체당 30억 원 이내이나 특별보증의 경우 100억 원까지 보증

□ 신용보증 신청자격

-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 및 이들의 단체(일반적)로서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 원 이하인 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 원 이하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별 각 재단의 관할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으로서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선 지원

□ 보증료

-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보증금액에 따라 가산보증료를 적용하고, 정책지원 대상 업체에는 차감보증료율을 적용
- 신용보증기금 : 0.5%~3.0%까지 차등적용
- 기술신용보증기금 : 0.7%~3.0%까지 차등적용
- 지역신용보증재단 : 0.5%~2.0%까지 차등적용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절차

- 보증기관방문 보증상담 → 신용보증신청 → 신용조사(보증기관) → 보증심사(보증기관) → 보증서발급

○ 구비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기업실태조사표

□ 신보·기보의 보증종류

보증종류	내용
①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금부 등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②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③ 제2금융보증 (기보 : 비은행대출보증)	• 제2금융기관 및 기타 대출기관에서 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받을 때 이용되는 보증
④ 시설대여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계, 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⑤ 사채보증 (기보 : 회사채보증)	•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원리금의 상환채무를 보증
⑥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을 보증
⑦ 이행보증	• 기업이 정부 등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보증
⑧ 납세보증	•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납부코자 하거나 징수유예를 받고자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⑨ 담보부보증 (기보 : 부동산담보부보증)	• 기업이 토지, 건물, 기계를 금융기관 및 농수축협에 담보제공하고 자금대출 받을 경우 이용되는 보증
⑩ 상거래담보보증	• 기업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를 보증
⑪ 무역어음인수담보보증 (신용보증기금 운용)	•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 포함)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⑫ 사채인수보증 (기술보증기금 운용)	• 기업이 금융회사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조합, 투자신탁운용사와의 사채인수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종류

보증종류	내용
①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금부 등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②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③ 비은행대출보증	• 제2금융기관 및 기타 대출기관에서 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받을 때 이용되는 보증
④ 시설대여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계, 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⑤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을 보증
⑥ 이행보증	• 기업이 정부 등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보증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지원팀, 신용보증기금(02-710-4571), 기술신용보증기금(02-789-9200)

2) 보험지원 제도

□ 매출채권보험 지원제도

○ 지원대상

- 전년도 매출액 150억 원 이하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 개별근보험, 개별보험 계약자는 당기 결산기 말일 현재 영업실적 1년 이상인 기업(포괄근보험 계약자는 2년 이상인 기업)

○ 지원조건

- 외상매출금 : 물품인도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 180일 이내

- 어음 : 어음발행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 150일 이내
- 납입보험료 : 포괄금보험(최저 0.1~최고 10%), 개별근보험 또는 개별보험(최저 0.5~1.0%)
-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한도 : 최고 10억 원
- 신청 및 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접수처 : 신용보증기금
 - 신청서류 : 매출채권보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최근 4분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절차 : 보험상담 → 청약접수 → 신용조사 → 보험심사 → 보험료납부 → 보험증권발급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본점(02-710-4571~84) 및 지점
- 어음보험지원
- 어음보험이란
 - 어음보험제도는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어음이 부도 처리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 어음보험가입 주요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도매업,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보험청약서 접수일 현재 영업실적 1년 이상인 기업(단, 도매업은 2년 이상)

- 어음발행인 요건
 -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어음발행인이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이 아닌 기업
 - 보험청약서 접수일 현재 당좌개설이 1년 이상인 기업
- 보험가입대상어음
 - 당좌계약에 의해 발행된 은행도 약속어음
 - 보험인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50일 이내인 기업. 단, 어음발행인이 대기업일 경우에는 120일 이내인 어음
 - 보험청약서 접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수가 30일 이상인 어음
 - 책임유예기간 설정 : 보험 가입 후 5일 이내 어음부도 사고시 책임 면제
 - 보험계약자 한도 : 8억 원, 어음발행인한도 : 3억 원
 - 보험금액(보험가입비율) : 어음금액의 60~80%
 - 보험료율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연율 0.5~5% 이내에서 어음발행인,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및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요율 적용
- 청약절차
 - 보험상담 → 보험청약 → 발행인 및 계약자에 대한 신용조사 → 보험인수심사 → 보험계약체결 → 보험료 납부 → 보험증권 교부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2-710-4164)

3)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사업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 미래 현금흐름이 있는 자산(Asset)을 담보(Backed)로 증권(Securities)을 발행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 자산의 종류에 따라 CBO(회사채), CLO(대출채권), MBS(부동산 저당권) 등으로 구분(ABS가 최광의의 개념)
 -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회사채(Bond)를 자산으로 발행
 -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 대출채권(Loan)을 자산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 발행목적
 -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무보증회사채를 인수 및 유동화하여 정책자금의 지원 효율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진출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용등급 B 이상이고 성장잠재력과 기술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 발행금리 : 만기 3~5년, 4~10%(신용등급별 차등화)
 - 상환방식 : 만기일시 및 분할상환
 - 발행한도 : 업체당 평균 25억 원 수준에서 신용등급별 차등화
-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절차
 - ① 회사채 발행 → ② 증권사 인수·대금 지급 → ③ 유동화전문회사(SPC) 양도 → ④ 은행·신보의 신용 보장 → ⑤ 유동화증권 발행 → ⑥ 채권 시장 매각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금융지원과(042-481-4377),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처(02-769-6893)

3. 중소기업 기술개발·경영혁신 지원제도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

□ 지원제도 개요

-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발굴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기업으로 육성(*Inno-Biz : Innovation Business)

□ 주요 지원내용

- 산업, 기업 은행 등 13개 Inno-Biz 금융지원 협약은행의 신용대출 지원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 일반보증 및 기술평가보증시 우대(100% 전액 보증, 기업당 보증 한도 설정 우대, 기술보증료 감면, 보증금액 1억 원 이하 사정생략 등)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구조개선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기술개발사업 등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의 신인도 평가시 우대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으로서 정상가동 중인 기업(업종제한 없음)

□ 선정기준

- Inno-Biz 분야별 평가지표에 의한 현장평가결과(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이고, 개별기술 평가점수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개별기술 등급의 종류 :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기업등록 및 자가진단 방식(Inno-Biz 관리시스템 : <http://www.innobiz.net>)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정책팀(042-481-4449),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 지원과

2) Inno-Biz 인증 코칭 프로그램

□ 지원제도 개요

- 저비용 맞춤형 인증교육 및 코칭을 통해 예비 Inno-Biz 기업의 Inno-Biz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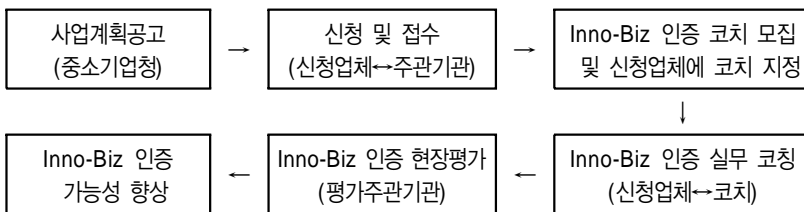
□ 지원대상

- 30개월 이상의 업력 및 기술혁신성 평가 500점 이상 획득업체

□ 지원내용

- Inno-Biz 인증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지도를 통해 예비 자가진단의 객관화 및 현장실사대비 서류준비 및 보완 지도
- 신청 업체당 15만 원 자부담(약 30%)

□ 사업추진체계



□ 기대효과

- 혁신형 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건실한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정책팀(042-481-4437),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02-2187-9600)

3)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분위기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임직원의 자율적인 기술혁신 소그룹 결성을 지원('07년 30억 원)

- 기술혁신 소그룹이란 기업의 기술연구 및 생산공정 부문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으로서 기업직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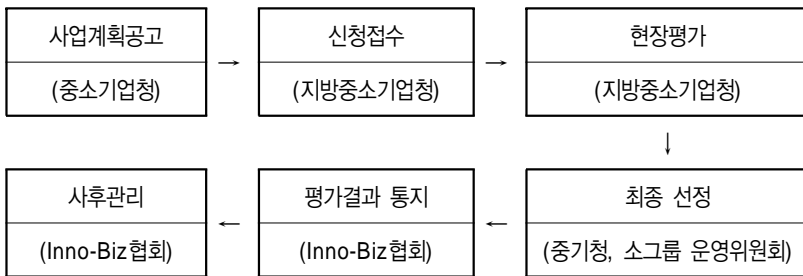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기술혁신 시스템이 구축된 Inno-Biz를 자발적 혁신 선도그룹으로 육성

□ 지원조건

- 업체당 1,000만 원 한도로 기술혁신 소그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정책팀(042-481-4434)

4)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이나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신기술·아이디어에 대하여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사업화 타당성평가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07년 5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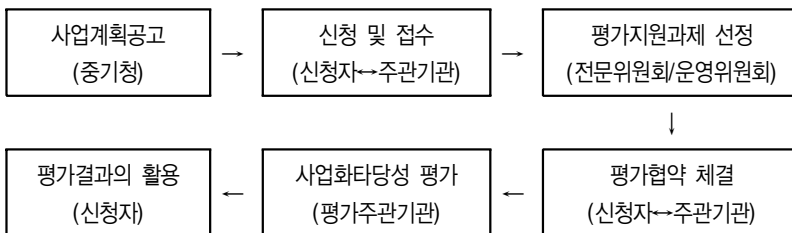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종업원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과제당 평가 소요비용의 75%를 평가주관기관에 출연(1,500만 원 내외)
 - 매년 2회 신청('07.1월 200과제, 6월 130과제, www.smbafs.or.kr)
- 신청자 부담 25%
 - 중소기업 : 현물 15%, 현금 10%(150만 원)
 - 예비창업자 : 현물 20%, 현금 5%(75만 원)

□ 사업추진체계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정책팀(042-481-4438)

5)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 개최 목적

- 중소기업 최고의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회로 중소기업의 위상 제고와 기술혁신 의욕을 고취하여 기술혁신 성과 확산

□ 개최 개요

- 일 시 : 2007. 9. 18(화)~9. 21(금) 4일간
- 장 소 : COEX 신관 1층 인도양홀(400부스, 8,010m²)

□ 행사 구성

- 우수혁신기술 전시회
 - 중소기업이 자체개발 또는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한 우수 혁신기술 및 제품 전시
 - 국내 360개, 외국 30개 기업 참여, 매년 3만여 명 참관
 - 각 지방청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을 통해 우수기술기업 발굴
- 기술혁신상 및 유공자 포상
 - 은탑, 동탑, 포장, 대통령상 등 120여 명 포상
- 부대행사
 - 기술혁신세미나, 기술이전설명회, 중소기업 기술혁신소그룹 경진대회 등

- 추진일정
 - 행사 개최요강 공고 : '07. 2월
 - 전시회 참가·포상 신청(www.innotech.or.kr) : '07. 2~5월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정책팀(042-481-4438),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02-2187-9600)

6) 신기술인증제도(NET마크)

- 지원대상 및 자격
 - 국내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로서 심사종료 후 신기술 인정일자를 기준으로 다음의 항목을 충족하는 기술
 - 공업화시험 완료단계 또는 시제품제작 완료단계에 있는 기술로 향 후 1년 이내에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 상업화한지 2년 이내의 기술
- 신청·접수
 - 신청자격 : 기업 또는 기관(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대표
 - 심사신청
 - 신청시기 : 1년에 3회 심사개최(1회 심사 120일 소요)

-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심사수수료
신청서식 (반드시 제출)	① 신기술인정신청서 ② 기술 및 제품설명서	규정 서식	1차 : 20만 원 2차 : 50만 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ISO인증서 또는 품질관리체계 요약 설명자료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첨부	
첨부서류 (있는 경우에 한함)	⑤ 공장등록증 사본 ⑥ 산업재산권,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 실적자료 또는 시험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첨부	

- 신청접수는 신청서식+첨부서류 작성한 원본 1부 및 사본 7부 제출
관련서식은 <http://www.ktmark.net>에서 서식 Down-load 가능

7) 이업종교류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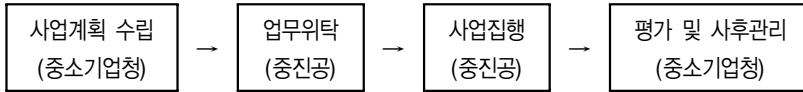
□ 지원제도 개요

- 업종이 다른 기업간 이업종교류그룹을 결성하여 개별기업이 가진 경영 및 기술정보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기업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신기술 개발 및 공동사업 추진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이업종 교류 그룹 결성 및 활동 지원
- 교류활동의 자문과 지도를 위한 교류전문가 파견
- 세미나, 이업종교류 프라자 등 각종 교류활동 지원
- 기업간 기술융합화를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반조성사업 지원

□ 사업추진체계



□ 기대효과

- 교류그룹 활동으로 다른 업종간의 유익한 경영, 기술정보 교환
- 회원사간 기술, 설비, 인력 등 자원교류를 통하여 애로문제 해결
- 회원사와의 기술융합화를 통한 신기술, 신사업 진출 가능
-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판로 확대 등 비즈니스 기회 확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정책팀(042-481-4435), 중진공 구조고도화 기획팀(02-769-6783),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www.koshba.or.kr) (02-786-5506)

8)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지원제도 개요

-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및 품질향상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 ('07년 1,995억 원)

□ 지원대상 분야

- 일반과제(1년, 1억 원) : 단기간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자유응모과제

- 전략과제(2년, 3억 원) : 성장유망품목 등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공고하는 개발과제

□ 지원대상

- 공장등록 보유 중소기업체
 - 다만, S/W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등은 공장등록에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인정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총 소요비용의 75%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20%를 기술료로 회수

□ 사업일정

구분	전략과제	일반과제
사업공고	1월 10일	1월 10일
신청접수	1월 10일~2월 9일	1월 10일~2월 22일
업체선정	4월중에 확정	5~6월중에 확정

□ 온라인 신청 접수

- www.smtech.go.kr(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042-481-4451),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9) 기업협동형 공동기술개발사업

□ 지원제도 개요

- 개발비용의 절감, 개발기간의 단축 등 기술개발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 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과제로, 기초·핵심기술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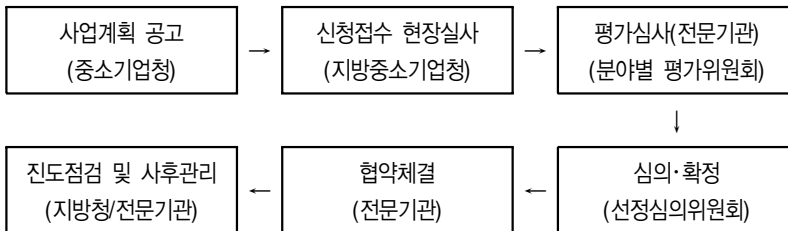
□ 지원내용

- 과제당 2년, 3억 원 한도, 기술개발비의 75% 이내를 지원
-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3년 분할)
- '07년도 지원규모 : 100억 원
 - 사업공고 : '07. 3월 말

□ 지원대상

- 과기부(산기협)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및 우리 청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 참여 2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042-481-4442, 4445),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신청서류 양식 : 중소기업청(www.smba.go.kr)/정책마당/기술지원

10)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수요기관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산화 및 신기술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개발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영안정을 지원

- 수요기관이 제시한 개발과제를 중소기업이 수행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5% 이내, 3억 원까지, 2년 이내의 과제를 지원
 -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징수(3년 분할)

□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제조업체(소프트웨어업체, 디자인업체 등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신청가능)

□ 추진절차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관리기관 : (공공부문)지방중기청, (민간부문)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사업공고(계획) : 매년 2월, 6월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042-481-4444, 4447),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2-6009-8213, 8216), 대·중소기업협력재단(02-368-8742)

11)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 해소장비 및 공정혁신 범용 장비 개발 지원으로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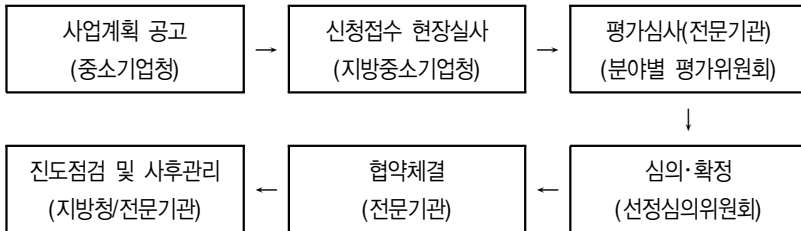
- 컨소시엄 과제 : 주관기관, 2개 이상 실수요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향후 보급·확산을 전제로 개발하는 과제(2년, 5억 원, 75% 이내)

- 중소기업 과제 : 기술개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활용이 가능한 과제(1년, 1.5억 원, 75% 이내)
- 보급·확산과제 : 동 사업으로 기 개발된 장비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보급(1년, 5,000만 원, 60% 이내)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대학, 연구소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042-481-4442, 4445),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신청서류 양식 : 중소기업청(www.smba.go.kr)/정책마당/기술지원

12)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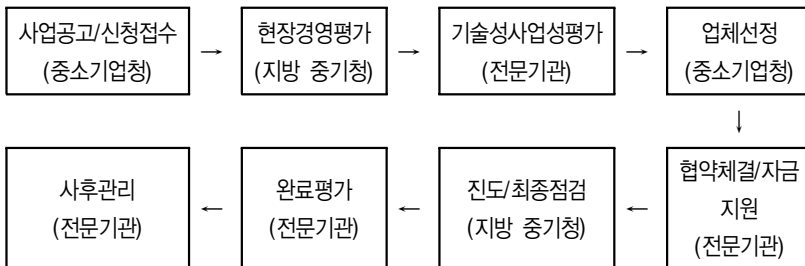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5% 이내, 1억 원까지, 1년 이내의 과제를 지원
-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징수(3년 분할)

□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체
- 소프트웨어업체, 디자인업체 등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신청가능
-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술거래·평가기관 및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이전된 기술

□ 추진절차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공고(계획) : 2월, 6월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042-481-4444, 4447),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2-3787-0521~3)

13)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결성 지원

□ 지원제도 개요

- 업종별 단체(협동조합 등), 대학,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기술 연구회를 구성·운영하여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술의 융합·복합화를 통하여 기술개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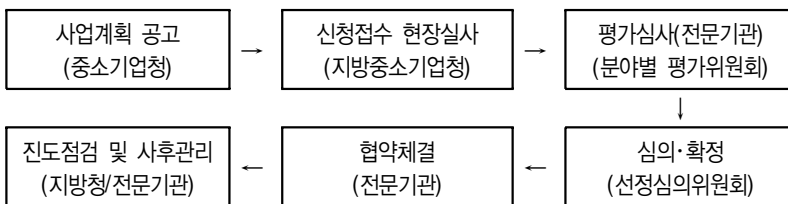
□ 지원내용

- 기술연구회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4억 원(연 2억 원)까지 지원
 - 민법상 조합형태로 구성하며 사업기간은 2년 이내
- 기술개발 성공시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회수
 - 사업공고 : '07. 3월 말

□ 지원대상

- 대표회원(대학, 연구기관, 조합, 단체) + 일반회원(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기술연구회

□ 지원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042-481-4442, 4445),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신청서류 양식 : 중소기업청(www.smba.go.kr)/정책마당/기술지원

14) BI 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BI) 입주 창업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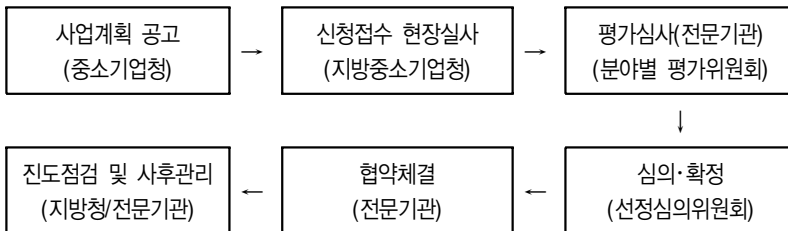
□ 지원내용

- 과제당 2년, 3억 원 한도, 기술개발비의 75% 이내를 지원
-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 '07년도 지원규모 : 30억 원

□ 지원대상

- 중기청 지정 BI내 2개 이상의 창업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동일 BI내 또는 다른 BI와의 창업기업간 동종·이업종 컨소시엄 구성 가능
- BI 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컨소시엄(BI 센터장은 컨소시엄 자문위원으로 참여)

□ 지원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042-481-4442, 4445),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신청서류 양식 : 중소기업청(www.smba.go.kr)/정책마당/기술지원

15) 신기술디자인개발사업

□ 지원제도 개요

-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독창적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실현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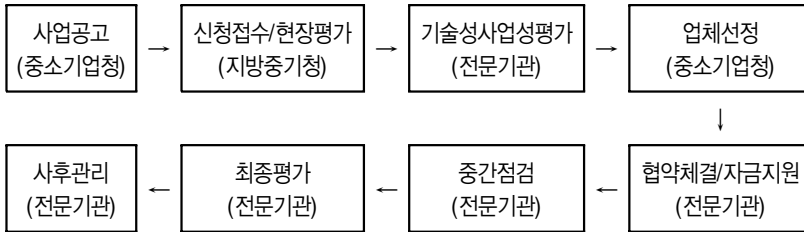
□ 지원내용('07년 예산 30억 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 5,000만 원까지, 6개월 이내의 과제를 지원
 -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징수(3년 분할)

□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관정을 받은 지 3년 이내인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출 유망중소기업
- 디자인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추천하는 공동상표 참여기업
 - 지원분야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CI, BI, 제품GUI, 포장, 캐릭터)

□ 추진절차



• 전문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 사업공고(계획) : 2월, 6월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042-481-4444, 4447),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한국디자인진흥원(031-780-2082, 2085)

1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 주요 지원내용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정보화 지원사업, 쿠폰제 경영컨설팅, 경영혁신자금 등

- 경영혁신 기술개발사업 참여자격 부여
- 지원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
 - 신청방법 : www.mainbiz.go.kr에 접속하여 기업등록을 한 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의한 자가진단 완료 후 신청

□ 지원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042-481-440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지원팀(02-3787-0531)

17) 경영혁신 연구개발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일정 수준 이상의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후보기업)에게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혁신활동 촉진

□ 지원내용

- 제조업의 경우, 쿠폰제경영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신제품/신공정 개발을 위한 R&D 과제
- 비제조업의 경우, 서비스 기술 및 제품혁신, 고객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지원 분야	주요 과제내용
서비스 기술 및 제품 혁신	- 신규 서비스 프로세스 및 구조 개발 - 신규 서비스 상품 개발 - 디지털 서비스 개발 등
고객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물류시스템 - 셀프 서비스 - 아웃소싱 - 공동생산모델 개발 등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후보기업(경영혁신자가진단(www.mainbiz.go.kr) 600점 이상인 기업)
- 지원조건 : 과제당 1억 원 한도, R&D 비용의 75%를 출연

□ 지원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042-481-440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지원팀(02-3787-0531)

18)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이 산업보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보안교육 및 보안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내용

- 산업보안교육 : 보안수준·대상별로 기술유출사례 및 대응방안, 영업비밀관리 등 산업보안교육 실시
- 보안기술개발 : 독립형 보안장비·솔루션 신규개발, 중소기업용 보급형 응용기술개발 등 지원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산업보안교육 : 혁신형 중소기업, 기업연구소 보유기업, 신기술인 증기업 등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 보안기술개발 : 보안장비·솔루션 개발능력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연구소 및 대학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후 과제신청)

○ 지원조건

- 보안기술개발 : 과제당 1억 원 한도, R&D 비용의 75%를 출연

□ 지원절차(보안기술개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042-481-440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팀(02-3787-0521)

19)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인력 등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신기술·신제품개발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07년 530억 원)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

□ 신청자격

-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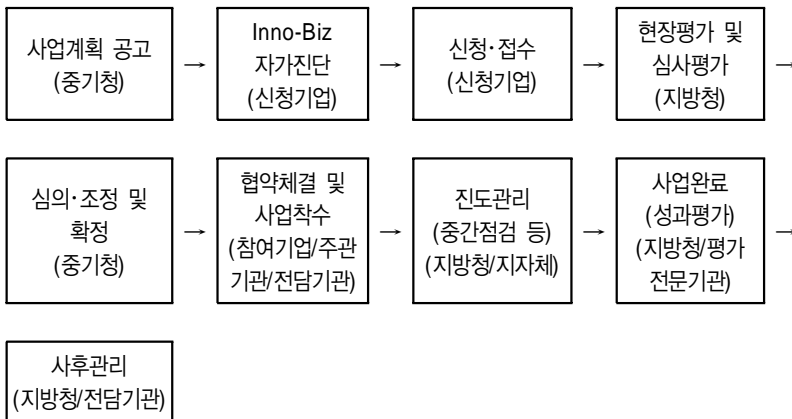
○ 지원조건

- 1억 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 1년 이내

○ 지원비율

- 산학컨소시엄(대학) : 정부(50%) + 지방자치단체(25%) + 참여기업(25%)
- 산연컨소시엄(연구기관) : 정부(75%) + 참여기업(25%)

□ 지원절차



□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연구기관 컨소시엄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팀(042-481-4457)

20) 산학협력실 지원

□ 지원제도 개요

- 대학의 실험·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를 기업·교수·학생이 공동연구하고 동시에 연구 참여 학생을 맞춤형 고급기술 인력으로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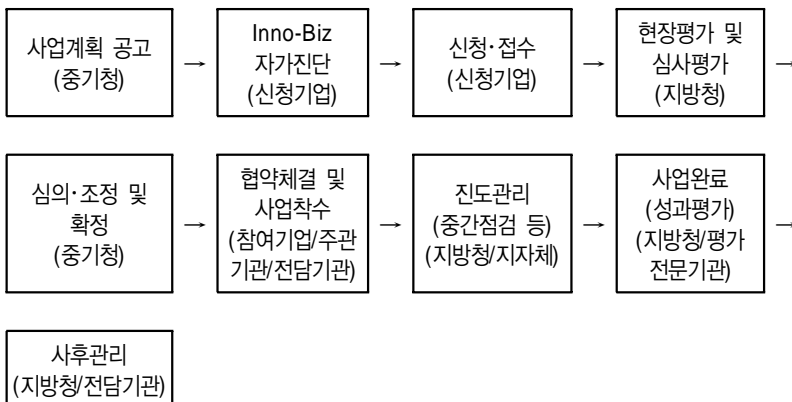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연구개발부터 사업화단계까지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 2년간 1만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1년차(75%, 7,500만 원 한도), 2년차(75%, 7,50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 대학 내에 산학협력실을 지원하여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

□ 지원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팀(042-481-4459),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21)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풍부한 인적·물적 R&D 자원을 활용하여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토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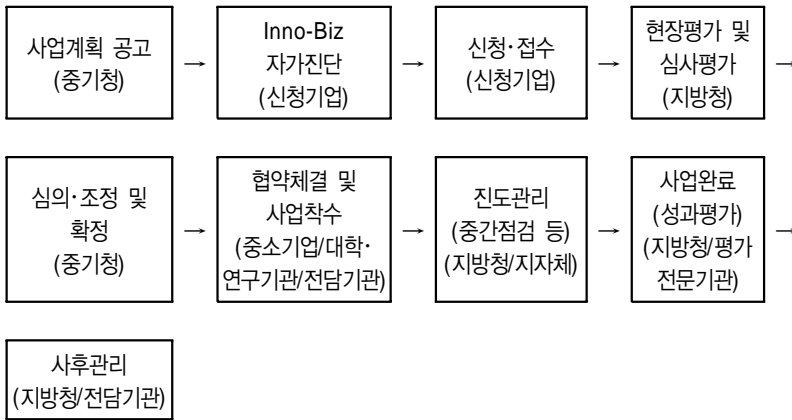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주 지원대상 : Inno-Biz 기업, 일정기간내 Inno-Biz 선정 가능기업
 - 연구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연구전담직원 인건비, 설치장소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등 연구소 설치 및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 3년간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연차별로 지원규모 축소)
 - 1년차(75%, 1억 원 한도), 2년차(50%), 3년차(25%)

□ 지원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팀(042-481-4458), 각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 지원과(팀)
 - 제주지역은 제주도청 기업지원과

22) 연구장비·인력 종합검색 시스템 구축운영

□ 지원제도 개요

- 기술개발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을 공동 활용하여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 대학·연구소의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에 대한 자체 DB에 대한 통합검색 및 이용신청이 가능한 연계시스템* 구축·운영
 - TRIN(Technology Resource Information Network)
 - : <http://trin.smba.go.kr>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이용 가능한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DB 통합검색
- 산학연간 연구장비 및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의 온라인 신청접수
- 각종 산·학·연 협력사업 및 정부지원정책 정보제공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042-481-4460)

23)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R&D 장비 사용료를 지원, 공공부문 R&D장비의 이용극대화 및 중소기업의 장비부족애로 동시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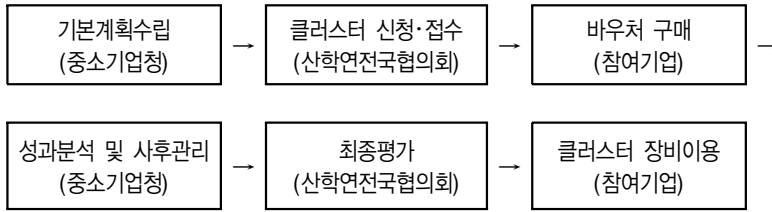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주관기관과 20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 주관기관 : 연구장비(1,000만 원 이상) 100대 이상을 보유한 4년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중소기업 :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 영위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50인 이하 소기업 우대

□ 지원형태

- 정부지원 60%, 기업부담 40%
- 클러스터 당 2억 원~4억 원 내외, 참여기업당 1,000만 원 내외
 - 주관기관에 대해 장비운용전문인력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
- 바우처제도 도입으로 수요자 만족도 및 시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장비이용료(40%)는 바우처를 구입

□ 지원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042-481-4443)

24) 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방

□ 지원제도 개요

-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이용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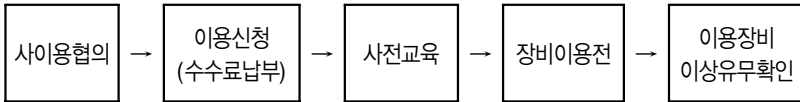
□ 이용개방장비

- 서울청을 제외한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보유 전 장비(4,500여 대)

□ 이용수수료

- 무료(*단, 인증요건유지를 위한 “설비사용계약”은 제외)

□ 이용절차



- 장비이용 신청 전에 반드시 지방청 관계자와 사전협의 필요

□ 신청 및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25)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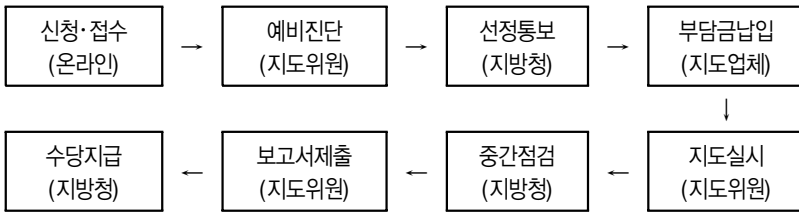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현장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대학, 연구소, 모기업의 전문가 등 전문기술 인력을 현지 파견하여 현장 밀착형으로 생산현장 애로기술을 해소·지원
 - 사업예산 : 22억 7,900만 원
 - 지도비용의 25%를 업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지원

□ 지원체계



•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 : <http://trin.smba.go.kr>

□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제주지역은 제주도청 기업지원과

26) 제품환경규제대응 기반구축사업

□ 지원제도 개요

- 국제제품환경규제에 대한 온라인 진단·교육·정보제공 및 연계지원 체제 구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율적 대응능력 확충기반 구축

□ 지원대상

- 수출중소기업

□ 지원내용

- 국가·업종별 제품환경규제에 대한 온라인 자가진단, 교육 및 소기업형 유해물질관리 시스템의 개발·보급
- 국제제품환경규제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순회교육 실시
 - 국제제품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경영 전

략 및 기법 등 교육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SPI-1357을 통한 교육내용의 동영상 제공
- 국제제품환경규제 대응매뉴얼 개발·보급
 - 대상분야 : 전기전자(RoHS), 자동차(ELV), 화학(REACH)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SPI-1357을 통한 무료 다운로드 제공
- 특정유해물질 시험분석지원
 - 경기, 부산, 광주, 대전지방청에 6대 유해물질(Pb, Hg, Cd, Cr⁶⁺, PBB, PBDE) 분석장비의 확충 및 분석지원으로 비용부담 완화 추진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042-481-4460)

27)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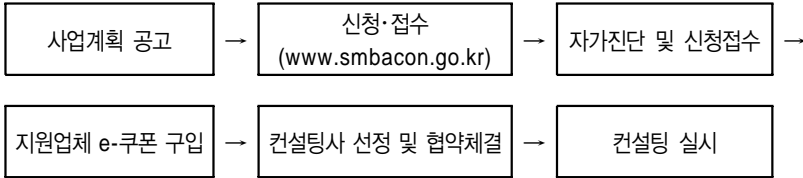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의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컨설팅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여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집, 중소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
 - ※ e-쿠폰제 도입 : 웹(www.smbacon.go.kr)상에서 중소기업에게 “경영컨설팅 쿠폰”을 판매하고, 쿠폰을 구매한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서비스(컨설팅)를 선택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원조건 : Matching(정부 50~80% 지원, 나머지 업체부담)

- 컨설팅 과제에 따라 지원금액 및 보조율 차등

※중소기업 쿠폰구입대금 중 업체부담금의 7%를 세액공제

□ 지원절차



○ 신청·접수·쿠폰발행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

○ 보다 많은 선택권 부여를 위한 e-쿠폰제 도입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구조전환팀(042-481-4553)

28) 사업전환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컨설팅 등 시책수단을 연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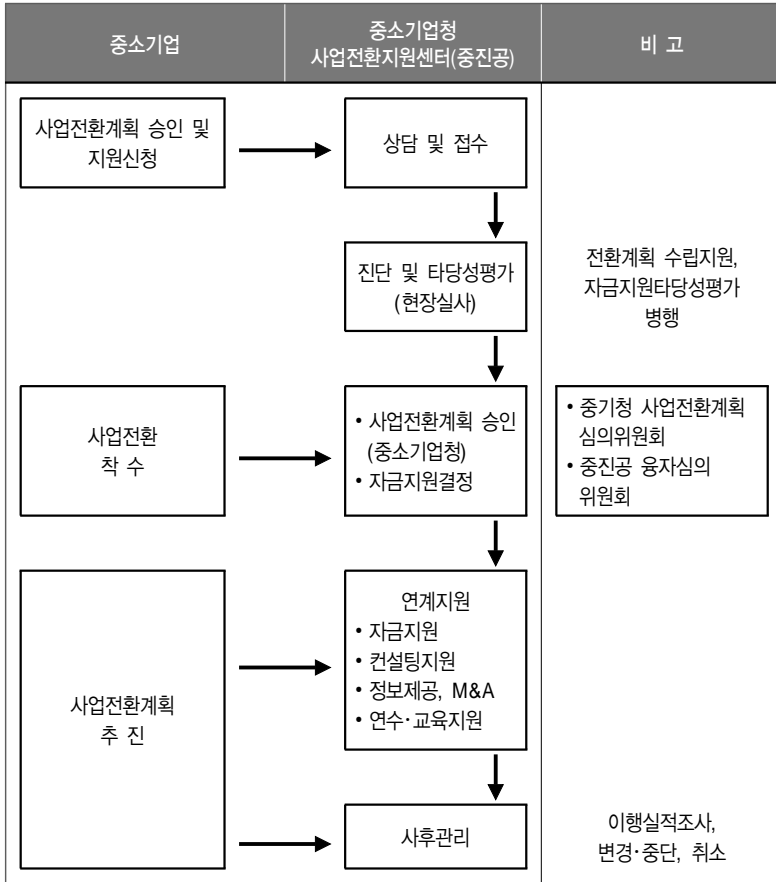
○ 사업전환 무료 자가진단 및 계획수립 지원

- 사업전환 자가진단 서비스제공(www.sbc.or.kr)

- 사업전환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상담 및 보완

-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사업구조개편, 재무구조, 신제품개발 등 사업전환계획 실행에 필요한 컨설팅
 - 지원한도 : 업체당 2,400만 원 이내 보조(컨설팅 비용의 80%)
- 용자지원
 - 지원대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중진공 자금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업종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8년, 거치 3년, 운전 3년, 거치 1년)
 - 대출한도 : 업체당 30억 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 원)
- 사업전환 절차 간소화, 고용안정 및 재직자 능력개발지원, 정보제공 등
- 신청요건
 - 승인신청일 현재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자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상시종업원수가 5인 이상 인자
 - 전환대상 업종 및 품목 전업률이 35% 이상이며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의 적용제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진행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구조전환팀(042-481-4553)

29)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술·품질 등 경쟁력을 갖추고도 해외규격인증이 없어 수출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상시종업원수 20인 이상). 다만, 수출실적 20만 달러 이상 보유

□ 지원분야

- 제품인증분야 : UL(미국), CSA(캐나다), CE(유럽), CCIB(중국) 등 87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TS 16949, TL 9000, AS 9100, ISO14000 4개 분야 (단, ISO9000 및 QS9000은 제외)

□ 지원내용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1,000만 원 한도(제품 1인증은 800만 원, 시스템 1인증은 300만 원 한도)
 - 지원 규격별, 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정액지원(1개 기업당 3개 인증까지 지원)

□ 신청·접수

- 필요시기에 연중 수시로 하며 평가 및 선정은 5회(3, 4, 6, 8, 10월)에 걸쳐 지원

□ 신청방법

- 인터넷(<http://smba.standard.or.kr>) 온라인 접수 후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로 우편 또는 직접제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467),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30)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장등록 기업으로서 공정혁신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며 공정혁신 추진시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기업 또는 정부의 구조개선자금 등 차입이 가능한 기업

□ 지원내용

- 참여기업당 1억 원 이내에서 단계별로 지원
 - 1단계 : 공정혁신을 위한 진단 및 설계비용의 50% 이내 지원
 - 2단계 : 공정혁신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75% 이내 지원
 - (1단계 진단/설계 지원금을 포함하여 1억 원까지)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사업신청서를 다운받아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에 제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정보화과(042-481-4508),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상세내용 : 홈페이지(www.smba.go.kr) 참조

31)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 사업

□ 지원대상

○ 컨소시엄 개발과제

- 대학·연구기관, 설비제작업체, 실수요중소기업(3개 이상)이 컨소시엄 구성
- 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업체

○ 중소기업 개발과제

- 직무기피요인 해소효과가 크고, 자체 개발능력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 지원내용

○ 컨소시엄 개발과제

- 과제당 5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2년)
 - 사업비의 25%(현금부담비율 12.5% 이상)는 참여기업이 부담

○ 중소기업 개발과제

- 과제당 1.5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1년)
 - 사업비의 25%(현금부담비율 12.5% 이상)는 기업이 부담

□ 신청·접수

○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2),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4. 인력지원제도

1)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력 활용

□ 지원대상

○ 외국인 고용 허용업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제조업, 사업비 300억 원 이상 SOC 건설공사,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건설 주택건설공사, 석유화학, 플랜트공사의 건설업, 농축산업(일정 영농규모 이상을 경영하는 시설 작물재배업, 축산업)

※ 300억 원 이하 건설업, 가사사용인, 간병인 또는 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사회복지사업에서는 외국국적 동포 채용 가능

□ 신청자격

- 고용,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으로서 내국인 구인신청일 이전 5개월간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사실이 없는 사업주. 3~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사업주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 지원절차

- 내국인 구인 노력(3~7일) → 인력부족 확인서('06.7.1 이후 고용허가서와 통합) 발급 및 외국인 추천(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외국인 근로자 입국(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

- 지원규모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 범위내 지원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

2)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 제도의 개요
 -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현역 입영 또는 소집대상 보충역)의 일부를 중소기업(지정업체)에 기술·기능인력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임
 - 상업기능 인력에 대하여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현역 3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07년 지원규모 : 현역 4,500명(보충역은 지원규모 제한없음))함
- 신청자격
 - 광·공업 및 에너지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법인기업(상시근로자수 : 공업분야 15인 이상, 광업분야 10인 이상)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50인 이하 소기업인 경우에 의한 소기업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용도 : 공장, 면적 : 500m² 이하)으로 공장 등록증명서 대체 가능
- 신청기간
 - 매년 6월 1일~6월 30일까지

- 신청·접수기관(광·공업 및 에너지분야 업종)
 - 중소기업중앙회 : 산업인력팀 및 각 시·도 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 본부 및 지역본부
 - 상공회의소 : 각 지방 상공회의소

- 신청 구비서류
 -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2부/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서 1부/법인 등기부등본 2부/공장등록증명서 2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청업체(공장)의 임금대장 사본 1부/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추천기준별 증빙서류 각 1부

-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
 - 신청 접수 : 매년 6월 1일~6월 30일까지
 - 심사·추천 : 매년 7월 중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병무청에 추천
 - 선정 및 배정 : 매년 11월 말까지 병무청에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업체별 산업기능요원 배정
 -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팀(042-481-4398),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02-2124-3380)

3)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한 연구인력지원

- 지원제도 개요
 - 현역입영대상자(석사 이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학사) 중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4년간 전문

연구요원으로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
무제도로써 지정업체에 특혜인력 지원

- 보충역학사는 중소기업에 한해 근무가능

□ 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기준 및 추천권자

종 류		선 정 기 준	추천권자
기업체 연구기관	대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요 원 5인 이상 확보	과학기술부 장관
	중소·벤처 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요 원 2인 이상 확보	

□ 선정절차 및 방법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연구기관이 매년 7.31까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신청·접수) → 과학기술부(검토·추천, 8.31까지) → 선정(병무청 11~12월)
- 신청기한 : 매년도 상반기(1.21~1.31)/하반기(7.1~7.31)
- 신청방법 : 직접신청 및 등기우편으로 송부(FAX 접수불가). 마감일(1.31 및 7.31) 도착·접수분까지만 유효인정
 - 단, 상반기(1.21~1.31)에는 벤처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2185-8810~9),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02-2124-3121),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042-481-4392)

4)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

□ 제도의 개요

- 정보통신, 전문설계 및 공정기술 분야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 고급기술 인력의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임

□ 지원대상

- 외국기술인력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제조업체(전업률 30%이상)나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

□ 지원내용

- 해외고급기술인력 도입사업 : 비자 발급 지원, 입국항공료 지원, 도입시 체재비 지원(700만 원 한도, 기간별 차등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운영팀(02-769-6993~4)

5)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 지원사업

□ 신청자격

- 미취업자 : 이공계분야 석·박사학위 취득자(취득 예정자 포함) 중 미취업자
-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자격기준
 - 지난 3년간 매출액 평균이 1,000억 원 이하인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연구 전담요원 30인 이하인 기업
 - 정부의 고용지원금(70%) 이외에 고용지원인력에게 정액(30%)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기관
 - 종업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4대보험 자격기준)
- 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지원규모
 - 석·박사 : 석사 1,440만 원/년, 박사 1,800만 원/년(기준연봉 70%)
- 단, 기준연봉은 석사 2,200만 원/년, 박사 2,800만 원/년
 - 중소기업 : 업체당 2명 이내
- 지원기간
 - 1년
- 신청절차
 - 석·박사 고용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인력은 “연구인력 중개알선센터(www.RNDJOB.com)”의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에 직접 등록 또는 지방 채용박람회 참가 등록
 - 중소기업 및 인력은 “연구인력 중개알선센터(www.RNDJOB.com)”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찾아 상호간 협의과정을 거쳐 고용확정

- 고용희망 중소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라인 등록 후 참가신청서를 출력, 공문형태로 첨부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
- 문의처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과(02-2110-5206), 한국산업기술재단 인력지원팀(02-6009-321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02-2185-8868)

6) 중소기업 청년채용패키지 사업

- 제도의 개요
 - 청년미취업자에게 직무교육 및 현장연수 후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연계,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원제도
- 지원대상
 -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지식 기반서비스업
 - 인력부족률이 높은 생산직 신청자 우선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은 만 29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임
- 지원내용
 - 4~5개월간 실무교육 참가
 - 수당지급 : 집합교육(2월, 30만 원/월), 현장연수(3월, 50만 원/월)

□ 지원절차

- 채용수요 파악 →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운영 → 채용예정기업 현장연수(중소기업) → 수료자에 대한 취업연계 지원(중소기업청, 업종별조합, 회원기업)

□ 신청 및 절차

- 업종별 조합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채용수요를 파악한 후, 이에 근거한 교육 훈련(5개월) 개설·실시 및 교육 수료자 취업 알선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접 수 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채용패키지 전산등록 매뉴얼 참고)
- 신청서류 : 청년채용패키지 사업 신청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042-481-4392),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02-2124-3378)

7)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사업

□ 제도의 개요

- 산업체와 공고를 연계,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공업고의 활성화를 도모('07년 70억 원)하기 위한 지원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지원대상

-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또는 해당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Inno-Biz 기업 등 정부인정 기업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 해당 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매년초(예정)
- 접수처 : 지방중소기업청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정부인정서류 사본/회사 소개서/회사 홍보자료/기타 입증이 필요한 서류

□ 지원내용

- 참여기업 : 공고연수생 최소 2년간 채용, 정부지원정책 참여시 우대(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등), 교육훈련 장비구입, 시설설치, 자금 지원우대(연리 1~2.5%)
- 참여학생 : 학자금에 해당하는 훈련비 지급(1년 120만~150만 원), 졸업과 동시에 최소 2년간 중소기업 취업, 2년 근무 후 상급학교 진학 희망시 기업 복귀 조건으로 대학 등록금 지원
- 참여학교 : 자율학교 및 연구학교 지정, 교과프로그램 개발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기타 프로그램운용에 따른 비용 지원

□ 추진절차

- 참여학교·참여업체 모집(지방중기청) → 참여학교·참여업체 선정(지방중기청) → 교육훈련프로그램 편성 및 교육훈련위탁계약(학교↔참여기업) → 취업·채용협약 체결(학교·학생 ↔ 참여기업) → 교육훈련정 지정(노동관서) → 교육훈련 실시(참여학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042-481-4398)

8)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우대지원

□ 지원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서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도, 지원요건 등에 대해 우대지원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별 지원사항

구분	지원내용
비용 지원한도	• 납부보험료의 240%(대기업 : 100%)
훈련비 지원	• 표준훈련비의 100%(대기업 : 80%)
최대 지원금액	• 납부보험료와 무관하게 500만 원까지 지원
유급휴가훈련 지원	• 1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유급휴가 훈련 요건 : 7일 이상 30시간 이상 (1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대규모기업 : 30일 이상 120시간 이상) • 임금지원 : 최저임금의 120%(대기업 : 100%)
근로자수강지원금	• 지원대상 :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문의처 :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실(02-503-9754)

9)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해 인력수급 실태파악에서 고급 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인 인력관리체계 마련을 지원 하는 제도로써 업종·지역별 조합을 통해 해당조합원사에게 공동 인적자원개발·공동채용활동 등 조합 및 회원사가 원하는 인력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조합 및 회원사의 인력구조고도화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추진비용 을 매칭 지원(정부 70%, 조합 30%), 계속 참여조합은 추진실적에 따라 매칭 비율 차등적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사업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로 사업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 인력구조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하며,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이고, 계획시행의 개시가 당해연도에 가능하여야 함

□ 지원절차

- 업종조합 등이 사업을 주관하되, 분야별 전문기관(대학·연구원·전문 컨설팅 기관 등)과 공동으로 동으로 프로젝트 수행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팀(042-481-4512), 중소기업중앙회(02-2124-3379)

10)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 존재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국가산업의 뿌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규모의 편견 등에 대한 인식전환 운동 필요하다고 판단 지원사업 도입

□ 지원내용

- 초·중·고 교사 연수 : 현직교사의 중소기업의 역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고취로 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으로 유입 유도
- 공고 2학년 대상 중소기업 이해연수(1박 2일)
- TV 및 라디오 공익캠페인 광고 : 5개 케이블 TV, 3개 라디오 채널 및 공중파 TV를 통한 인식개선 홍보
- 영화관(50여 개 극장, 영화 시작 전)을 통한 공익광고 캠페인
- 중소기업의 개념, 위상, 역할, 장점 등을 소개하는 경제교재를 제작 하여 일반국민에게 배포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팀(042-481-4392), 중소기업중앙회(02-2124-3381)

11)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활동

□ 지원제도 개요

- 대학생이 중소기업에 대한 강의, 우수중소기업 견학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취업을 유도하는 지원사업임

□ 지원대상

- 기업 : 5인 이상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5인 미만 가능)
- 인력 : 대학생(휴학생, 전역장병 포함)

□ 지원내용

- 참여학생 : 교육비(30만 원 한도) 지급, 대학별로 학점 인정
- 참여기업 : 수출기업화 사업 등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우대 지원

□ 신청절차

- 신청기간 연중 수시(방학기간 중점지원)
- 접수처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 약정 대학
- 신청서류 : 참가시 신청서, 체결시 약정서, 완료시 결과보고서, 출근부 제출
 - 문의처 : 지방중소기업청

12)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택 특별공급으로 주거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의 인력유입 촉진을 위해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지원조건

- 제조업 및 해당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소기업 근속기간과 동일직장 재직기간, 무주택 기간, 소기업 근무기간, 직계존속 부양가족, 기타 수상경력 등을 선정

□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 신청시기는 중소기업 소재 시·도의 주택건설기관에서 공급 공고 시로 신청서, 재직·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됨

□ 문의처

- 지방중소기업청

13) 산재예방시설 보조금 지원(CLEAN 사업)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안전보건시설 개선시 최대 3,000만 원(작업 환경 취약업종은 4,000만 원)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사업장당 3,000만 원(주물·도금·피혁·염색 및 화학제품제조업은 4,000만 원)
- 기본보조 1,000만 원(무상), 추가보조 2,000만 원(투자금액의 50%)

□ 지원절차

-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종합컨설팅을 실시한 후 자금지원결정
 -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CLEAN사업(1544-3088)

14)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 3개월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직전년도 월평균 급여가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 자녀
 - 다만,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 원을 초과하거나 가구당 재산세과세액이 '07년 6만 원을 초과 또는 가구당 종합토지세과세액이 '07년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
- 지원범위 : 당해년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1세대당 1명, 1년간 지

급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문의처

- 노동부 노사정책국(02-503-9730)

15)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단, 대체인력은 신규 채용하여 6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지원

□ 지원수준

- 2005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 원
- 대체인력 1인당 월 15만 원(대규모기업 10만 원)

□ 지원절차

-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사실 확인 후 지급

□ 문의처

- 고용안정센터(02-732-1630~8)

16)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관 인증제도

□ 지원제도 개요

- 기업 등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 및 단체·공공기관에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평생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중심의 사회 구축을 위한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인증기업에 인증서 수여 및 마크의 활용(유효기간 : 3년(3년 경과 후 간편 심사에 의해 재인증))
- 학습조직화 구축 등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관련 각종 지원사업 우선 대상 선정(노동부)
- 재직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위탁교육 확대 및 e-러닝 학습 콘텐츠 개발 지원(산자부)
- 100개 기업 산학네트워크 혁신사업에 참여 우선권 부여(교육부)
- 산학협력사업의 우선 대상 선정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Sector Council)의 회원자격 우선 부여(산자부)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산자부·노동부)
- 인증 획득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사업 참여 기회 제공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우대(중기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팀(042-481-4512)

17)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인력, 장비)

□ 지원대상

- 부품·소재전문기업(총 매출액 중 부품·소재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의 기업현장 상주파견(파견지원)
-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출장지원 등(기술자문)
- 선진기술 전수를 위한 연구인력의 해외파견 지원(선진기술 전수)

□ 문의처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02-3488-5141),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02-2110-5616)

18) IT협력단 파견 지원

□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 의지가 있는 유망 중소 IT기업(지원규모 : 연간 15억 원)

□ 지원내용

- IT기업 설명회장 및 상담회장 임차비, 차량 임차비 등 지원
- 연 11회 내외 11여개 전략국가에 민·관 합동의 IT협력단 파견
- IT기업 설명회, 1 : 1 비즈니스 상담회 등 개최 지원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참가 신청(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 평가 → 참가기업 선정 → IT협력단 파견

□ 문의처

- 정보통신부 협력기획과(02-750-1424), 한국통신수출진흥센터(02-2022-1475)

19)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없고,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고용(또는 일정기간내 고용예정)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단, 연구전담부서를 운영중인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연구소 : 1억 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
 - 연구전담인력 인건비 지원(3명 이내, 6,000만 원 한도)

- 설치장소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지원(3,000만 원 한도)
- 연구소 운영비, 전담교수 자문료 등 지원(1,000만 원 한도)
- 참여기업 : 소요비용의 25% 이상을 부담(현금 또는 현물)
 - 현금부담은 기업부담금의 75% 이상(또는 2,500만 원 이상) 부담
 - 현물부담은 연구기자재로서 취득가액에서 현물인정가를 별도 산정하여 계상
 - 참여기업은 자체예산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고용·유지
- 지원기간
 - 1년 원칙(단, 1년 단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 지원절차
 - 참여기업 신청·접수(기업 → 지방청) → 평가 및 선정(지방청/본청) → 협력대학 공모 및 선정(기업·전담기관 공동) → 사업수행(기업·대학·전담기관 간의 협약체결 등) → 사업완료(지방청과 전담기관의 성과평가 등) → 사후관리(지방청 또는 본청의 지속지원 등)
- 신청기간
- 별도 공고
- 접수처
 - 중소기업 소재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시험연구지원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업협력팀(042-481-4458),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팀

20)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문(K-SCORE)

□ 지원대상

- 상시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유흥·향락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과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 기업은 제외

□ 지원규모

- 업체당 최고 500만 원 한도 내에서 75% 지원(업체 25% 분담)
- 1일 지도수당 9만 7,000원(기타수당 별도)

□ 지원내용

-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의 노하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현장방문지도
- 대기업 퇴직인력 중개센터를 통한 온라인 자문 및 무료 상시상담 제공

□ 지원분야

- 경영전략 : 사업계획 작성, 전략수립 등 경영전략 분야
- 일반경영 : 인사, 노무, 교육, 성과관리 등
- 기술 : 싱글ppm, 6시그마, 품질관리, 경영혁신 등
- 마케팅·판로 : 국내외 마케팅, 수출입, 해외판로 개척 등
- 재무·회계 : 투자유치, 재무, 회계 등
- 정보화 : 정보화전략(ISP), 정보시스템구축(ERP, SCM 등)
- 기타 : 중소기업 경영 전반

□ 이용절차

- 회원가입(www.kscore.or.kr) → 퇴직전문인력 검색/선정 → 현장방문지도 신청 → 승인 통보 → 방문지도 수행 → 만족도평가표 작성/제출 → 완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이메일, 팩스 접수

□ 문의처

- 접수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협력진흥팀(Tel. 02-784-8444, Fax, 02-784-8007)

21)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신규업종으로 진출하고 진출전보다 월평균 근로자 수가 초과한 경우(근로자 산정시 제외 근로자가 있음)
-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고,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업종진출을 완료

□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금액 : 1인당 분기 180만 원, 기업당 30명 한도
- 지원기간 : 신규업종 진출 후 1년간 지원

□ 문의처

- 노동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02-732-1630~8)

22)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훈련·인력재배치 및 교대제 전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 및 휴업·휴직수당 등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절차

-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 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다음 달부터 매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사실확인 후 지급

□ 문의처

- 노동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02-732-1630~8)

23) 전직지원 장려금

□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이직 또는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지원수준

-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3분의 2(대규모기업 2분의 1)를 12개월 한도로 지원
- 지원상한액 : 1인당 300만 원

- 지원절차
 - 전직지원계획서 제출 및 실시 → 실시 후 다음 달부터 매월단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사실 확인 후 지급
- 문의처
 - 노동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02-732-1630~8)

24) 재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6월부터 5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 지원수준
 - 재고용 1인당 월 40만 원(대규모기업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지원절차
 -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www.work.go.kr)에 신청 → 사실확인 후 지급
- 문의처
 -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02-732-1630~8)

25)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지원대상

- 법정시행일 최소한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할 경우
 -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 지급 수준

- 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법정 시행일까지 지원
 - '06년 :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 1인당 분기 180만 원

□ 추진방법 및 절차

- 근로시간 단축 → 개정규정적용 특례신고서 제출 → 근로자 신규채용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사실확인 후 지급

□ 문의처

- 노동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02-732-1630~8)

26) 교대제 전환 지원금

□ 지원대상

-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규모, 업종 제한 없음)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것. 다만, 4조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예 : 2 → 3조, 2 → 3.5조(근무조 7조), 3 → 4조, 2 → 4조 등

- 교대제 전환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교대제 전환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할 것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교대제 전환 후 월평균 근로자수 - 전환 전 월평균 근로자수) × 분기당 180만 원
- 문의처
 - 노동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02-732-1630~8)

27)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동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CLEAN사업장(산업안전국 소관)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금액 : 시설·설비 투자금액의 50%(3,000만 원 한도)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 원(최대 30명)
 - CLEAN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기간 : 1회 지급

- 문의처

- 노동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02-732-1630~8)

28)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금액 : 전문인력 1인당 1분기 360만 원(월 120만 원) 기업당 3명 한도

- 지원기간 : 전문인력 채용 후 1년간 지원

- 전문인력 범위(노동부 고시 제2005-57호) : 경영기획담당자, 제품기술개발자, 경영전략 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우수 기술·기능인력 등

- 문의처

- 노동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02-732-1630~8)

29)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한 사업주

□ 지원조건

- 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1년간 지원
 - 채용후 6개월 매월 60만 원씩, 나머지 6개월은 매월 30만 원씩

□ 지원절차

- 채용 후 다음 달부터 매월단위로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사실확인 후 지급

□ 문의처

- 노동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02-732-1630~8)

30)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고용안정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기업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범위(고시 제2004-42호)

-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대상자별 지원금액은 노동부 고시 제2004-82호 참조. 지원대상자별로 정하고,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함

- 문의처
 - 노동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02-732-1630~8)

5.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

1) 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홍보 지원

□ 제도개요

- 다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공유하고 품질 및 디자인 등의 공동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이미지 제고 및 공동 판로 개척 지원

- 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지원내용

- 신청자격 : 5개 이상 중소기업, 조합 및 법인(참여중소기업이 5개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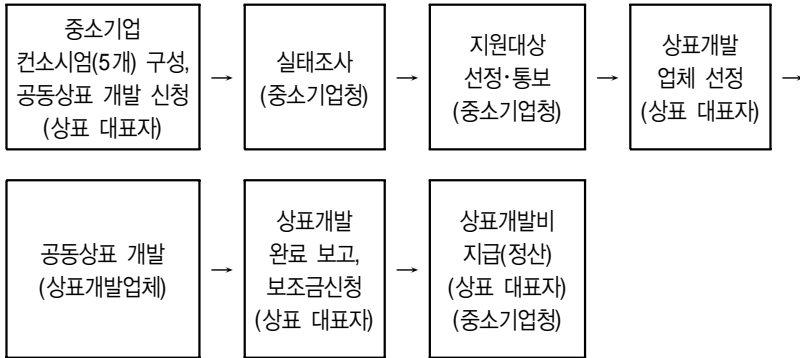
○ 지원방식

- 개발지원(연 1회) : 정부(70%) 민간(30%) 매칭 지원(5,000만 원 이내)
- 홍보지원(반기별 1회) : 정부(80%) 민간(20%) 매칭 지원

- 평가기준 : 사업추진 의지, 결속도, 전망 및 성장성 등

- 공동상표 활성화지원 : 참여업체의 경영지원(기술 및 디자인개발 등), 브랜드전략 교육지원, 협동화 사업 자금지원, 글로벌 브랜드 사업 연계지원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팀(042-481-4461)

2)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지원

□ 제도개요

- 중소기업관련 조합·단체 등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문전시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마케팅 기회제공을 통한 판로증대에 기여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10개 내외의 업종을 통합하여 연 2회(5월, 11월) 공동 개최
- 지원내용 : 장소임차료 및 고객유치 홍보비 정부지원

□ 지원대상

-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하여 성장 및 수출유망 품목

- 국내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참여 유도

-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 중소기업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단체

- 지원대상 선정

-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 선정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팀(042-481-4577)

3)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 제도개요

-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여 방송 및 신문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지원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유료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파 TV방송, CATV 및 신문 등을 통한 홍보지원 - 공중파 TV 방송 - CATV 방송 : MBN TV 등 - 신문 : 한겨레신문 등
무료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크타임즈(중진공), 신용사회(신용보증기금), 매일경제TV(중소기업 아이디어세상), 아리랑TV(COMPANY CLOSE UP), 매일경제신문(중기우수상품지상전), 한국경제신문(눈에 띄는 상품)

□ 지원대상

- 자가브랜드를 보유한 중소기업 제품
- 품질인증 및 신기술인증 제품(GQ, NEP, NET 등)
- 특허·실용신안 획득 제품
- 수입대체 효과를 낼 수 있는 중간재·부품소재 기업제품
 - 지원대상은 제조업체에 한함(단, IT기업은 서비스업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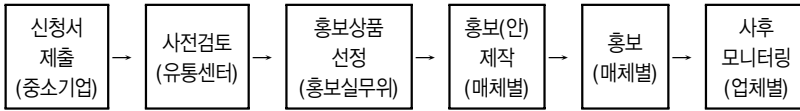
□ 신청시기

- 수시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2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공장등록증 2부, 품질인증서, 특허증, 수출실적증명원 등 우대업체 증빙서류 각 2부, 신청제품 카탈로그 16부

□ 추진체계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시책사업팀(02-6678-9320, 9312)

4) 중소기업 공동 A/S 콜센터 운영

□ 제도개요

- A/S불안으로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중소기업제품의 신인도 제고를 통한 판로확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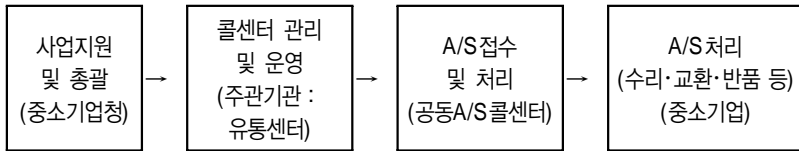
□ 지원내용

- 공동 A/S 콜센터 운영을 통해 참여 중소기업의 제품사용안내, 소비자 불만접수, 업체연계를 통한 제품 수리·교환·반품

□ 지원대상

- 국내에서 생활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자체 A/S시스템구축 업체, 제조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업체, 신용불량 업체 등 제외

□ 추진체계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팀(042-481-4577)

5)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고

□ 제도개요

- 정부 등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계획을 작성·이행하고, 이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및 경영안정 도모
- 구매계획 작성대상기관 : 122개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인	공기업	지방공기업
45개	32개	14개	19개	3개	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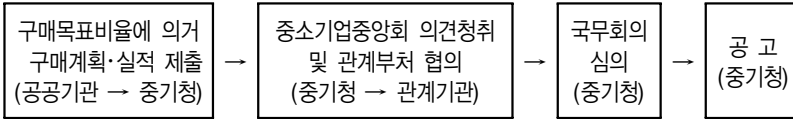
- 법적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 제10조

□ 제도운영 내용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국무회의 심의·공고
- 당해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제출시기 : 매년 2월 말
-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등을 운영

□ 제도운영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042-472-0389)

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제도개요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다양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지원
- 법적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3

□ 제도내용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직접생산확인 및 기술 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은 공사에서 분리하여 분리구매토록 하고 있음
-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소규모 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계

약이행능력 심사제도 및 규모별 경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및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에서 위의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구매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042-481-4466), 각 지방중소기업청(공공구매지원관)

7)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 제도의 개요
 -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사도급자에게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법적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6
- 제도의 내용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고 있음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일반공사는 20억 원 이상 공사 또는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적용대상 공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경쟁제품으로서 소요되는 해당 자재의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분리구매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07년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
 - 145개 품목(대상품목은 매년 중소기업청 고시로 공고)

□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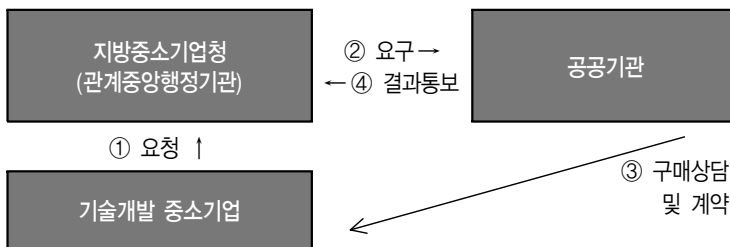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042-481-4466), 각 지방중소기업청(공공구매지원관)

8)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제도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여 기술개발 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

□ 우선구매 체계 및 절차



- 우선구매 요구대상기관
 - 3,000여 개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NEP, NET, GS, 성능인증제품, 조달우수제품
- 지원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 이내
- 계약방법
 -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제6호바목) 및 지명·제한 경쟁(성능인증제품 중 '06.7.1 이후 신청제품)
- 공공기관의 성능인증, 성능보험제품 구매시 우대조건
 -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중소기업자에게는 제한·지명경쟁입찰에 우선참가자격 부여

□ 신청·접수

- 각 지방중소기업청(사업안내 자료 : www.smba.go.kr/정책마당/판로·수출·공공구매지원)

□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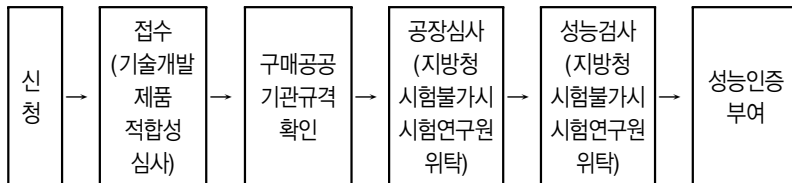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042-481-4475), 각 지방중소기업청(공공구매지원관)

9) 성능인증·성능보험제도

□ 제도의 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 성능인증 대상품목
 -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기술개발제품
 - 성능인증의 대상품목에 의약품,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은 제외
- 성능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필요시 3년 연장)
- 성능인증 절차
 - 중소기업 지방중기청



□ 성능인증·검사 수행기관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88-2 (www.kotric.or.kr)	팀장 홍성진	02-2164-0161	2634-1007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28 (www.kemti.org)	팀장 박현출	02-2102-2710	868-6903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92-8 (www.keeti.or.kr)	팀장 임병욱	031-455-7655	455-7308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65-4 (www.kicm.re.kr)	과장 안병권	02-3415-8762	3415-8755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49-2 (www.mpi.or.kr)	팀장 최완규	031-785-1283	785-1219
FITI 시험연구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4 (www.fiti.re.kr)	팀장 주종욱	02-2113-8128	3299-8154
한국의료시험연구원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2-22 (www.katri.re.kr)	차장 이수동	02-925-0177	925-544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SW시험인증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 (www.tta.or.kr)	팀장 신석규	031-724-0213	724-0189

- 성능보험 가입대상 제품
 -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성능보험 운영
 - 보험형태 : 보증보험 형식(보험료 저렴, 보험료율(0.5% 정도))
 - 보험 담보범위 : 제품자체의 교체 또는 수리가액
 - 보험기간 : 납품 후 1년(성능인증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보험사업자 :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SW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 신청·접수
 - 각 지방중소기업청(성능보험은 보험사업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042-481-4475), 각지방중소기업청(공공구매지원관)

10) 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GQ)인증 인증제도

□ 제도의 개요

-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소비자들의 낮은 인지도와 신뢰성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하여 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GQ)를 부여함으로써 브랜드이미지를 높여 판매를 촉진토록 지원하는 제도

- 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

□ 인증절차

- GQ마크 인증대상 품목 전담 7개 민간시험연구원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를 거쳐 심사에 합격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인증서 발급

○ 품질인증절차

- 신청·접수 → 자체심사 → 7개 시험연구원 신청기업 해당 시험연구원이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 인증서발급요청 → 해당 시험연구원 및 중소기업청이 인증서 발급

□ 지원내용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평가시 우대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병역특례요원 배정시 우대

- 1인 생산자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042-481-4458) 7개 전담 시험연구원

11) NEP(신기술 인증제품)인증 지원사업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써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제품

□ 인증대상 제외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가 되는 플랜트 설비, 식품, 의약품,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 동일한 사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되어 있는 제품
- 기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제품

□ 인증유효기간

- 3년

□ 지원내용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사업화자금의 융자지원
-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우선 구매
- 국내 및 해외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 등

□ 문의처

-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02-509-7281~5)

12) GR(재활용 인증제품)인증 마크

□ 제도의 개요

-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히 시험·분석·평가한 후 우수제품에 대하여 품질을 평가하여 인증마크(GR, Good Recycled Product,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부여 및 우선구매 등 지원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재활용제품(별표 1)

□ 지원내용

-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국가품질인증마크 부여
- 인증마크 제품에 대한 내수 및 수출 촉진 유도

□ 문의처

- 기술표준원 생물환경 표준팀(02-509-7261~5)

13) 공공구매론

□ 제도개요

- 공공기관에 낙찰된 업체의 계약 건을 근거로 100% 무보증 신용대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

□ 신청대상 및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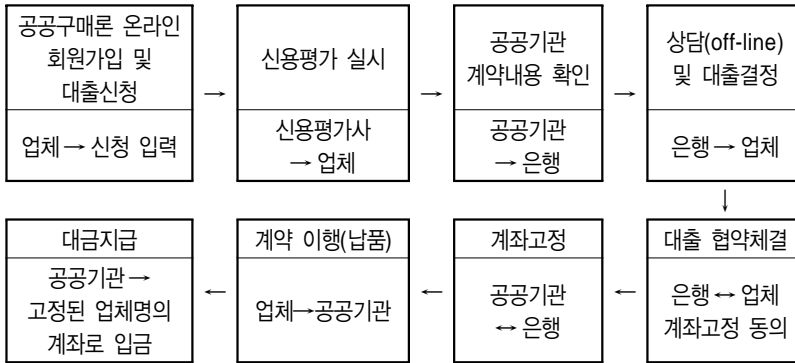
- 7개 공공기관과 계약이 체결된 업체, 연중 수시

□ 지원조건

- 은행금리 : 일반대출과 비교하여 0.5~1.0% 정도 저리 지원
 -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및 은행별 조건에 따라 대출 금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보증서 생략에 따른 수수료 절감(1% 내외), 선급금 미수령시 선급금 이행보증 절감(2% 내외)
- 대출한도 : 계약액의 최대 80%(계약액 중 선급금 제외)

□ 신청방법 및 절차

- 중소기업종합정보망(www.smpp.go.kr) 우측 중간에 위치한 공공구매론 배너 클릭 후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
 - 온라인신청시 신용평가사, 은행은 업체자율적으로 선택



□ 참여기관('07년 1월 현재)

- 공공기관 : 방위사업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주택공사
- 금융기관 :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 신용평가사 :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디앤비코리아,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 및 일반 은행 수시 참여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042-472-0389), 각 지방중소기업청(공공구매지원관)

14)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내용

사업구분		지원내용	정부 지원비율	수행기관
일반	일반과제 컨설팅	중소기업 경영관리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여 경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지적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관리의 합리화 도모	65%	한국경영·기술컨설팅협회 (02-569-8121)
	상시자문 서비스	중소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일반, 특허, 세무 등에 관한 일회성 문제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	70%	
혁신	혁신과제 컨설팅	기술력을 보유한 성장유망기업과 혁신 의지가 높은 기업의 핵심역량강화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	55%	한국컨설팅협회 (02-457-0002)
	생산성 혁신컨설팅	생산기술지도, 작업개선, 공정개선,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등 현장개선과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관련된 기술적 문제해결을 지원	55%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992)
창업 기업 지원 서비스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사업성검토부터 각종 대행업무와 창업후 초기 경영 기술지도까지 토털 지원서비스 제공	75~80%	한국창업경영컨설팅회 (042-256-1070)

□ 신청 및 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처 : 각 사업수행기관(온라인 참가 신청)
- 절차 : 홈페이지(www.smbacon.go.kr) 회원가입 → 신청·접수 → 자가진단 실시 → 지원업체선정 쿠폰구입 → 컨설팅사선정 → 컨설팅 협약체결 → 컨설팅실시 → 중간점검(지방청, 중진공) → 완료점검(평가점검단) → 컨설팅 등급평가 연계지원 → 사후관리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구조개선과(042-481-455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2-3787-0542)

15) 제조물책임(PL) 제도 대응지원

□ 제도개요

- 지난 2000년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제정, 발효되면서 제조, 유통업체가 생산 또는 유통시킨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법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음
-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PL수준평가 및 PL제도에 대한 교육, 사고발생에 따른 업체부담 최소화를 위한 보험제도의 도입 등 지원책 강구

□ 지원내용

과제별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절차	수행기관
PL 수준 평가	PL수준평가진단 희망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PL Risk 종합진단서비스 제공 • 진단비용 25% 업체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신청접수 → 평가범위 협의 → 사전점검 → 평가 실시 → 수준평가심위위원회에서 등급인정 및 결과 통보 • 신청서류 : PL평가수준신청서 1부, 팩스 및 온라인 신청 	(사)한국PL협회 2000-5715
PL 교육	PL 교육희망중소기업인(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 관련 교육수강사내인재양성프로그램, 온라인교육, PL전문기양성과정, PL수준평가사 양성교육 • 교육비 25% 업체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PL협회 및 PL교육위탁기관 신청·접수 → 해당 PL교육수강 • 신청서류 : 신청서(온라인, 팩스신청) 	(사)한국PL협회 2000-5715

과제별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절차	수행기관
PL 보험	완성품제조업체, 원재료부품제조업체, OEM업체수입유통업체	• PL사고발생시 보험금지급	• PL사고발생 → 가입업체 중앙회·손해보험사 사실통보 → 사고내용 조사 → 보험금 지급 • 신청서류 : 중앙회PL보험 가입신청서	중소기업중앙회 PL지원팀 2124-3081
PL 분쟁 조정 위원회	• 상담 : 기업, 소비자 • 알선·조정 : PL분쟁당사자	• PL분쟁상담, 알선, 조정/PL분쟁관련 사고 조사 및 원인규명 /PL사고사례 등 PL 관련정보수집 및 제공 등 • 손해배상액 500만 원 이상 최소 실비 비용부담	• 알선/합의알선신청 → 당사자의견 수렴 → 사고조사 → 합의알선 의뢰 → 합의알선 → 합의안 승낙 및 작성 → 공증 및 이행 • 신청서류 : PL분쟁알선신청서(팩스)	중소기업중앙회 PL지원팀 2124-3081

□ 신청기간

- 연중 수시(PL교육은 해당시기마다)

□ 문의처

- 지방중소기업청/한국PL협회(02-2000-5715)

16) 조달청의 우수제품선정지원(구매, 마케팅 등) 제도

□ 지원내용

- 계약가능한 우수제품은 수의계약(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매지원
- 전시회 개최, 카탈로그 발간, 언론 홍보를 통한 마케팅 지원
- 우수제품 분리발주 확대 추진 : 조달청 감리공사중 일괄대행공사에 대하여 우수제품 우선 설계·반영

□ 선정대상 및 분야

- 선정대상 : 특허, 실용신안, 신기술((NET), 신제품(NEP), 전력신기술, GQ, GR 등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및 품질인증 제품
 - 신기술·신제품 인증제품으로서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 제품
 - 특허·실용신안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제품
- 선정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건설환경, 화학·섬유, 기계장치, 사무기기, 의료기기, 기타분야

□ 신청·접수

- 조달청(본청, 중앙보급창 및 각 지방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창구

□ 신청서류(각 2부)

- 제품 및 기술명서,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정서 사본, 형식등록·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문의처

- 조달청 구매제도팀(042-481-7285)

17) 비축원자재의 안정적 판매 공급

□ 제도개요

-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비철금속과 임산물 등 원자재를 해외에서 구매하여 보관하였다가 원자재 파동 등 유사시에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지원제도
 -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연, 주석, 니켈, 펄프, 생고무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자(단체포함)로서 비축원자재 공급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계획량을 판매
- 외상판매시 이자율 차등 적용 : 중소기업(연 4%), 대기업(연 6.5%)
- 6개월 외상판매에 대하여 무이자기간 2개월 적용
- 중소기업에 한도지급보증제도 도입시행
- 한도 내에서는 수시 외상으로 비축원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한도가 부활되도록 하는 포괄적 지급보증제도
- 원클릭서비스체제로 구매신청에서부터 대금납부 및 물자인수에 이르기까지 조달청 방문없이 사무실에서 원클릭으로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제도임

□ 문의처

- 조달청 원자재비축계획담당관실(042-481-7184)

18) 우수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e-Marketplace)

□ 제도의 개요

- 인터넷상에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 특허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중소기업 특허제품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 지원절차 및 방법
 - 온라인(www.buyinvention.com) 신청
 - 우수 특허특제품 이마켓플레이스에 입점신청 → 품질평가 → 입점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62)

19)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 지원(시상·홍보)

- 제도의 개요
 - 한국일보사가 국내 우수특허기술을 장려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제품,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발명가 의식을 고취하고 신지식 강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년 『100대 우수 특허제품 大賞』을 선정 지원하는 제도
- 지원내용
 - 특허청장 이상 정부상장 추천과 함께 전시회의 부스로 무상지원 (1부스)
- 지원대상
 - 신제품 또는 히트 특허제품으로 100대우수특허제품 선정에 응모하는 업체

- 지원시기
 - 상반기(50건, 5~6월), 하반기(50건, 11~12월)
- 지원절차 및 방법
 - 공고 → 신청서 접수(한국일보) → 심사 → 선정
- 신청·접수처
 - 한국일보 디지털사업부
- 신청서류
 - 신청서, 공적조서(신청양식)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한국일보 디지털사업부(02-730-7007)(www.toppatent.com)

20)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 제도

- 제도의 개요
 - 중소기업의 우수한 발명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투자 자금 회수 및 적정 이윤확보 지원(근거법령 : 발명진흥법 제27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 추천),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제22조 내지 제26조)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자와 그 승계인 및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을 허여 받은 자

□ 지원체계

- 우선구매신청(발명진흥회) → 우선구매 추천대상 심사 → 우선구매 추천의뢰(발명진흥회) → 우선구매 추천(특허청장)
- 심사기준 : 품질의 우수성(기존제품과의 성능비교), 구매효과성(수입 대체효과, 능률의 향상 등), 제품의 경제성(예산절약, 경비의 절감 등), 구매대상기관의 적격여부, 기타 제품생산 및 공급능력 등
 - ※ '06년부터 우수특허상품으로 추천된 건은 기술표준원의 신제품 인증제도(NEC)와 연계하여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연계 추진

□ 지원대상

-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자 및 승계인
- 전용실시권자 또는 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 지원규모 및 내용

-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추천 여부 심사를 한 후 수요기관에 우선구매 추천
- 수요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유통지원팀(02-3459-2861), 특허청(042-481-8182)

21) 우수 중소·벤처기업 “G마켓” 입점지원을 통한 판로지원

□ 제도의 개요

- 온라인 판매 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망을 제공하여 매출 신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재고 처리 판매 기회 제공

□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 주관기관 : G마켓
- 입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소비재 생산업체
- 입점기간 : 2개월 내외
- 신청접수 : 연중 수시
- 신청기관 : 서울지방청 사이트 “행사”란에서 온라인신청
- 추진절차 : 신청접수(업체 → 서울지방청 : 연중 수시) → 서류심사(서울지방청 : 쇼핑몰 적합여부, 제조업체) → 추천(서울지방청 → G마켓 : 1차서류통과업체) → 입점결정(G마켓 : 담당 MD와 업체상담) → 협약체결(G마켓 ↔ 업체 : 수수료 책정 등) → 입점(업체 : 2개월 내외) → 판매실시(업체) → 배송(업체 → 소비자 : 해당업체 책임) → 사후관리(업체 → 서울지방청 : 입점결과 실적 월별보고)

□ 문의처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02-509-7012~3)

22) 특허법률구조사업 시행

□ 제도의 개요

- 특허등록(특허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등)을 받은 자로서 학생이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국가 유공자, 소기업, 영세업체가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원하여주는 제도

□ 법률구조 대상자

-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 제6조 제1항에 근거를 받은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대학원의 재학생은 제외), 기능대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의 재학생, 단독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수행능력이 없는 영세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 해당 사건의 공익적 파급효과가 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자로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등임

□ 지원조건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한 사회·경제적 약자가 타인의 침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거나 주장하는데 따른 심판 또는 소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및 방법

- 특허법률상담 → 특허법률구조사업 신청 →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 회심사 → 심판 또는 소송비용 지원

□ 지원규모 및 내용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무료 특허 법률상담
-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
- 심판 200만 원 이하/건당, 소송 500만 원 이하/건당

□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041-481-5190), 대한변리사회(02-3486-3486)

6.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1) 무역구제 제도

□ 구제대상

-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제도 종류

-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을 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 → 덤핑 차액의 범위 내에서 관세 부과
-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
 -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 보조금 범위 내에서 관세 부과
- 세이프가드제도(Safeguard, SG)
 -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 → 수입수량제한, 관세율 인상 등 조치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 수출입거래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 기타 건전한 무역질서 저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있을 때 →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

금 부과

- 교역상대국의 WTO 규범 위반 사건 조사 → WTO에 제소 등 조치
- 문의처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02-2110-5573)

2)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서 신청 전년도에 수출실적(L/C 수출실적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업체(제조업 전업률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업체)
- 지원내용(비예산사업)
 - 수출지원기관의 소관 수출지원사항의 우선지원
 - 지원은 지정받은 날부터 2년간 유효하며 중기청 각종사업에 우선 지원
- 지원절차
 - 신청공고·접수 → 현장평가 → 지정대상통보(지정서 발급)
- 신청·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신청서류
 - 수출이행계획서 1부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474), 각 서울지방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3)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 지원대상

- 수출기업화 의지가 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제조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서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미화 2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단, 참여횟수 총 3회로 제한)
 - 다만, 전년도 수출기업화사업에 참여하여 첫 수출에 성공하거나 수출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은 참여횟수 및 실적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 업체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음사업 참여기업에 지원

사업과정	세부 사업내용
기초 마케팅 능력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교육 • 해외홍보지 상품광고 • 동영상 e-카탈로그 제작 등 • CEO 수출마케팅전략과정 • 수출컨설팅 및 통·번역사업
해외시장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전시회(시개단) 참가지원 • 해외 시장조사 및 해외바이어 알선 • 해외지사화사업 등

□ 신청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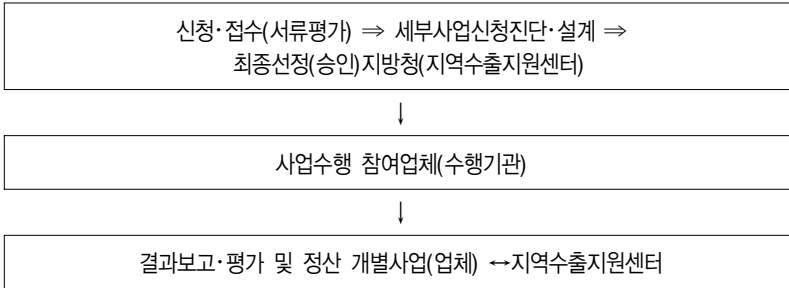
- 신청기간 : 1.25~2.13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www.exportcenter.go.kr)
- 신청서류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서 등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신청대상업체 선정 → 유관기관 지원실시 → 추진현황 점검
- 문의처
-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4)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 제도의 개요
- 창업초기 및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
 - 수출 초기단계부터 지원하여 자체 수출역량 제고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기업부담금 10%)
 - 전년도 직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 선정기준 : 수출유망성, 경영자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청별로 선정
- 세부 지원내용
 - 수출실무교육, 디자인 개발지원,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수출마케팅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추진체계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042-481-4474)

5)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운영

□ 제도개요

- 무역협회, 중소기업은행, 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디자인진흥원 등 수출지원기관이 한곳에 모여 수출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One-Stop으로 일괄 처리

□ 지원내용

- 수출 마케팅지원
 - 아리랑 TV, CJ39쇼핑 등 언론매체를 통한 해외홍보지원
 - 홈페이지, 수출용 전자카탈로그제작 지원(중진공, EC Plaza)
- 교육지원
 - 무역실무 기초교육 지원(수출현장전문인력 활용)
 - 해외 바이어발굴 등 전문분야는 외부전문가 활용

- 외국어 통·번역 지원
 - 기계, 금속, 전기·전자 등 전문분야 통·번역(대학 등)
 - 카탈로그, 서신, Offer Sheet, L/C 등 번역
 - 외국 바이어와의 상담, 계약 등 국내 방문시 통역지원
- 산업디자인지원
 - 기술지도사업과 연계하여 Mock-up 제작
 - 디자인진흥원을 통한 컨설팅 지원
- 인터넷 무역지원
 - 영문 홈페이지 제작, Inquiry-Offer 관리 Tool 제공
 -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 문의처

- 지방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6) 수출중소기업 Global Brand 육성

□ 제도개요

- 가격 및 품질경쟁력은 갖추고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수출 중소기업 제품을 Global Brand로 육성하여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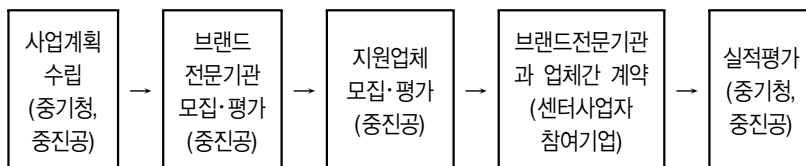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 원 또는 수출실적 500만 달러(혁신형기업은 20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브랜드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기업 브랜드 경영실태에 대한 컨설팅(진단)에 따라 해외 타켓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고유브랜드를 개발하고 개발된 브랜드의 해외마케팅을 지원

□ 지원조건

- 선정 업체에 대해서는 브랜드 개발, 브랜드 마케팅 등 세부 사업별 참여형태에 따라 최대 1억 원(매칭 비율 50%)까지 지원

□ 추진체계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042-481-4424, 4493),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2-769-6724)

7)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 제도개요

- 전문업종 중심으로 해외유명 박람회·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파견하여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단체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 중소기업 업종별 조합 및 단체 등
 - 산자부, 정통부 등 타 부처 중복 지원대상은 제외
- 지원내용
 - 단체 해외전시회 참가 : 부스임차료 및 부스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료 등 공통경비
 - 시장개척단 : 상담장 임차료, 버스임차료, 통역비, 바이어 섭외비 및 광고비, 통신비 등 공통경비
- 추진체계
- 신청 접수 및 지원대상 선정(전년도 12월) → 전시회 및 시개단 파견(1~12월) → 파견후속 지원 및 결과보고 → 사후정산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042-481-4424),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팀(02-2124-3221)

8)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운영 지원

- 제도개요
- 수출대행기관을 활용한 수출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독자적 수출능력 배양을 위하여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거점과 BRICs, 중동 등 신흥시장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
- '98년 시카고에 최초 개소 후, 현재 6개국 9개소 운영중

□ 지원내용

- 현지마케팅고문, 법률, 회계고문을 활용한 자문 제공
- 현지수출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사무공간(3~4평), 공동회의실, 사무용집기, 전화·인터넷 등 사무여건 제공
- 현지진출 기업에 통합 물류지원서비스 제공 및 중소기업 단기 출장직원의 비즈니스편의 제공

□ 입주업체 선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업체 선정

■ 운영현황

(인원 : 업체, 평)

지역	미 국			중 국		독 일	일 본	브라질	베트남	계
	시카고	LA	워싱턴	북경	광주	프랑크푸르트	동경	상파울로	호치민	
개소일	'98.9	'03.12	'04.3	'02.8	'03.11	'00.4	'04.3	'04.11	'04.12	9개
입주규모	18업체	16업체	10업체	18업체	18업체	18업체	10업체	10업체	12업체	130업체
총면적	150평	186평	110평	115평	192평	256평	52평	127평	128평	1,316평
평균 전용면적	3.8평	3.7평	4.1평	3.5평	4.5평	4.1평	2.3평	3.5평	3.5평	3.7평(평균)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042-481-4424),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2-769-6954)

9) 해외진출 민간거점활용 지원사업

□ 제도개요

- 주요 수출지역에 신뢰성과 전문능력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해외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인력 및 정보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중 해외진출 성공 가능성이 큰 업체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해외진출 사업으로서 수출·해외투자를 위한 시장조사, 협력파트너 발굴, 계약 성사 등 컨설팅서비스 제공
- 해외유통·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도 '06년부터 민간해외지원센터에서 통합지원

□ 지원조건

- 소요비용의 60~80% 지원(일반기업, 혁신형기업, 수출초기기업 등에 따라 차등)
- 지원한도 : 지역별로 1,000만~1,600만 원

□ 추진체계

- 사업계획 수립 → 센터사업자모집·평가 → 지원업체모집·평가 → 센터사업자와 업체간 계약 → 센터별 실적평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042-481-4424, 4493),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2-769-6722)

10)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 제도개요

- 현지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자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인턴사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무역전문인력 양성
- 해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기여

□ 제도내용

- 해외시장조사 요령 및 시장특성분석, 세일즈기법 강화 등 현장실무 중심의 국내교육 및 중소기업 현장연수 실시
 - 국내교육 3주간(미취업자는 배제하고 근로자 위주)
- 국내교육 이수 후 중진공수출인큐베이터, KOTRA 해외무역관, 해외지사 등에 파견(기본 6개월, 300명)
- 파견 개척요원은 중소기업 자사제품에 대한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상담 및 수출계약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전개함으로써 수출능력 배양

□ 지원대상

- 근로자 45세 이하, 인턴사원, 미취업자 40세 이하(단, 근로자는 공고일 현재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에 한하며 인턴사원, 미취업자는 대학 재학생 제외함) 다만 동 요
원으로 1회 이상 선발, 파견된 자는 제외(단, 중소기업근로자는 신
청 가능)

- 외부 공인 성적서 보유(영어 TOEIC 600, TOEFL 500, TEPS 530, 중
국어 6급, 일어 JPT 600 이상)

□ 지원내용

- 국내교육비 및 왕복항공료 전액지원, 실적우수자 성과급 지급
- 현지 체재비는 참여기업의 수출능력별로 차별화 지원(50~100%)

□ 추진체계

- ① 사업시행 계획 공고(중기청) → ② 개척요원 및 후견 기업 온라
인 신청·접수(지방청) → ③ 1차 서류심사(지방청) → ④ 2차면접·
필기전형(중기청) → ⑤ 최종합격자 발표(중기청) → ⑥ 국내교육
및 중소기업 현장 연수 실시(연수원, 지방청) → ⑦ 해외파견 및 현
지활동(KOTRA 수출 인큐베이터 등) → ⑧ 사후관리(중기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042-481-4465),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지
원처(02-769-6727/25)

11)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 제도개요

- L/C개설, 원자재구매 자금지원 등 수출요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
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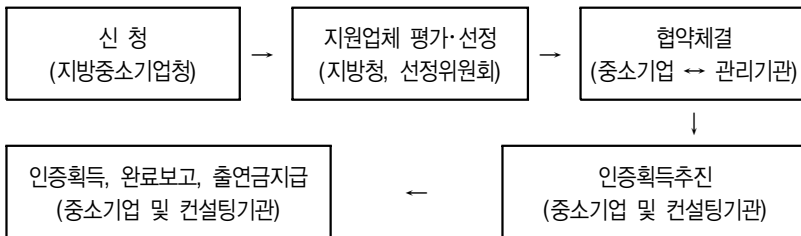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40~70%까지 지원

구분	지원비율	자체 부담비율	수출실적
수출초보기업	70%	30%	수출 100만 달러 미만
수출유망기업	40%	60%	수출 100~500만 달러

□ 지원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 NRTL, RoHS 등 68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 5개 분야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042-481-4465), 지방청(신청·접수)

12) 수출대상국 제품규격 보급

□ 제도개요

- 수출시 요구되는 규격인증을 위해 필요한 해외규격을 중소기업이 손쉽게 열람하고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산업기술시험원에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를 설치·운영

□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 주요 사업내용

- Web기반의 전세계 152개 규격발행기관, 42만종의 해외규격인증 정보를 DB화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인증관련 최신정보를 인터넷(www.standard.or.kr)으로 제공
 - 해외규격(약 42만 종)의 검색, 열람 및 규격보급서비스
 - 인증관련 규격초록 및 해설서 발간
 - 해외인증기관 소개 및 인증절차 안내
 - 해외인증기관의 최신뉴스, 정보제공
 - 인증관련 사이트안내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02-860-1332),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042-481-4465)

13) 온라인 수출지원

□ 제도개요

- 중소기업 전문 무역사이트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com)를 활용하여 수륙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제조업 또는 지식·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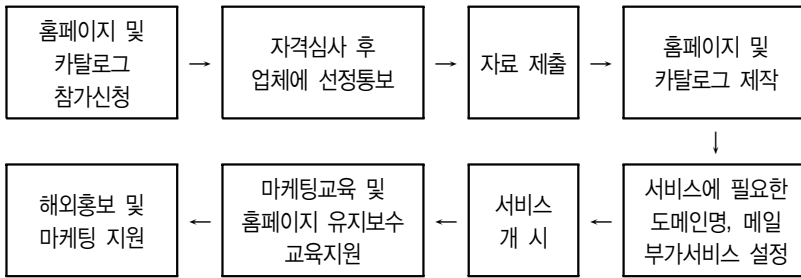
□ 선정기준

- 수출기업화사업 및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
- 벤처기업 및 특허, 각종 국내외 공인규격 및 품질인증 획득업체
- 수출성장가능성이 높은 핵심역량 및 첨단제품제조기업 등

□ 지원내용

구분	해당사업	사업내용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	홈페이지 구축	-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홈페이지 구축지원
	고품격 전자카탈로그	- 플래쉬, 3차원 이미지, 가상 이미지, e-Book 등의 고품격의 전자 카탈로그 구축 지원
	기업블로그 구축	- 홈페이지를 보유한 기업의 정보를 바이어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
	웹메일 지원	- 업체 도메인명을 적용한 웹메일 서비스 지원
해외 바이어 발굴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전후 마케팅	- 해당국가 유력 바이어DB 제공, 업체별 홍보이메일발송 등 마케팅 지원
	온라인 바이어 알선	- 국내업체 발굴을 요청하는 바이어에 대해 지역본부 등을 활용 기업 알선
	검색엔진 등록	- 해당 기업의 상품명을 해외 주요 검색엔진에 등록하여 온라인 홍보 지원
	웹타겟마케팅	- 해당 품목 바이어에 대해 이메일 마케팅 지원
	대기업 상품등록	-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주력상품 500개 등록(중소기업 관련제품 위주)
	GoBizKorea 사이트 운영	- 한글, 영어 중소기업관 사이트 운영 - 한국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제조업 중심의 사이트 - 편리한 검색, 상품간 연계성이 높은 카테고리별 배치 - 자발적 기업간 거래 및 커뮤니티 제공

□ 추진체계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e비즈니스사업처(02-769-6597)

14) e-무역상사 운영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300만 달러 이하인 수출기업

□ 지원내용

- e마켓플레이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e-트레이드 제반기술 및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여 거래 알선, 상담, 계약, 수출대행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지원
- 개별 e-무역상사의 오피 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출기업 및 상품의 온라인 프로모션으로 거래제안 발송 및 해외판로 개척

□ 지원절차

- 무역협회는 해외마케팅 및 거래선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e-무역상사 3개사(EC21, ECPLAZA, TPAGE)를 지정

- 매년초 e-무역상사의 수혜대상기업(중소무역업체)을 모집하여 각 e-무역상사에 배정, 1년간 해외마케팅 지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매년초 무역협회 공지사항 및 신문공고를 통해 신청
 - 참가경비 : 업체부담금 50만 원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추진센터(02-6000-5514)

15) 무역기금 융자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과거 1년간 융자대상 수출 실적 1,000만 달러 이하
- 지원내용
 - 수출계약 이전단계의 해외시장개척(해외시장개척지원 용자)
 - 수출계약 이후의 수출이행(수출지원 용자)
 - 지원한도 : 3억 원
- 지원조건
 - 연 4%, 2년(1년 거치)
 - 수출보험공사 부분보증(80%), 은행자체 신용(20%)

- 지원시기
 - 반기별 1회, 연 2회 시행

- 지원절차
 - 용자신청 : 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및 11개 국내지부
 - 대상업체 추천 : 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및 11개 국내지부
 - 추천업체 해당기업 및 은행통보 : 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 용자확정 : 용자취급은행
 - 수출신용보증서 등 발급 : 수출보험공사 등
 - 용자대여금 은행배정 : 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 용자실행 : 용자취급은행

- 신청·접수
 - 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 제출서류
 -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 용자대상수출 실적증명서, 추천관련 증빙서류 등
 - 용자신청서는 소정양식(무역협회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
 - 용자대상수출실적증명서는 주거래 외국환은행에서 발급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02-6000-5232) 및 11개 국내지부

16) 수출금융 지원사업

□ 제도개요

- 담보부족 등으로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자금 신용지원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소요자금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리 : 기준금리 연 4.74%(변동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지원기간 : 180일 이내
-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 원
 - 수출계약 기준 : 수출 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최대 10억 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 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2분의 1 이내로 5억 원 한도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금융(02-769-6871)

17) 환위험관리 지원사업

□ 제도개요

-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수출, 수입, 외화차입,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 지원제의 대상 : 금융 및 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지원내용

- 거래규모가 적어도 외환거래 가능 : 3,000달러 이상이면 현·선물환 거래 가능
- 환율 우대
 - 외환시장의 실시간 환율을 기준환율로 하여 은행 영업점 마진을 없앤 우대환율 적용하므로 대기업 수준의 거래환율 적용
- 선물환거래 보증금 추가 인하 : 3~20% → 0.4~5.5%

구 분	일반 외국환 은행	환위험관리지원사업 증거금 부담	
		현 행	개 선*
1개월	3%	0.4%	0.4%
3개월	8%	1.2%	1.0%
6개월	10%	2.4%	2.2%
1년	15%	4%	3.5%
2년	20%	6%	5.5%

- 거래수수료 인하 : 1~5원/\$ → 0.5~2원/\$

구 분		거래 수수료	
		일반 외국환은행	환위험 관리지원사업
현 물 환		1원/1\$	0.5원/1\$
선물환	3개월 이하	2원/1\$	0.8원/1\$
	3개월~6개월	3~4원/1\$	1.2원/1\$
	6개월~1년	5원/1\$	1.5원/1\$
	1년~2년	5원 이상/\$	2원/1\$

- 외환 HTS(Home Trading System) 및 환위험관리 솔루션 제공
 - 실시간 On-line 외환거래로 편의성, 신속성, 효율성 제고
 - 환위험관리 솔루션을 무상 제공하여 외부 컨설팅 없이도 중소기업이 스스로 환위험관리 가능
- 환위험관리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순회세미나, 직원교육, 컨설팅 등 환위험관리 지식과 노하우 제공
- 거래은행 변경없이 선물환거래가 가능한 차액결제시스템 실시
 - 가입업체가 결제은행 변경없이 헤지거래가 가능하도록 차액결제 시스템 구축('05. 3)하여 가입업체의 선물환거래 편의성 확대
 - 차액결제시스템(Net Settle) : 업체가 선물환 만기시 전액결제 부담 없이 만기 환율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결제하는 시스템
- 지원절차
- 가입신청 : 중진공, 우리은행
- 가입심사 및 승인 : 중진공, 우리은행
- 외환거래약정 : 우리은행
- HTS 프로그램 다운 및 거래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우리은행 각 지점 및 본부 시장운영팀(02-2002-4183)

18)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제도

□ 지원대상

- 보험 측면에서 필요한 보증책임, 회수비용, 배상책임 및 기업휴지 등 위험을 종합담보 지원

□ 지원조건

- 가입대상 : 신뢰성인증 또는 평가를 받은 부품·소재 생산기업
- 담보지역 : 국내 및 해외거래를 담보
- 보험가입방법 : 기업의 연간 매출액기준, 특정 공급계약(또는 특정 거래처별)기준

□ 문의처

- 수출보험공사 신뢰성보험팀(02-399-6128, 5792)

19)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보험 제도

□ 지원대상

- 일반수출 : 국내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 위탁가공무역 :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 중계무역 : 수출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제3국에 수출하는 거래
- 재판매 거래 : 국내생산·가공물품,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의 생산·가공물품 또는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수출자의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 지원조건

- 수출기업의 필요에 따라 개별 및 포괄보험으로 이용

▮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비교

구분	개 별 보 험	포 괄 보 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건별로 보험청약 및 보험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약정 체결 • 약정에서 정한 수출거래 전체를 수출보험부보
이용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상사 및 중견중소기업 • 수출자 신용등급 E급 이상, 연 수출실적 U\$200만 이상, L/C수출비중 30% 이상

□ 지원절차·방법

- 수출단계별(계약체결·제조조달·선적내고·대금회수)로 수출보험 서비스를 제공

□ 이용절차

- 일반적으로 신용조사 → 한도책정(증권발급) → 수출통지 → 보험료 납부 순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거래현황표, 재무제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주주명부(주식회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인 경우)

- ※ 공사 홈페이지의 사이버수출보험을 활용하여 서류작성 없이 인터넷상에서도 보험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

□ 문의처

-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영업본부(02-399-6571)

20) 수출신용보증서의 일반금융기관 수탁 발급

□ 지원대상

-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 금융기관에 따라 수출업체당 최대 1.5억~2.5억 원
- 선적후 수출신용보증
 - 신용장방식 : 신용장 개설은행당 U\$30만 이하
 - 무신용장방식
 - 결제실적 보유 수출업체 : 수출자당 U\$30만 이내에서 수입자당 U\$10만 이내
 - 결제실적 미보유 수출업체 : 수출자당 U\$30만 이내에서 수입자당 U\$5만 이내

□ 지원내용

- 수출신용보증 운용에 필요한 소정의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을 주거래 금융기관에서 직접 실시함으로써 수출보험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
- 수탁보증 취급 금융기관
 - 기업, 하나, 제일, 외환, 부산, 조흥, 신한, 전북, 대구, 국민,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3개 금융기관

- 지원절차
 - 주거래 은행에서 상담
- 문의처
 -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영업본부(02-399-6571, 5781)

21) 수입자 신용조사 제도

- 지원대상
 - 수입자 신용조사를 희망하는 기업
- 지원내용
 - 해외사무소, 해외 45개 전문신용조사기관을 통해 재무상태, 종업원 수, 결제상태와 경영능력 및 대외평판 등의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신용등급을 책정 통보함
- 지원절차
 - 의뢰 건(수입자별)당 3만 원의 저렴한 수수료로 취급하며, 동 수수료는 추후 수출보험 이용시 전액 환불
 - ※포괄보험이용 및 수출보험육성대상 중소기업은 면제
- 신청·접수
 - 수출보험공사 홈페이지(www.reportingkorea.com) 활용, 수입자명,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공사에 제출하거나 사이버수출보험을 통해 입력 가능

□ 문의처

- 수출보험공사 신용정보팀(02-399-6254, 6913)

22) 수입규제대응 자금지원

□ 지원대상

- 해외시장에서 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제소를 당해 변호사 또는 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한도(건당 총 소요금액의 2분의 1 이내)

□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 제출서류

- 신청서(별도양식), 제소(피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국 관보 등) 사본 1부, 계약서(변호사·회계사 등) 사본 1부 등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팀(02-6000-5194)

23)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서비스

□ 지원대상

- 해외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국내 수출기업

- 지원내용
 -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공사 해외사무소, 현지 수출보험기관, 현지 채권 추심기관 및 Law Firm 등과 연계하여 채권회수를 대행
- 신청·접수
 - 채권추심 위임장 제출(채권서류 및 증빙서류 사본 첨부)
 - 인터넷 홈페이지(www.reportingkorea.com)에서 회원 가입 후 채권 추심 의뢰서 작성
- 문의처
 - 수출보험공사 신용정보사업본부(02-399-6851)

24) KOTRA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

- 지원대상
 - 해외무역관을 해외지사화 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해외무역관이 우리 기업의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 조사, 수출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
 - 해외수출성약, 에이전트 발굴, 시장조사, 기타(단순정보제공 등) 4가지의 참가목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참가목적에 따라(1개 항목 선택)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지원(My office서비스 : 직원을 해외무역관에 파견근무 가능)

- ※ 단, 계약체결 대행, 무역 클레임 해결 및 법적분쟁, 대금결제 등 KOTRA와 해외무역관의 법적 성격상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
 - 지사회사업 협약 종료 후 협약기간 중 거래관계에 있는 바이어와의 상담내용에 한해 6개월간 무료 A/S
 - 참가비 : 무역관당 220만~360만 원

□ 지원절차

- 참가희망업체의 인터넷을 통한 신청 → 해외무역관의 시장성 검토 및 참가업체 선정 → 협약체결 → 지사화사업시행

□ 문의처

- 서울소재기업 : KOTRA 서울무역관(02-3460-7213)
- 지방소재기업 : KOTRA 지방무역관

25) KOTRA 해외시장조사대행 서비스

□ 지원대상

- 해외시장조사대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국내업체가 요청하는 유망 바이어정보 등 해외시장정보를 수집하여 제공(유료서비스)

▮ 서비스 구분 및 수수료 내역

서비스 구분		수수료	조사기간	비고
거래선 발굴조사	해외투자 잠재합작 파트너 발굴	150,000원~ 250,000원	15일	무역관별 차등책정
	사이버상담	50,000원/ 1개 바이어	15일	바이어당 최대 2회 제공
시장동향조사	수요, 수입, 수출, 생산경쟁, 가격동향, 유통구조 등	70,000원~ 160,000원 (항목당)	15일	무역관별 차등책정
해외투자정보 사전조사	물류, 생산, 고용 환경 서류 지원, 기타			
해외바이어 수출대금관련 정보확인 서비스		100,000원	15일	
프로젝트조사 및 기타조사		사안별 결정	사안별 결정	신청시 협의
단순 해외현장 확인 정보		무료	10일	무료서비스

□ 지원절차

-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신청 → KOTRA 검토 및 선정 → 수수료 납부 코트라 홈페이지 Digital KOTRA 상단의 My KOTRA에 접속 → '나의 맞춤서비스' 클릭 → '사업신청내역'에서 입금형태 선택 → 납부 → 현지 무역관에 조사 의뢰 → 현지 무역관 조사 → 조사결과 보고서를 조사 의뢰사에게 전달

□ 문의처

- 서울소재기업 : KOTRA 서울무역관(02-3460-7213)
- 지방소재기업 : KOTRA 지방무역관

26) KOTRA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출장지원서비스 희망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서비스 구분별 수수료 내역

서비스 구분	서비스 유형	수수료	서비스 내역
출장지원	단순지원	무료	호텔예약, 통역알선, 비자지원 중 최소한 한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기본 패키지 수수료 적용
	상담주선	무역관별 책정	상담주선에 더하여 출장업체 사전접촉, 출장자료 제공, 호텔예약, 통역알선, 무역관내 상담장 이용이 제공됨 코트라홈페이지인 Digital KOTRA(www.kotra.or.kr)의 '세일즈 출장지원'내에서 '무역관별 서비스 내역 및 수수료' 참조

□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에서 On-line 신청(연중 수시)

□ 문의처

- 서울소재기업 : KOTRA 서울무역관(02-3460-7384)
- 지방소재기업 : KOTRA 지방무역관

27) KOTRA 해외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

□ 지원대상

- 해외전시회 참가 희망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 단독 혹은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업체들의 전시회 참가지원

- 상품전시 및 전세계에서 내방하는 바이어 상담을 통하여 시장개척을 지원
 - 직접소요경비(임차료, 운송비, 장치비 등)의 50% 국고지원. 단, 체제비(항공, 숙박비 등)는 개별업체 부담
 - 한국관 면적 임차, 장치디자인 시공
 - 기타 행정 서비스
- 문의처
- KOTRA 전시사업팀(02-3460-7250~9)

28) KOTRA 수출상품 카탈로그 발간 및 제작지원

- 지원내용
- 국내 수출 기업화 업체 및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수출상품 전문카탈로그지인 2005 KOREA TRADE지와 기업 자체 카탈로그를 제작 발간
 - ※2006 KOREA TRADE지 발간(16절) : 연간수시(공고)
 - ※기업자체 카탈로그 제작지원(10절)
 - 언어 : 영어, 일어, 중국어 중 선택
 - 부수 : 2,000부 기준

Ⅰ 광고 게재료(면당)

KOREA TRADE지 광고 게재료(면당)	
• 본 문 : 50만 원	• 표 지
• 속 지 - 목차 전면 : 120만 원 - 조직망 후면 : 90만 원	- 2면 140만 원, 3면 105만 원, 4면 210만 원 • 표지대면 - 2대면 130만 원, 3대면 95만 원
기업 자체 카탈로그 제작비 2,000부 기준	• 면당 : 24만 2,000원(부가세 포함)

□ 무료지원 사항

- 광고문안 원안 DATA 광고주 요청시 제공
- 광고문안 컴퓨터 그래픽디자인 제작, 샘플 촬영 및 해외 배포

□ 문의처

- KOTRA K.T지 발간팀(02-3460-7288)

29) 무역실무상담 서비스

□ 지원대상

- 무역협회 회원상사

□ 지원내용

- 전화 및 내방으로 상담 무역관련 상담가능

상담분야	전화번호	상담시간	상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일반 - 수출입절차/통관·관세환급 /외환·무역금융/대금결제 	6000-5353~7	월~금요일 / 09:00~18:30	전문 상담역
HS Code분류	6000-5327	월~금요일 / 13:00~18:00	관세사
국제계약	6000-5368	매주 화요일 / 09:00~18:00	국제 변호사
세무회계		매주 수요일 / 13:00~18:00	공인 회계사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팀(02-6000-5581)

30) 무역서비스 할인클럽 운영

□ 지원대상

- 무역협회 회원사 및 KOTIS 유료가입자

□ 지원내용

제공서비스	제휴업체	할인혜택
국제특송	FedEx	서류/샘플/소화물 40%, 기타 25% 할인
국내택배	대한통운	기본운임의 47~60% 할인
해외규격인증	TUV Korea	20% 할인
수출포장	인테크포장	포장비 15%, 출장비, 운송비 5% 할인, 위험물 핸들링비 5%, 선적서류 무료 작성
국내외기업정보	KOMPASS	정액서비스 가입비 면제, 정액정보이용료 15%, 광고료 15% 할인
해외거래선 신용정보	D&B Korea	신용정보 17%, 연 정보이용료 3%, Worldbase 연 정보이용료 5%, 채권추심 10~15% 할인

제공서비스	제휴업체	할인혜택
해외수출대금 회수대행	ABC	추심건당 접수비 20%
	미래신용정보	1년 미만 채권수수료 20%, 1년 이상 채권수수료 25% 할인
통역 및 번역	한통	20% 할인
	엔터스코리아	30% 할인
휴대폰/ 인터넷 로밍	위즈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로밍 : 기본료 면제, 이용료의 10% 할인 • 인터넷로밍 : 첫 이용시 100분 무료이용, 가입비 50%, 무선로밍/후불로밍 5%, 노트북세팅 20%, 접속기기 구입시 10% 할인
렌터카	AVIS	성수기 30% 제주 30%, 비수기 내륙 40% 제주 50% 할인
광고대행	아노커뮤니케이션	매체별 5-30% 할인
호텔할인예약	월드호텔&투어스	세계 70개국 2만 여 호텔 최고 70%에 7% 추가할인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팀(02-6400-5581)

31) 수출상품 온라인 홍보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자체 전자 상품 카탈로그 제작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단, 협회 신규회원 등록 중소기업)

□ 지원내용

- e-카탈로그 오퍼(Offer) 무료제작 및 전송
 - 업체당 최대 5개의 e-카탈로그 오퍼를 제작하여 협회보유 바이어 DB(10만 여 개)를 통한 홍보

- 상품 블로그 제작 대행 및 무역거래알선사이트(www.ec21.com) 상품등록
 - e-카탈로그 품목군별 검색 기능지원 대상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팀(02-6000-5534)

32) 해외지사(사무소) 설치인증 추천

- 지원대상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업체로서 다음 추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해외지점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업체 또는 5만 달러 이상외취소불능수출신용장을 수취한 업체
 - 해외사무소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천방법
 - 전화상담 후 내방
- 지원내용
 -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회원업체를 추천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팀(02-6000-5357)

33) 영세업체 수출신고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통관실적 하위 50% 해당업체
- 수출금액 8만 달러 이하 업체
- 이용가능업체 여부 확인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소규모업체 통관 지원을 위한 수출신고지원센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 지원내용

- 수출신고, 간이정액환급, 수출신고 취하 및 정정 신청 지원

□ 지원절차 및 신고서류

○ 수출신고

- 신고방법 : 서류 FAX 송부, 늦어도 선적 1~2일 전에 신청
- 수수료는 없으나 EDI 전송료(건당 2,057원)는 업체부담
- 신고서류 :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매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경우)

○ 간이정액환급

- 전화상담 후 내방
- 신고서류 : 간이정액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사본, 환급받을 통장 사본(세관지정 개설은행 통장), 사업자등록증사본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팀(02-6000-5339)

34) 무역운임할인서비스 지원(RADIS)

□ 지원대상

- 무역협회 라디스 가입 회원사

□ 지원내용

- 협력 포워딩업체를 통한 운송서비스
-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2,000여 복합운송주선업체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14개 협력포워더를 선정하여 서비스제공
- 제휴 관세사업체를 통해 관세율, 상품분류, 관세환급 등의 관세상담 및 수출입 통관업무 할인 서비스 제공
- 개별 업체차원의 투자나 인력투입 없이 주요 해외 수출 거점지역에 위치한 제휴업체의 해외물류센터를 할인가격으로 제공

□ 참여방법

- 회원자격 : 무역협회 회원업체 가입비 및 이용료 무료
- 가입신청
 - 인터넷 신청 : <http://shippersgate.kita.net>에서 RADIS 가입신청 클릭
 - 오프라인 신청 :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팩스송부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하주지원팀(02-6000-5384~5)

35) APEC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 지원대상

- ABTC 참가국 중 어느 일국(一國)에 해외직접투자실적 또는(전년기준) 연간수출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업체
- 잔존 여권유효기간 3년 이상

□ 지원내용

- 참가국내 공항에서 전용수속레인을 통한 신속한 출입국보장
 - 참가국 : 2006년 1월 현재 17개국(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 홍콩, 칠레,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페루,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베트남)
- 유효기간 : 1회 발급으로 3년간 유효
- 기업인에게 별도의 카드를 발급하여 입국비자 없이 60일~90일간 입국가능토록 지원
 - 발급비용 및 기간 : 1인 1회당 6만 원, 신청 후 6개월~1년 소요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팀(02-6000-5333)

참고자료

수출지원사업 안내

- 통합 해외마케팅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 구축
 - 모집공고, 신청·접수 및 세부사항 등

▮ 사업별 홈페이지

사업 내용	시스템명	관련 문의
▪ 해외규격인증(접수)	http://www.exportcenter.go.kr	중소기업 진흥공단 02-769-6715
▪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	http://www.standard.or.kr (7월 통합)	
▪ 해외시장개척요원	http://www.exportcenter.go.kr	
▪ 민간해외지원센터		
▪ 수출기업화		
▪ 수출유망중소기업		
▪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http://www.sbc-kbdc.com (링크)	
▪ 글로벌브랜드 지원사업	http://www.exportcenter.go.kr	
▪ 국제 조달망	http://www.b2g.go.kr (2월 통합)	
▪ 외환 정보망	http://www.exportcenter.go.kr	
▪ 무역촉진단		

▮ 각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중앙수출지원센터	02-761-4720~21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503-4722~4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1~7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5~5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360-9190~5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201-6941~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450-1131~7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260-1670~4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230-5370~5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210-6481~6 (063-210-6489)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268-2541~6	대전·충남지방사무소 수출지원센터	042-865-6150~6

※ 제주도청 기업지원과(064-710-2628)

7.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제도

1)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 제도개요

- 정보화전문인력(IT코디네이터)을 통해 신청기업의 정보화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 지원내용

- 사전진단을 통한 과제 발굴
 - 정보화전문인력(IT코디네이터)이 중소기업의 현장을 방문, 정보화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지원
-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의 통합, 의사결정의 정보화, 생산성 제고 등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 성과평가 및 정보화경영체제 인증
 - 정보화경영체제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경영체제 규격과의 부합성평가(인증)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으로, 아래기업 제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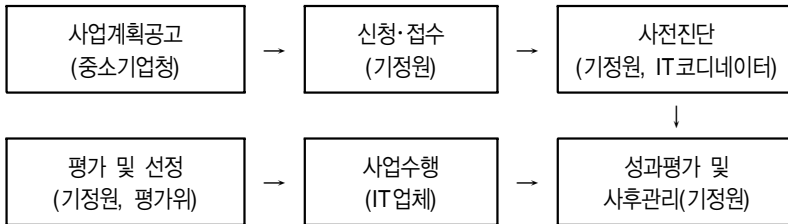
□ 지원조건

- 사업수행 감리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총 사업비용의 50% 범위내(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정부지원

□ 신청·접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정보화진단표
- 신청방법 : On-line신청(<http://i-sme.kimi.or.kr>)

□ 지원절차



□ 선정방법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정보화진단표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진단을 통해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IMS기관에 배정한 후 사업 착수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042-481-440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02-3787-0452)

2)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사업

□ 제도개요

-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통한 기업의 생산시스템 혁신으로 비용 절감, 생산성을 향상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

□ 지원내용

- 생산정보화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S/W개발 및 패키지 커스터마이징 비용

- 시스템 구축형태 : MES, POP, CIM, SCM, PDM 등

-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통합생산),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관리),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PDM(Product Data Management, 제품정보관리)

□ 지원대상

-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

- 생산정보화 대상인 생산장비, 제조설비 등을 2대 이상 보유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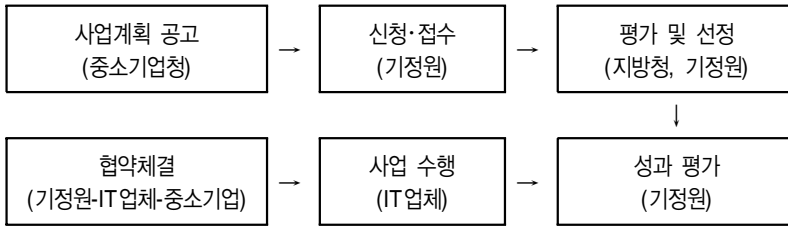
□ 지원조건

- 기업당 5,000만 원 한도, 총사업비의 50% 이내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매년 1/4분기중 접수
- 접수처 : 중소기업 공장 소재 지방중소기업청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http://i-sme.kimi.or.kr>)
- 신청서류 : 신청서, 자가진단표, 사업계획서

□ 지원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042-481-440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기반팀(02-3787-0481)

3)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육성

□ 제도개요

- 업종별 조합을 중심으로 정보화 클러스터화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조합 중심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의 정보화 촉진

□ 지원내용

- 조합 회원사의 정보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자유과제 선정지원
 - 조합 포탈사이트, 전자카탈로그 구축
 - 전자상거래시스템, 조합 공동사업 관리·운영시스템 구축
 - 클러스터내 유관기관(지자체, 대학, 연구소, 회원 중소기업 등)간의 협력 네트워크화 기반구축 등

□ 지원대상

-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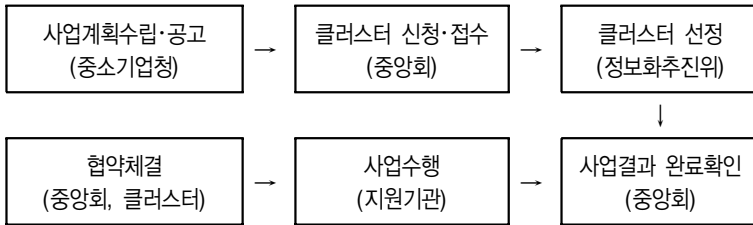
소 제조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 산자부 산업부문간 B2B사업, 정통부 업종별 ASP 사업 선정단체 등 유사사업의 정부지원을 받은 단체는 참여 제한

□ 지원조건

- 클러스터당 최대 2.5억 원 이내 정부지원(총 사업비의 80% 이내)

□ 사업추진체계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042-481-4508),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화지원팀(02-2124-3158)

4) 산업정보화 기반구축사업

□ 지원대상 및 자격

- CALS/EC, ERP, SCM, CRM, XML/EDI 등 각종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및 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 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5.0%	8년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20억 원 이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	1) 시설자금 • 시설구입비 • 공정설치비 •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운전자금(지원액의 50% 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02-769-6884), 한국전자거래협회(02-551-1459)
 - 상세내용 : 홈페이지(www.kcals.or.kr) 참조

5) 정보화 혁신 전문기업(TIMPS)을 통한 정보화 일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되, 50인 이하라도 사업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기본형

- 중소기업의 사내정보화 구축(ERP, KMS, SCM, CRM, EIP, 그룹웨어 등)

○ Trigger-Ring형

- 모기업 책임하에 2, 3차 협력업체(중소기업)의 정보화를 공동 추진

□ 지원조건

- 성공조건부 출연금으로 기업당 5,000만 원 한도(소요비용의 50% 이내)에 S/W구입, 컨설팅비용 등 지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차(상반기)에는 1/4분기중 접수
- 접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http://i-sme.kimi.or.kr>)
- 신청서류 : 신청서, 자가진단표

□ 문의처

- 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2-3787-0481 ~4)
- 상세내용 : 홈페이지(www.kimi.or.kr) 참조

6) 중소기업 정보화교육

□ 제도개요

- 중소기업 재직자를 정보화 전문인력으로 재교육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전문인력 부족 해소 및 자율적인 정보화 촉진여건을 조성

□ 지원대상 및 교육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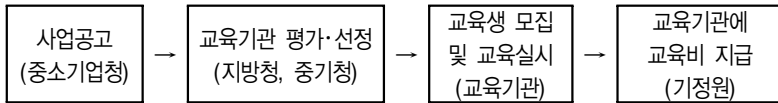
- 산학연계교육, 현장방문교육 및 이러닝(e-Learning)교육 3개 과정

구 분	산학연계교육	현장방문교육	e-Learning교육
교육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목표	사내 정보화 추진을 위한 실무능력 제고	주문형 교육을 통한 현장애로 지원	격오지 재직자의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방법	교육기관 활용 실습위주 집합 교육	기업, 조합 등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
교육수행기관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정보화 전문강사	기술정보진흥원
총 교육인원	예산내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회당 교육인원	예산내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범위

- 교육비 전액지원(단, 교재비는 교육생이 부담)

□ 지원절차



*현장방문교육은 정보화교육을 원하는 중소기업에서 교육관리시스템(www.smba-edu.or.kr)을 통해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으로 교육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042-481-4402),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기반팀(02-3787-0481)

8. 벤처·창업기업 지원제도

1) 벤처기업 확인제도

-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 대상업종
 - 43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숙박, 음식점 업종 19, 부동산 및 임대업종 7, 오락 및 문화종 4, 공공수리 및 기타서비스 업종 13)
 - 제외업종 상세보기 : 홈페이지(www.venturenet.or.kr) 참조

- 벤처기업 유형별 요건

벤처유형	벤처요건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기관(창투자, 신기술금융회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할 것 • 최소 5,000만 원 이상 투자할 것 • 투자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 •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총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 (최소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이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을 의미 • 기보·중진공으로부터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기보, 중진공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보증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지원자금 또는 벤처창업자금에 한함 •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 보증·대출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일 것 •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기보, 중진공

- 벤처기업 확인 신청
 - 웹사이트의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벤처확인증 유효기간
 - 벤처유형이 벤처투자기업과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은 1년
 - 벤처유형이 연구개발기업은 2년
 - 유효기간 경과 후 벤처 기업 확인 재신청시, 연구개발 기업은 사업성평가를,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은 기술성평가를 다시 받아야 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팀(042-481-4386)

2) 벤처빌딩 지정제도

- 지정요건
 - 전용면적이 1,200m² 이상인 건축물(다만, 건물의 일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
 - 집적시설은 '先지정-後요건충족'인 제도로 건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건물의 일부도 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음
 - 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은 지정받은 날(신축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 4개 이상의 벤처기업(최소 충족요건),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연면적의 70% 이상은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정절차

○ 지정권자 : 시·도지사

○ 신청방법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신청서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벤처법 제22조에 의거 미술장식설치의무 면제 (건축비의 1%)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집적시설로 지정 받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정 전에 이미 납부한 경우이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감면

□ 세금 및 부담금의 감면

○ 벤처빌딩에 대한 지방세 감면

- 벤처빌딩에 대해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함

○ 벤처빌딩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 벤처빌딩에 대해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을 면제함

□ 벤처빌딩 입주 벤처기업에 대한 혜택

○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입주비용지원제도
(문의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전화 : 042-481-4494)
- 협동화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별도조건으로 자금지원 가능

■ 벤처집적시설내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구분	감면내용	비고
법인세(소득세)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조특법제6조
등록세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100% 감면	조특법제113조
취득세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100% 감면	조특법제114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조특법제115조

■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구분	감면내용	비고
등록세	• 대도시지역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등록세 3배중과 배제	지방세법제280조
취득세	• 대도시지역 벤처지역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취득세 3배중과 배제	지방세법제280조
재산세	•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5배중과 배제	지방세법제280조

주 : 대도시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제외

□ 문의처

- 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처(02-769-6885)

3) 창업보육사업(BI) 지원사업

□ 제도개요

-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력 및 사

업화 능력이 미약한 예비 창업자와 신규 창업자들에게 개인·공동 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자금지원, 경영·기술지도 등을 통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지원제도

□ 입주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입주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 대기업이 발생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외국인이 발생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휴·폐업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 기타 이사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주기간

- 6월 이상 2년 이내(보육센터운영자와 입주자간 협의하여 연장가능)

□ 입주신청 및 입주조건

- 보육센터와 입주자간의 계약에 의함

□ 지원내용

- 시설지원
 - 개별보육실로 공동이용공간(공동작업장, 회의실, 전시설 등)과 공동이용설비(범용제조설비, 실험기기 및 계측설비, 사무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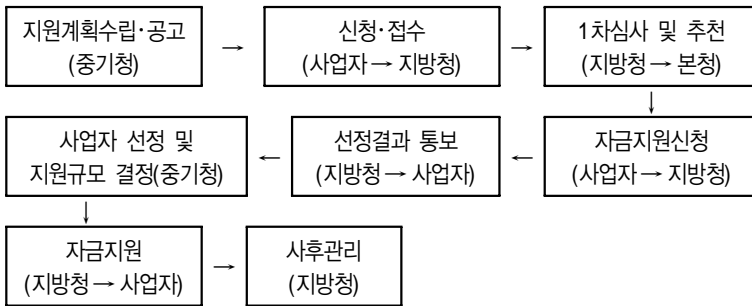
- 지도·연수
 - 법률,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
 - 시험, 분석, 설계, 제작 등 기술분야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허용
 - 대학 또는 연구기관안에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도시형 공장설치자)은 공장등록 가능
 -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3
- 문의처
 - 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창업제도과(042-481-4412)

4)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 사업개요
 - 확장사업비
 - 창업보육센터의 자립기반 마련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운영능력이 우수한 보육센터의 확장건립을 지원
 - 운영비
 - 보육기업의 지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육센터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등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 지원조건 및 규모
 - 확장사업 : 사업자당 최고 15억 원 이내

- 운영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보육센터
- 보육센터의 대응투자비가 총사업비의 50% 이상 될 것
- 운영비 지원 : 사업자당 최고 5,000만 원 이내
 -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 차등 지원

□ 지원절차·방법



□ 지원시기

- 확장사업비 : 2월 초 공고, 3월 중 지원
- 운영비 : 2월 초 공고, 3월 중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042-481-4413)

5) 「기술창업패키지 1000」 운영사업

□ 제도개요

-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 기술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자금, 입지, 경영·기술지원서비스 등 종합지원

- 강좌기관 선정
 - 창업강좌에 필요한 시설, 인력 등 지원시스템 및 노하우를 갖춘 창업교육기관

- 교육내용 및 방법
 - 기업가적 자질함양, 창업실무 능력제고, 업종별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교육
 - 교육과목은 창업기술(96시간), 업종심화(24시간), OJT(100시간 이상)교육 사후관리

- 교육사후관리
 - 교육수료자에게 교육, 자금, 판로 등을 패키지로 집중 교육 및 창업 성공을 위한 사후관리(교육 우수자 순수 신용대출)

- 문의처
 - 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창업제도과(042-481-4412)

6) 엔젤투자마트 개최

- 제도개요
 - 엔젤투자 활성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 지원절차 및 방법
 - 투자마트 참가 희망업체 모집
 - 모집업체에 대한 평가 및 선정

- 지역별로 투자마트 개최
- 투자완료 시까지 사후관리
 - 사업주체 : 한국건설팅협회KBAN(Korea Business Angel Network) 사무국(엔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 결성된 엔젤클럽을 중심으로 결성된 엔젤투자협력체)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팀(042-481-4421, 042-472-0291)

7)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투자조합 결성 지원

- 제도개요
 -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무투자전문회사) 결성시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원활한 투자조합 결성을 유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성장자금 지원
 - 모태펀드 운영기관 : 한국벤처투자(주)
- 제도내용
 - 모태펀드에서 출자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결성된 자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
 - 투자 조합별 주요 투자대상
 - 창업투자조합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및 벤처기업

-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기타 투자조합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주요 투자방법

-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지분의 취득
-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과 같이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투자

□ 지원절차

- 출자공고(한국벤처투자) → 투자조합 결성 신청(창투사 등) → 심사 및 투자조합 선정(한국벤처투자) → 투자조합 결성(창투사 등)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행(창투사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팀(042-481-4422, 4417)

8) 벤처기업 맞춤형 투자마트 지원사업

□ 지원내용 및 운영

- 유망 우수기업의 상시 발굴 및 정보제공, 추천
- 투자유치 희망업체와 투자기관과의 상담코너 운영
- 엔젤클럽 및 투자조합, 창투조합의 소개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seoul.smba.go.kr/venture_mart)에 의한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운영
-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으로서 투자유치를 받고자하는 중소기업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 지원방법
 - 신청기업 실사 후 투자기관에 추천, 사후관리
 - 투자기관 : 산업은행 등 유망 투자기관
- 문의처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벤처기업과(02-509-7014~5)

9) 벤처기업 M&A거래 중개 지원

- 지원대상
 - M&A 거래를 희망하는 매도 및 매수기업
- 지원내용
 - M&A 매도 및 매수기업을 발굴하여 M&A 거래지정기관에 중개의뢰, 지원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seoul.smba.go.kr/mna)에 의한 온라인신청, 접수 및 운영

□ 문의처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벤처기업과(02-509-7014~5)

10)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 사업계획승인 신청대상

-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
- 등록된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74개 인허가(36개 법률) 일괄 승인 처리

□ 처리기간

- 사업계획의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민원사무처리지침 등에 따른 보완서류 소요기간 등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처리절차

- 창업자 → 사업계획승인신청(시·군·구 창업민원실) → 인허가사항 처리기관에 협의요청 → 협의결과 창업민원실로 통보 → 창업사업자에게 승인통지

※사전협의제도

-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승인가능성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불승인 시의 토지매입비, 건축설계비 등의 낭비를 예방하는 제도
- 창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는 입지·환경 등 공장설립의 기본요건을 검토
 - 명백하게 승인이 가능한 부분은 승인통보 하고 추가로 인·허가가 필요사항, 절차 등 안내
 - 공장설립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사유 통보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042-481-4409)

11) 창업기업 컨설팅 지원

□ 제도개요

- 창업기업이 컨설팅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에게 컨설팅지원을 받는 제도
 - 컨설팅 비용의 80%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
 - 업체부담금 중 7%는 세액공제

□ 지원내용

분야	지원내용	지원한도
사업타당성검토	업종·규모·기업형태 등 사업계획의 합리성·사업성·기술성 등 검토	300만 원
창업절차대행	- 법인설립 대행 - 사업자등록신고 및 관련 인·허가 대행, - 조세감면 검토 및 세액감면신청 대행 - 창업초기 경영상담	100만 원
창업공장설립 대행	입지선정, 창업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검토, 사업계획승인(공장설립 승인) 신청대행, 조세감면 검토	500만 원
경영·기술지도	창업초기 기업의 경영·인사·재무·판매관리, 기술지도	500만 원

□ 신청·접수

- 웹사이트(www.smbacon.go.kr)에서 중소기업회원가입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인터넷으로 접수
 - 사업자등록증 미발급자의 경우 인터넷 접수를 위한 임시사업자등록번호를 주관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 사용

- 컨설팅 신청업체 모집은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구조전환팀(042-48-4553)

■ 참고 –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

구 분		주요 지원내용
창업	법인설립	• 설립자본금 500만 원 이상('05.7.29 개정) - 일반기업은 5,000만 원 이상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3년 이내)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산업재산권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세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등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취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종토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금융	코스닥 등록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신용보증	•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를 0.2% 감면 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 이내 기업만 해당
인력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 부여대상 확대(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000만 원 한도)

구 분		주요 지원내용
인력	병역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연 2회 부여(일반기업은 1회) •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로 옮겨 근무시 전직제한기간 2년 적용제외 특례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입지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500m ² 이하)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증가세율 적용 면제
해외진출 지원	해외진출지원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 등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전문변호사 연계, 자문료 보조금지원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마케팅	방송광고 (한국방송광고공사)	•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기타	유한회사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일반기업은 50인 이하)
	주식교환	• 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9. 소상공인·재래시장 지원제도

1) 소기업 지원

□ 소기업 적용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 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 ※ 소기업확인서 인터넷 발급 : 서울, 부산지역은 서울 및 부산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인터넷 발급, 기타지역은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직접 발급

□ 지원내용

-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 소기업 중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m²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증은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
 - ※ 적용 제외업종 : 비제조업체로서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 창투사 또는 창투조합의 투자대상으로 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력과 관계없이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봄
- 소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특례
 -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 자본

금 5,000만 원 미만으로도 가능

□ 문의처

- 지방중소기업청

2)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 지원대상(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도·소매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한 개별 컨설팅(자영업 종합컨설팅)
- 소자본 및 업종별 실전창업강좌 개최
- 현장입지분석서비스, 사업계획서 검토 등 소자본창업에 관한 제반 사항

□ 센터설치운영 현황

- 설치센터 : 전국 76개소
- 주관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팀
- 총괄운영 : 소상공인지원원(1588-5302)
- 위탁운영 : 지자체(시·도)
 - 시·도별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재위탁 운영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569), 소상공인지원원(1588- 5302)

3) 소기업확인서 발급(법인등기용)

□ 발급대상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
-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기업

□ 지원내용

- 주식회사를 설립 신청에 필요한 소기업확인서 발급 지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접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 온라인발급 : 서울지역(seoul.smba.go.kr) 및 부산지역(bu.smba.go.kr)은 온라인 발급
 - 온라인 발급절차 : 지방중기청 홈페이지 접속 → ‘소기업확인서 발급’배너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 검토 → 소기업확인서 발급
- 기타지역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off-line)

□ 신청서류

- 기존기업용 : 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 징수액집계표

- 창업자용 : 소기업확인서

- 문의처

- 지방중소기업청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제도

- 제도개요

-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 대하여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생활안정 또는 전업자금 마련을 위한 공제금 지급(2007년 9월 시행)

- 지원대상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중 일정기간 공제부금을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폐업공제 : 공제가입자의 폐업, 사망시 일정한 폐업공제금 지급

- 퇴직공제 : 법인대표 지위의 공제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해 법인의 임원에서 퇴임시 퇴직공제금 지급

- 노령공제 : 10년 이상 공제가입 기간이 경과하고 만 60세에 도달할 시 노령공제금 지급

- 부금종류

- 최저 10만 원부터 1만 원 단위로 100만 원까지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접수처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각 지회(출장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팀(042-481-4566),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공제사업추진팀(02-2124-3267/8)

5) 자영업 5단계 패키지 창업지원

- 제도개요
 - 건전한 예비창업자를 발굴,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준비과정을 지원하여 자영업 창업성공 모델 정착
- 지원대상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자영업 창업 예정자를 선정, 컨설팅, 교육, 현장실습, 보증지원 및 사후관리의 5단계 패키지형 지원을 실시
 - 자영업자 부담 : 1인당 5만 원 내외(교재비, 현장실습 등 실비부담)
- 추진절차
 - 모집공고 및 대상자 선발 → 컨설팅 및 교육실시 → 교육이수자 특례보증 → 교육이수 창업 업체 사후관리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별도 공고

○ 접 수 처 :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자영업지원팀(042-472-0551)

6) 인터넷을 통한 상권정보 제공

□ 제도개요

○ 자영업의 과잉공급 및 준비 안 된 창업으로 인한 사업실패 방지를 위해 지역별·업종별로 정확한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자영업자의 준비된 창업 및 경영안정 도모('07년 5억 원)

□ 상권정보 제공 내용

○ 창업 희망·예정 지역을 인터넷 전자지도에서 실제 상권 형태로 구현, 총 31종의 상권정보 무료 제공

○ 879개 세부 업종별로 상권내 동종·경쟁업소 점포의 개수, 위치, 연도별 증감추이 등 점포 정보

○ 상권내 연령별·성별 등의 인구정보 및 아파트·병원 등의 주요시설 정보

○ 「전국 100대 주요상권 현장조사보고서」, 「상권·입지분석 노하우」 등

- 상권정보 제공 방법
- 인터넷(www.sbdc.or.kr에 링크)전자지도상에서 이용자가 직접 상권을 선택(그리기)하거나, 100대 주요 상권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해당 상권 내의 각종 정보 검색
 - 자영업 예비창업자들은 동 시스템의 상권정보와 함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 상담사의 “상권·입지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자영업지원팀(042-481-4355)

7) 자영업 컨설팅 지원사업

- 제도개요
-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전환 촉진 공급과잉 업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중심의 컨설팅 지원체제를 구축, 점포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 사업내용
- 자영업체의 시설개선, 매출확대, 업종변경 등 경영개선과 사업전환 촉진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
 - 민간전문가 컨설턴트풀 800명 활용
 - 컨설팅 비용지원(50만~70만 원)
 - 자영업자는 수수료 3만 원 부담

- 지원절차
 - 사업계획광고 → 신청·접수 → 5배수 컨설턴트 추천 → 협약체결
→ 컨설팅 실시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별도 공고
 - 접 수 처 :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자영업지원팀(042-472-0551)

8)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 제도개요
 - 재래시장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재래시장의 고객·매출증대 및 상권 활성화 촉진
- 지원내용
 - 고객접근 및 편의시설·아케이드 설치 등 기반시설 조성
 - 주차장, 진입로, 소방도로, 고객지원센터, 캐노피 등 설치
 - 건물 개·보수 등 노후시설 개선
 - 장옥 개·보수, 건물 리모델링, 내·외부 도색, 바닥 보수, 통신·기계·전기·소방시설 등의 교체개량
 - 테마거리 조성 및 홍보시설 설치
 - 거리정비, 홍보·상징조형물 설치, 시장입구 표식아취 설치 등

□ 지원조건 및 한도

- 매칭비율 : 국비 60%, 지방비 30%, 상인 10%
- 지원한도
 - 점포수 700개 이상인 시장 : 국비 최대 70억 원
 - 점포수 700개 이하인 시장 : 국비 최대 50억 원

□ 신청요건

-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에 의한 재래시장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사업추진주체를 보유한 시장
 -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

□ 추진절차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별도 공고
 - 접수처 : 시·군·구 지역경제과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042-481-4560/3)

9)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 제도개요
 - 재래시장의 상거래현대화, 상인혁신교육 등 경영혁신 지원을 통하여 재래시장의 고객 및 매출증가로 상권 활성화
- 지원내용
 - 구조개선공동사업의 활성화 :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배송센터, 물류창고 등 공동시설 설치 및 시스템구축, 상인교육장설치 등
 - 시·도별 공동상품권 발행, 시장별 활성화연구용역지원
 - 판로촉진·홍보지원 : 이벤트·홍보행사, 관광상품개발, 쿠폰발행
 - 정보화지원 : 온라인쇼핑몰 입점(에브리마켓), 컴퓨터 보급, 공동구매판매
 -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상인대학, 맞춤형교육, 단기교육과정(해외연수, 상인워크숍 등), 시장자문 및 점포지도

□ 신청요건

- 「재래시장및상점가옥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에 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로서 다음 중 하나의 사업추진주체를 보유한 시장
 -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별도 공고
- 접수처 : 시·군·구 지역경제과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042-481-4560/2)

10) 재래시장 시장정비사업

□ 제도개요

-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을 재개발·재건축을 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

□ 제도내용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하여 각종 특례 부여
 - 건물의 용적율·건폐율, 건축물 높이제한 등 특례
 -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 시장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공사비 용자

- 사업비의 75% 범위내 100억 원 한도, 연리 5.9%, 5년 거치 10년 상환
 - 취급은행에서 담보여부, 재무제표 등을 확인 후 대출

□ 신청요건

-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경우
- 고객의 증가로 건축물 및 시설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 화재 또는 홍수·태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시장 또는 건축물이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시설의 보수·수선으로는 시장 또는 건축물의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시행구역 선정절차

- 시장측 : ①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결성 → ② 사업계획 수립 → ③ 사업추진결의 → ④사업추진계획 추천의 신청
- 시·군·구 : ① 사업계획 등 추천서류(관계부서별) 검토 → ②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③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추천
- 시·도 : ① 사업계획 검토 → ②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③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고시

□ 사업시행구역 신청

- 사업시행구역 추천의 신청 : 연중 수시
- 추천 신청서류 접수처 : 시·군·구 지역경제과
- 시장정비사업자금(재개발예탁금) 용자신청 : 시·도 경제정책과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042-481-4563)

10. 여성기업 지원제도

1) 여성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 제도개요

- 수출 유망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 판로개척 등의 분야에 지원을 통해 수출능력 향상 및 신규 거래선 발굴
- 여성기업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시장 개척지원

□ 지원내용

- 해외유망 전시회 참가지원
 - Houseware, Fashion, Jewelry, Gift, 건축자재 등 해외 유망박람회 집중 지원
- 수출능력 향상지원
 - 수출홍보용 카탈로그 제작, 홈페이지 구축(타 지원사업과 연계)
-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유망박람회 참가지원
 - 산자부 선정 유망전시회, 국제인증(UFI), 조달제품 전시회

□ 선정기준

- 수출실적, 정책호응도,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업체 선정

▮ 주요 사업

구분	행사명	기간
패션쇼	Hong Kong Fashion Week	7.10~13
전략시개단	對日 농수산식품시개단	11월

구분	행사명	기간
해외투자촉진단	APEC-WLN	6.25~27
	FCEM	10월
박람회	홍콩선물용품박람회	4.28~5.1
	홍콩귀금속박람회	9.23~28
	상해건축박람회	5.23~26
	모스크바미용박람회	10.25~28
	국내 유망박람회 참가지원	연중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042-481-443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02-369-0900/0922)

2)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 제도개요

-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여성창업을 촉진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을 극대화

□ 지원대상

- 월소득 117만 원, 재산규모 5,000만 원 이하인 자
- 여성가장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배우자의 장기실직, 사망 또는 이혼 후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 배우자의 심신장애,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여성이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지원내용

○ 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3,000만 원 이내(지원자 결원시 지원)
- 용자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대출이자 : 연리 3%(이자는 분기 납부)

□ 지원조건

- 금리 연 3%(고정금리), 1인당 3,000만 원 한도(2년, 단 1회에 한해
최장 2년까지 연장가능)

□ 지원시기

- 연중(자금소진시 까지)

□ 추진절차

- 자금지원신청(여성가장) → 사업계획서 평가(선정위원회) → 임대
차계약(건물주) → 자금지원(협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042-481-443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
업팀(02-369-0900)

3)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 제도개요

- 여성창업자에 대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입주공간, 경영,
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 지원대상

- 창업 2년 이내의 업체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보육센터 설치 현황 : 전국 14개소 설치

지역	중앙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입주공간	10	10	6	6	7	6	10	7	6	8	9	6	6	7	104

- 입주공간 제공 및 시설 설치비, 공동 사무기기 사용, 전문가 POOL 운영 등 창업 초기 지원
- 초고속 국가망을 통한 IP 부여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 전문가 POOL을 통한 상담 체제 운영
- 여성기업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지원절차

- 입주신청(입주신청서제출) → 운영위원회 심사(업종, 사업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입주계약 체결(입주업체 승인) → 입주(입주 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지원시기

- 수시모집으로 상시 입주신청서 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042-481-443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02-369-0900)

4) 여성 전문분야 창업교육

□ 제도개요

- 여성유망직업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한 여성창업의 활성화
- 성공기업인과의 멘토링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 지원대상

- 여고생, 여대생, 주부 등 예비·신규 여성창업자 등

□ 지원내용

- 강사료, 강의장임차료, 교재비 등 공통경비 지원

□ 개최강좌 유형

○ 여성신산업에 대한 전문가 양성

- 디지털전문교육 : ANIMATION 및 IT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기술 인력 양성
- 문화산업창업교육 : 문화콘텐츠 개발 및 재가공을 통하여 문화산업과 전통문화를 링크하여 문화콘텐츠 사업기획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
- 전문가 양성 교육 : 21C 유망직종(웨딩, 파티플래너 등) 전문가 집중 양성

○ 사례 및 실습위주의 실전창업을 위한 3단계 창업전문교육

- 이론, 사례(이론중심에 사례를 가미한 교육) → 실습(창업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 견학) → 컨설팅(창업 멘토과정을 개설하여 창업가 자질 함양)

- 개최일정
 - 각 강좌 일정에 따라 상이하나 연중 접수도 가능하며, 강좌 개최 30일 전 홍보 및 접수
- 신청절차
 - 전화신청 : 02-369-0923~5
 - 인터넷 신청
 - 협회 홈페이지(www.womanbiz.or.kr → 동영상 교육관 → 강좌/세미나 안내)에서 참가 신청
- 지원시기
 - 각 강좌 일정에 따라 상이하나 연중 접수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042-481-443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02-369-0900)

5) 여성경제인 경영혁신 연수

- 제도개요
 - 글로벌 수준의 역량과 지식을 갖춘 전문경영인력 양성 및 선진 경영기법 보급
- 지원대상
 - 여성경제인, 여성기업 임직원 등

□ 지원내용

-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강의장 임차료, 기타 행사경비 등

□ 개최유형

- 여성CEO 경영혁신 교육
 - 기업 변혁의 주체로서 여성CEO를 육성하고자 의식의 전환, 경영 혁신 교육 등 전문 비즈니스 스쿨 개최
- 여성경제단체 협력 여성CEO 월례 조찬회
 -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경제 현안에 대한 고급 경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자의 사고혁신과 거시적 안목 배양
- 여성CEO 전국경영혁신연수
 - 여성경제인의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올바른 경영관 및 리더십 정립

□ 개최일정

- 각 연수 일정에 따라 연수개최 30일 전 홍보 및 접수(홈페이지 공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042-481-443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02-369-0900)

6) 여성기업간 경영노하우 멘토링 운영

□ 제도개요

- 여성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종업종 여성기업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1:1 맞춤형 또는 그룹별 경영컨설팅 운영

□ 지원내용

-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경영상담
 - 노하우 전수, 마케팅, 판로확대에 대한 의견 교환
- 월 1회 정기적 교류(현장방문)를 통한 컨설팅
- 반기별 멘토링 워크숍 개최
 - 멘토링 전략과정 교육 이수 및 네트워크 구축

□ 개최유형

- 1:1 맞춤형 멘토링
 - 초기사업자 여성기업인과 성공여성기업인간의 멘토링 운영을 통한 경영지도
- 그룹멘토링
 - 동종업종 여성기업간 그룹 멘토링을 운영하여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 지원시기

- 지역별 접수 및 행사 추진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042-481-443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02-369-0900)

7) 여성이랜서 전문가 양성 확대

□ 제도개요

- 여성들에게 이랜서(e-Lancer)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기업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게 함
 - * e-Lancer : 사이버를 의미하는 'e'와 프리랜서(freelancer)의 'Lancer'를 합친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해 프로젝트를 입찰·수주 받아 수행하는 전문가를 의미
-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전문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함
- 여성들에게 창업 및 직업 마인드를 고취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함
-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사회 각 분야의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이랜서 역할 모델 제공
- 사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여성이 겪는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문제에 대한 유경험자들의 조언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이랜서가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제도의 목적

- 중소기업의 당면 과제인 전문 인력의 수요와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여성 전문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전문화를 유도하고자 On-Off 라인의 연계 교육을 통해 여성 전문 이랜서를 양성

□ 지원대상(자격조건)

- 이랜서에 관심 있는 모든 여성
- 이랜서로 활동 중인 여성

- 직장 여성
- 주부 및 여대생
- 소기업 창업 희망 여성 등

- 추진시기
- 이랜서 양성과정
 - 각 교육 과정의 일정에 따라 상이하나 연중(신청) 접수 가능
- 오프라인 세미나 :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 교육내용
- 일반과정 : 이랜서 기초
- 교양과정 : 콘텐츠매니지먼트, CS 강사, 창업설계, 웹피디, 마케팅홍보, 쇼핑몰운영자 등
- 전문과정 : 번역사, 웹운영, 웹콜마케터, 모니터요원, 구성작가
- 신규전문과정 : (신)쇼핑몰창업과정, 라이팅이랜서, 웹카피 라이팅, 디자인커뮤니케이션 등

- 사업구분
- 이랜서를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
- 중소기업 및 이랜서의 구인, 구직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거래 시스템
- 정보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 진행절차

- 홈페이지에서의 회원가입부터 프로젝트 거래까지 수립된 절차에 의해 진행
- 해당 교육기간동안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Off-line 세미나 및 수료식에 참가
- 프로젝트 거래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기업체와의 계약 체결 및 수행
 - 회원가입(무료) → 교육과정 수강(무료/유료) → 교육과정 이수(수료증 발급) → 프로젝트 거래 → 프로젝트 수행
 - 이수자는 (사)한국여성벤처협회의 수료증 발급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직접신청 홈페이지
(www.elancer.or.kr, edu.elancer.or.kr)

□ 기타

- 특강 강사의 초빙 및 강연을 통한 정기적인 무료 세미나 개최
- (사)한국여성벤처협회 명의를 수료증 발급 및 커뮤니티 활성을 위한 오프라인의 주기적인 수료식 개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042-481-443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02-369-0900)

8) 여성패션·주얼리 로드샵 운영

□ 제도개요

-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 등의 충분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판매

- 장 부족 등으로 제품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을 발굴
- 여성기업 제품의 TEST마케팅 장소로 활용하여 제품에 대한 안테나 Shop 기능과 소비자 반응 조사 및 인지도 제고
- 로드샵 운영(She Story)
 - 입점 대상
 - 여성기업에서 생산하는 백화점 등에서 판매 가능한 소비 완제품
 - 매장 운영
 - 영업면적 : 중소기업유통센터 「행복한세상 백화점」 매장내 156평 규모
 - 품목구성 : 여성 디자이너 의류, 패션잡화 및 주얼리 등
 - 입점업체
 - 총 25개 업체가 참여 공간 확보(현재 12개 업체 입점)
 - 입점기간
 - 지원품목의 특성 및 판로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1년 운영을 원칙
- 입점업체 선정 절차
 - 업체 모집 공고 → 입점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및 실사 → 입점업체 선정(선정위원회) → 간담회 실시(매장운영방식) → 매장 입점
- 지원내용
 - 운영경비(인건비, 매장관리비), 시설투자비(인테리어, 집기)
- 문의처
 - (주)중소기업유통센터(02-6678-9320)

9) 벤처투자마트 및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

□ 제도개요

- 여성벤처기업인과 개인/기관투자자와의 공식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 및 제휴기회 제공

□ 지원내용

- 여성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및 경영전략 등 I·R 관련 교육
- 여성벤처기업의 투자유치 및 개인/기관 투자자 발굴을 위한 I·R 설명회
- 여성벤처기업 경영혁신 성공사례 교육 등

□ 신청·접수

- 기술, 사업성, 내부수행능력, 시장매력도, 수익성, 사업성이 우수한 참여업체 위주로 추천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기업평가

- 1차 서류심사를 통하여 최종 I·R기업의 2배수 선발
-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의 현장실사를 통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최종 I·R기업 선정

- 기업 평가·선정 절차 : I·R기업 접수 → 1·2차 심사(서류 및 현장실사) → I·R기업 선정

- 선정기업의 I·R자료 보완 → I·R비용 지원

- 투자기관 I·R자료 배포 및 I·R 설명회 개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042-481-4430), 한국여성벤처협회(02-6009-8503)

10) 여성벤처 CEO포럼

□ 제도개요

- 여성 중소·벤처업계 내부의 다양한 커뮤니티 조성으로 여성중소·벤처인들 사이의 정보 교류 및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여성기업간 사업협력 및 효과적 여성중소·벤처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포럼주제

- 여성벤처업계 핫이슈들과 산업내 정책 및 경영과제
- 글로벌화를 위한 이론적 실질적 접근 방안 및 과제 등

□ 개최시기

- 격월

□ 참여대상

- 신생 여성기업 및 신규 여성기업 및 벤처 확인기업 CEO 등

□ 참가신청

- 전화신청 : 02-6000-8500
- 인터넷 신청 : 협회 홈페이지(www.kovwa.or.kr)에서 참가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042-481-4430), 한국여성벤처협회 사업팀(02-6009-8503)

11) 여성특화창업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창업 2년 이내의 업체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보육센터 전국 14개소 입주시 우대
- 입주 공간 제공 및 시설 설치비, 공동사무기기 사용, 전문가 POOL 운영 등 창업 초기 지원, 초고속 국가망을 통한 IP 부여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여성기업 지원 참여시 우대

□ 지원조건

- 입주업종 : 지역경제와 밀접한 특화 산업군을 양성
- 입주기간 : 기본입주기간 1년(최대 3회 연장가능)

□ 신청 및 절차

- 접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소정양식), 전시품목상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부인증서 등
- 신청방법 : 팩스 및 인터넷 신청(www.womenexpo.or.kr)

○ 신청절차 : 입주 신청 → 운영위원회 심사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과(042-481-4495),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00)

12) 도전 여성스타기업 선정

□ 지원대상 및 응모자격

○ 예비창업자 :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6개월 이내의 신규 창업자
개인 또는 팀

○ 우수 비즈니스 모델 부문 :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여성스타기업부문 : 창업 3년 이상 여성기업으로서 매출, 고용, 기술개발에 뛰어난 기업

□ 지원내용

○ 포상 대상(2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4명), 장려상(2명)

□ 신청 및 절차

○ 신청기간 : 매년 2월~4월

○ 접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각 지회

○ 신청절차 : 지역 예선(9월), 중앙 본선(10월 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과(042-481-4495),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00)

13) 여성기업제품 T-Commerce

□ 지원대상

- 자가브랜드를 보유한 여성기업
 - 국내외 품질인증, 지적재산권 보유, 수출기업화 및 수출유망중소기업 우대

□ 지원내용

- TV 홈쇼핑사와 연계를 통한 T-Commerce
 - GS, CJ, 농수산, 현대, 우리 홈쇼핑 등 주기적 상품 선정
- 인터넷쇼핑몰(우먼비즈몰)의 활성화를 통한 상품판로 확대
 - MSN 쇼핑몰 및 네이버, 옥션, 베스트바이어, 링크프라이스 입점
- 점외 판매(B2B)
 - 정부 및 98개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판매

□ 지원절차

- 입주 신청 → 선정(선정위 심사) → T-Commerce 및 우먼비즈몰 입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과(042-481-4495),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00)

참고자료 : 정책자금 지원 관련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영리사업자)을 융자대상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융자 제외

업종분류	코드번호	해 당 업 종
제조업	3694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5~46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50중	자동차판매 중 소매업
	504	차량용 연료 소매업
	51102중	담배, 주류중개업
	51331	주류도매업
	51333	담배도매업
	52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601	철도운송업
	602	육상여객운송업
금융 및 보험업	65~67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70	부동산업
임대업	7111	승용자동차 임대업
	713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7411	법무 관련 서비스업
	74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423	지주회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1	초등교육기관
	802	중등교육기관
	803	고등교육기관
	804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809	기타 교육기관
보건업	85	의료업, 수의업
사회복지사업	86	수용 및 비수용 복지시설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331	골프장 운영업
	88332	스키장 운영업
	8891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포함)
	889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산업
회원단체	91	회원단체
기타 서비스업	93	기타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3911) 제외)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참고자료

중소·벤처창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업종 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1	호텔업	금융 및 보험업	전업종	전업종	
	55112	여관업				
	55113	휴양 콘도 운영업	부동산업	70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551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70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55119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70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55191	회사 및 단체 기숙사 운영업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55199	그 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70122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55211	한음식점업		70129	기타 부동산 공급업	
	55212	중국 음식점업		70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5213	일본 음식점업		70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5214	서양 음식점업		70221	부동산 중개업	
	55215	기관 구내 식당업		70222	부동산 감정업	
	55219	기타 일반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93111	이용업
	55221	피자, 햄버거및치킨 전문점			93112	미용업
	55222	분식 및 김밥 전문점			93121	육탕업
	55223	이동 음식점업			93122	마사지업
	55229	그 외 기타 음식점업			93129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55231	일반유희 주점업			93912	가정용 세탁업
	55232	무도유희 주점업			93913	세탁물 공급업
	55233	간이 주점업			93921	장례식장 및 장의점
	55241	제과점업	93922		묘지 및 화장업	
	55242	찻집	93991		예식장업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331	골프장 운영업	93992	점술업	
		88332	스키장 운영업	93993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88913		노래방 운영업	9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모든 서비스업		
88991		무도장 운영업				
88995		도박장 운영업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기술혁신분야	•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 이상인 기업
	•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 Inno-Biz 선정 기업
	•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 시행 기술지원사업 개발 성공 기업
	•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 벤처기업
경영혁신분야	•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
	•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 기업으로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 통합 연계형 전문기업(ICMS) 컨소시엄 참여기업
•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참여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 603 도로화물 운송업
- 611 해상운송업
- 6310 화물 취급업 6320 창고업 63913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63991 화물운송주선업 63992 화물포장업
- 6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운송관련 서비스업(화물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만 해당)
- 712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 75923 산업설비 청소업
- 9021 폐기물 수집·운반업 9022 폐기물 처리업

지식기반산업

- 메카트로닉스 산업, 카엘드론닉스 산업, 정밀기기 산업, 항공기 우주산업, 신소재산업
- 생물, 의학, 환경산업, 정밀화학, 신에너지
- 통신기기산업, 컴퓨터산업, 반도체산업, 디지털가전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 51 무역업 5511 관광숙박시설운영업(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지원대상에 한함)
 6331 여행사업 6411 우편업 6412 소포송달업 6421 유선통신업 6422 무선
 통신업 6429 기타 전기통신업
 7210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2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1 자료처리업 7232 컴퓨터시설관리업 724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29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10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3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42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422 사업 및 경영상담업
 743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432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44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449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7451 광고대행업 7459 기타 광고업 7460 전문 디자인업 7491 사진촬영 및
 처리업
 7499 그 외 기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11 사업시설및유지관리서비스업 751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91 경비
 및 탐정업
 7593 포장 및 충전업 7594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8711 영화 및 비디오 제작 8712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8713 영화
 배급업 8714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 8721 공중파 방송업 8722 유선 및 위성 방
 송업
 8731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8732 공연단체 8733 자영 예술가 8734 공연
 관련 산업
 8810 뉴스 제공업 8821 도서관, 기록보존서, 및 독서실 8822 박물관, 사적지
 관리 운영업
 88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8831 경기장 운영업 8832 경기 전문종사업
 9011 하수처리업 9012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9023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030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9211 일반기계 수리업 9212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9221 자동
 차 수리업
 9222 이륜자동차 수리업 9231 가전제품 수리업 923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사업전환의 정의와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적용대상	사업전환내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 새로운 업종 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	"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품목추가	제조업	현재 영위업종 내에서 새로운 품목 추가(기술, 시설, 공정 등이 달리 요구되는 경우)	30% 이상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은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새로운 품목의 기준 : 제조업 품목분류표(www.sbc.or.kr의 사업전환지원사업 내 사업소개 참조)에 따른 분류(8단위)가 다른 품목(제조업에 한함)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참고자료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 제외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해당업종
제조업	3694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50중	자동차판매 중 소매업
	504	차량용 연료 소매업
	51102중	담배, 주류중개업
	51331	주류도매업
	51333	담배도매업
운수업	601	철도운송업
	602	육상여객운송업
임대업	7111	승용자동차 임대업
	713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7411	법무 관련 서비스업
	74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423	지주회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1	초등교육기관
	802	중등교육기관
	803	고등교육기관
	804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809	기타 교육기관
보건업	85	의료업, 수의업
사회복지사업	86	수용 및 비수용 복지시설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91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포함)
	889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산업
회원단체	91	회원단체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코드번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코드번호

정책자금 지원 평가시 가점 및 감점 부여대상

- 가점부여 대상
 - 수출기업(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보유기업 포함, 지방수출기업은 추가 가점 부여)
 -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경영혁신형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20인 미만 소기업(광업,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외의 경우 10인 미만)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근로자 인수기업 또는 지방이전 기업
 - 부품·소재 생산 전문기업(부품·소재 매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 에너지절약 관련 시설을 구입하는 기업
 - 중소기업정보화지원기업(생산설비정보화추진기업, 정보화경영체제 인증기업)
 - 모범성실납세기업 및 납세자의날 국세청장 이상 수상기업
 - 노동부 지정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기업(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에 한함)
 - 수출기업화사업 참여 기업(수출금융지원사업에 한함)
 - 중소기업 15년 이상 장기근속자로서 창업기업의 대표로 재직중인 기업(중소·벤처창업자금에 한함)

참고자료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Inno-Biz 기업과 경영혁신형 기업은 이중 가점 배제(신청기업에 유리한 쪽 가점)
- 감점 부여대상
- 중소기업 유예기간인 기업
-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용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자금전액 포기 또는 실패 기업
 - 순수 신용대출시는 위 가점 적용을 배제하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시 Inno-Biz 기업은 우대 지원('07년까지 한시 적용)
 - 다음의 가감점 대상은 해당사업 시행 이후 적용함
 - 대학생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연수 참여기업(가점)
 - 중기청 지정 환위험관리 우수 중소기업(수출금융지원사업에 한함, 가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습 하도급법 위반 기업(감점)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표

Ⅰ 업종별 산업분류 CODE 중 하위 CODE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1	B. 어업	149.54	448.61
2	C. 광업	323.12	500.00
3	D151.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 가공업	274.81	500.00
4	D152.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70.54	211.61
5	D153. 곡물가공품, 전분 및 사료	97.49	292.47
6	D154. 기타식품	88.05	264.14
7	D1541. 빵류 및 곡분과자	107.06	321.17
8	D1545.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78.84	236.51
9	D1542,3,4,9. 기타 식료품	87.58	262.74
10	D155. 음료	253.88	500.00
11	D1551-3. 증류주, 합성주, 발효주 및 맥주	511.11	500.00
12	D1554.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79.13	237.38
13	D17. 섬유제품(종합)	160.95	482.86
14	D171. 제사 및 방직업	125.86	377.57
15	D172. 직물 직조업	204.93	500.00
16	D173,4,9. 기타 섬유제품	197.43	500.00
17	D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종합)	135.07	405.21
18	D19. 가죽, 가방 및 신발(종합)	195.58	500.00
19	D191,2. 가죽, 가방, 핸드백 및 기타 가죽제품	171.53	500.00
20	D193. 신발	267.34	500.00
21	D20.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종합)	132.68	398.03
22	D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종합)	114.25	342.74
23	D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종합)	144.53	433.59
24	D221. 출판업	136.11	408.34
25	D22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72.48	500.00
26	D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가공업(종합)	125.82	377.45
27	D24. 화합물 및 화학제품(종합)	89.74	269.22
28	D241. 기초화합물	87.36	262.07
29	D2411-3. 기초화합물(비료제외)	74.23	222.68
30	D2414. 비료 및 질소화합물	59.17	200.00

참고자료

번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31	D241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113.39	340.16
32	D242. 의약품	77.72	233.16
33	D243. 기타 화학제품	88.09	264.27
34	D2431. 살충제 및 기타 농약	129.81	389.42
35	D2432.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70.69	212.08
36	D2433.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83.09	249.28
37	D2434,9. 기타 화학제품	103.31	309.94
38	D244. 화학섬유	179.04	500.00
39	D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종합)	108.67	326.00
40	D251. 고무제품	82.51	247.52
41	D2511. 고무타이어 및 튜브	74.42	223.27
42	D2519. 기타 고무제품	118.03	354.10
43	D252. 플라스틱제품	127.00	381.01
44	D26. 비금속광물 제품(종합)	86.93	260.78
45	D261. 유리 및 유리제품	44.60	200.00
46	D26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62.74	200.00
47	D26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111.48	334.43
48	D26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91.10	273.29
49	D2632.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141.17	423.51
50	D26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111.15	333.46
51	D27. 제1차 금속(종합)	77.18	231.53
52	D271. 제1차 철강	69.87	209.62
53	D272. 제1차 비철금속	104.66	313.99
54	D273. 금속 주조업	193.96	500.00
55	D28. 조립금속제품(기계 장비 및 가구 제외)(종합)	150.35	451.06
56	D28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165.79	497.38
57	D28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140.21	420.62
58	D29. 기타 기계 및 장비(종합)	128.18	384.54
59	D291. 일반목적용 기계	126.41	379.23
60	D2916. 산업용 트랙 및 물품취급장비	119.48	358.43
61	D2911-5,7.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129.03	387.10
62	D292. 가공공작기계	142.20	426.61
63	D293,4.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137.33	412.00
64	D2931. 농업용 기계	145.95	437.84

번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65	D2933.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147.15	441.46
66	D2932,4-6,9,D294.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132.24	396.72
67	D295. 기타 가정용 기구	105.65	316.96
68	D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종합)	146.18	438.53
69	D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종합)	113.98	341.93
70	D3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119.41	358.22
71	D312.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84.75	254.25
72	D313. 절연선 및 케이블	117.35	352.05
73	D314,5,9. 기타 전기장비	153.48	460.45
74	D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종합)	75.06	225.19
75	D321.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56.58	200.00
76	D32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142.97	428.90
77	D323.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419.54	500.00
78	D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종합)	114.96	344.88
79	D34. 자동차 및 트레일러(종합)	117.72	353.16
80	D34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94.60	283.79
81	D342,3.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자동차 부품	158.91	476.72
82	D35. 기타 운송장비(종합)	250.10	500.00
83	D351. 선박 및 보트건조업	248.17	500.00
84	D352,3,9. 철도, 항공기 및 기타 운송장비	271.00	500.00
85	D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종합)	118.02	354.05
86	D361. 가구	115.77	347.32
87	D369. 기타 제품 제조업	120.00	360.01
88	D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274.97	500.00
89	E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67.27	201.81
90	E401. 전기업	56.44	200.00
91	E402,3. 가스 및 증기공급업	164.26	492.77
92	F. 건설업	154.56	463.69
93	G. 도매 및 소매업	154.83	464.48
94	G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128.61	385.82
95	G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54.52	463.57
96	G52. 소매업(자동차 제외)	161.21	483.62
97	G521. 종합소매업	151.22	453.65
98	G5211-9. 종합소매업(백화점 제외)	191.34	500.00

참고자료

번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99	G52111. 백화점	135.50	406.51
100	G522-8. 일반소매업	195.34	500.00
101	G5280. 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	224.71	500.00
102	G5281. 통신판매업	122.93	368.80
103	H551. 숙박업	107.06	321.19
104	I. 운수업	214.31	500.00
105	I60. 육상운송업(철도운송업 제외)	177.02	500.00
106	I602. 육상여객 운송업	362.51	500.00
107	I603. 도로화물 운송업	130.24	390.71
108	I61. 수상운송업	271.07	500.00
109	I62. 항공운송업	274.22	500.00
110	I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61.87	485.61
111	J642. 통신업	125.36	376.09
112	L. 부동산 및 임대업	159.77	479.30
113	M. 사업서비스업	93.15	279.46
114	M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85.85	257.55
115	M72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83.81	251.42
116	M72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0.45	211.36
117	M721,3,9.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98.79	296.37
118	M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8.36	325.07
119	M743.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69.87	209.62
120	M745. 광고업	174.05	500.00
121	M741,2,4,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5.30	375.90
122	M75. 사업지원 서비스업	86.69	260.06
123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34.47	403.41
124	Q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74.11	222.33
125	Q872. 방송업	58.94	200.00
126	Q871,3. 영화 및 공연산업	143.22	429.67
127	Q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204.02	500.00
128	R90.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104.70	314.10
129	기타산업		500.00
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제조업 가중평균 부채 비율(2003년 20%, 2004년 30%, 2005년 50%)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0%, 최대 500.0% 이내 	106.4	